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4년 5월 27일 제출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II. 2023회계연도 결산 · 예비비 · 기금 개요

1. 2023회계연도 결산 개요¹⁾

- '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최종예산액은 13조 7,858억 6,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4조 6,333억 3,200만원) 보다 △5.8%, △8,474억 6,900만원 감소한 것임
 - 최종예산액 13조 7,858억 6,200만원은 당초 본예산(12조 8,915억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 내) 차이 있음

2,100만원), 추가경정예산증액조정분(6,622억 1,400만원), 간주처리분(2,321억 2,600만원)을 합한 것이며,

- 최종예산액과 직전회계연도 이월액(6,021억 4,300만원)을 합한 '23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회계연도(14조 9,294억 5,700만원) 보다 △3.6%, △5,414억 5,000만원 감소한 14조 3,880억 6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14조 7,381억 7,700만원) 보다 △9.7%, △1조 4,236억 6,100만원 감소한 **13조 3,145억 1,6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12조 8,110억 4,300만원) 보다 △8.2%, △1조 445억 4,500만원 감소한 **11조 7,664억 9,7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1조 9,271억 3,400만원) 보다 △19.7%, △3,791억 1,500만원 감소한 **1조 5,480억 1,800만원**임

〈표 2-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A-B)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2023	14,388,006	13,314,516 (92.5)	11,766,497 (81.8)	1,548,018 (10.8)	명 시 이 월	263,491
					사 고 이 월	519,997
	(2023최종)				계 속 비 이 월	-
	13,785,862				보조금반납예정액	1,322
	(2022이월)				지 방 채 상 환	-
	602,143				순세계잉여금	763,206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개요

- '23회계연도 예비비는 200억원을 편성하여 160억 7,2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152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음

〈표 2-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사용결정액(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A-B-C)
20,000	16,072	15,277	260	534

3.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개요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총 6개 기금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한 바, '23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조 8,258억 8,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말 조성액(1조 8,003억 3,600만원)보다 1.4%, 255억 4,400만원 증가한 것임
- '23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액은 2,827억 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571억 5,800만원임

〈표 2-3〉 기금별 조성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금명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증 감 액 (F=E-A)	증 감 륜 (F / A)
			계 (B=C-D)	수 입 액 (C)	지 출 액 (D)			
합	계	1,800,336	25,544	282,702	257,158	1,825,880	25,544	1.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15,169	24,991	31,818	6,827	140,160	24,991	21.7
서울특별시교육청남북 교육교류협력기금 ^{주1)}		2,833	△2,833	31	2,864	-	△2,833	△1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09,505	△193,399	41,800	235,199	1,016,104	△193,399	△16.0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18	2	2	-	420	2	0.5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465,100	200,563	200,563	-	665,663	200,563	43.1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안전 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7,311	△3,779	8,488	12,267	3,532	△3,779	△51.7

※ 주1)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가결, '23. 3.10)

Ⅲ.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은 재원구분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채 및 이월금 등으로 구성됨
- '23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 수납액)은 13조 3,145억 1,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3조 3,258억 6,500만원)과 비교하면 △113억 4,900만원 부족수납된 것인바, 89억 1,400만원이 미수납 되고, 24억 3,400만원이 불납결손되어 13조 3,145억 1,6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예 산 액	징 수 결 정 액 (A)	실 제 수 납 액 (B)	징 수 결 정 대 비 수 납 액 (B - A)
13,785,862	13,325,865	13,314,516	△11,349

〈표 3-2〉 세입결산중 부족수납 현황(2023~20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수 납 액 비 율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2023	13,325,865	13,314,516	2,434	8,914	99.9	0.07
2022	14,750,392	14,738,177	1,120	11,094	99.9	0.08
2021	12,216,797	12,202,396	139	14,261	99.8	0.12

- 재원별 세입결산액은 이전수입 83.5%, 기타(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회수) 14.6%, 자체수입 1.9% 순으로 구성됨

〈표 3-3〉 자원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 수 결 정 액 (B)	결 산 액	
			금 액 (C)	구성비 ^{주1)}
합 계	14,388,006	13,325,865	13,314,516	100.0
이 전 수 입	12,242,199	11,120,692	11,120,692	83.5
기 타	1,943,795	1,943,795	1,943,795	14.6
자 체 수 입	202,011	261,378	250,028	1.9

※ 주1) 세입결산액(13조 3,145억 1,600만원)에 대한 구성비

2. 이전수입

- 의존재원인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²⁾,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³⁾, 기타 이전수입⁴⁾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주된 세입원임
- '23회계연도 **이전수입**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3.5%, 11조 1,206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12조 2,421억 9,900만원) 보다 △1조 1,215억 600만원 감수납된 바,
 - ①**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감액교부에 따라 예산현액 보다 △9,011억 1,300만원 감수납되고,
 - ②**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시도세전입금 및 지방교육세전입금 등의 감액교부 등으로 예산현액 보다 △2,213억 800만원이 감수납되었으며,
 - ③**기타이전수입**의 경우, 민간이전수입은 9억 1,700만원 증가하고, 자치단체간이전수입은 △200만원 감소하여, 예산현액보다 9억 1,500만원 초과수납된 것임

2) 중앙정부이전수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4) 기타이전수입 : 민간이전수입, 자치단체간이전수입

〈표 3-4〉 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수결정액 (B)	결 산 (수 납) 액		예 산 현 액 대 비	
			금 액 (C)	구성비 ^{주1)}	증 감 액 (C - A)	수 납 률 (C / A)
합 계	12,242,199	11,120,692	11,120,692	83.5	△1,121,506	90.8
중앙정부이전수입	7,345,474	6,444,361	6,444,361	48.4	△901,113	87.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883,711	4,662,402	4,662,402	35.0	△221,308	95.5
기 타 이 전 수 입	13,013	13,928	13,928	0.1	915	107.0

※ 주1) 세입결산액(13조 3,145억 1,600만원)에 대한 구성비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과 국고보조금⁶⁾ 및 특별회계전입금⁷⁾으로 구성됨
- '23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조 4,443억 6,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48.4%를 차지하는 바,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된 것이나 당초 계획한 예산현액(7조 3,454억 7,400만원) 보다 △9,011억 1,3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확인됨⁸⁾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②, ③ 생략)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6)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7) 특별회계전입금 :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하여 교육세 일부 및 별도 예산에서 정하는 정부 일반회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하는 재원임

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표 3-5〉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수결정액 (B)	결 산 (수 납) 액		예 산 현 액 대 비	
				금 액 (C)	구성비 ^{주1)}	증 감 액 (C - A)	수납률 (C / A)
합	계	7,345,474	6,444,361	6,444,361	48.4	△901,113	8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784,060	5,897,308	5,897,308	44.3	△886,751	86.9
	보 통 교 부 금	6,362,252	5,486,911	5,486,911	41.2	△875,340	86.2
	특 별 교 부 금	259,054	247,644	247,644	1.9	△11,410	95.6
	증 액 교 부 금	162,753	162,753	162,753	1.2	0	100.0
	국 고 보 조 금	70,914	70,914	70,914	0.5	0	100.0
	특 별 회 계 전 입 금	490,500	476,138	476,138	3.6	△14,361	97.1

※ 주1) 세입결산액(13조 3,145억 1,600만원)에 대한 구성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은 당초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⁹⁾ (6조 3,622억 5,200만원) 전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하였으나,

- 정부의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와 연동되는 보통교부금 재원 또한 감액이 불가피하여, '23년 9월, 교육부로부터 '23년도 보통교부금 자금 감액 추계(안)이 통보된 바,¹⁰⁾ '23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5조 4,869억 1,100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6조 3,622억 5,200만원) 대비 △8,753억 4,000만원이 감수납된 것임

〈표 3-6〉 2023회계연도 보통교부금 전입 및 정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 산 편 성 액 (A)			결 산 액 (B) (실 전 입 금)	예 산현액대비 증 감 액 (C = B - A)	증 감 액 발 생 사 유
합	계	예 정 교 부 ('23년도 본예산) 확정교부증감 ('23년도 1회 추경)			
6,362,252	6,390,221	△27,968	5,486,911	△875,340	국세수입 감소에 따 른 감 교 부

9)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71('23. 2.23),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1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333('23. 9.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협조 요청 사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은 예산현액(2,590억 5,400만원) 대비 △114억 1,000만원이 감수납된 것으로 전년도 집행결과 반영 등에 따른 감교부로 인해 내시액과 실제 교부액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증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¹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 별도로 교부하는 재원으로 '23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경비중 국고부담분 교부예정액을 편성하여,¹²⁾ 예산현액 1,627억 5,300만원 전액이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기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재원으로 '23회계연도 예산현액 709억 1,400만원 전액 수납되었음
- **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당초 교육부의 '23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교부 예정액 4,905억원을 편성하였으나,¹³⁾ '23년 8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간 예산을 조정하여 △143억 6,10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 통보한 바,¹⁴⁾ 기정예산에 대한 경정이 필요하였으나 '23년 7월 이후 추가적인 추경편성이 없어 결산 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11)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③ (생략)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12)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3623('22. 9. 8), "2023년도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교부예정액 알림"

13)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232('23. 1.17), "2023년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안내"

14)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001('23. 8.31), "2023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조정 결과 알림"

○ '23회계연도의 경우 **중앙정부이전수입**중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특별회계 전입금**의 하반기 자금교부 변동 등으로 인한 부족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12.3%, △9,011억 1,3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바,¹⁵⁾

- 중앙정부의 자금교부 변동 통지 시, 당초 예산액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하였을 것이나, 추가적인 예산경정이 없어 '장부상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세입예산과 연동되어 세출예산에서도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하여 결산상 불용규모만 확대시킨 것으로 판단됨
-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세입재원인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회계연도중 변동이 발생하면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정부의 내시액 변동 결과를 추경으로 경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중앙정부이전수입**중 **증액교부금**과 **특별회계전입금**은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¹⁶⁾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¹⁷⁾에 의거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재원인 바,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¹⁸⁾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중앙이전수입 전망'에 따르면 유효기간 이후에는 수입전망이 불확실하여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잠재적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1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16)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② (생략)
[법률 제16673호(2019. 12. 3.)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17)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18) ■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23. 9. 5), 재구성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중앙이전수입 전망」('23. 9.25), 재구성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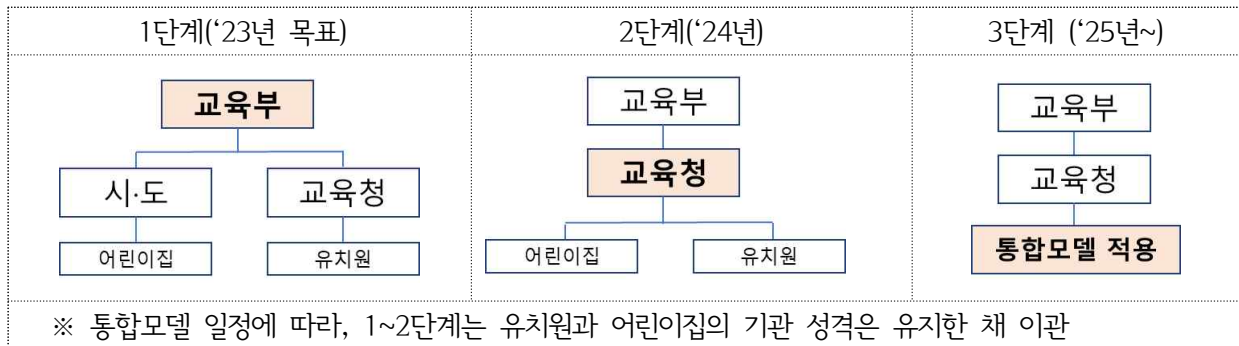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8	68.9	76.0	83.4	87.7
보통교부금	73.5	66.9	73.8	81.1	85.2
특별교부금	2.2	2.0	2.2	2.3	2.5
증액교부금	0.9	0.9	-	-	-
유아교육비 보육료지원	3.5	3.2	3.1	-	-

- 특히,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가 '25년도부터 시·도교육청으로 영유아보육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발표한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19)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교육부와 선제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9) 교육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3. 7.28)

③ 주요 추진 내용(안)

-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이관범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
- (이관전략) 중앙 - 지방 순차 이관 (先중앙, 後지방) 추진



④ 재정 이관

- 현재 영유아, 부모, 교사,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예산의 지속 지원 및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원칙 준수
 - ※ 세부 이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등 정부, 시·도,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1·2단계) 시에는 재정은 '이관'하며, 이후 통합모델('23.12월 시안공개, '24년 말 확정) 적용 시, 재정 개편 추진

<현행>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현황('23)		이관·지원 방향		개편 방향	비고
① 복지부 국고	➔	① 교육부로 이관 [1단계]		①+② 별도 특별회계* 신설 검토 *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특별회계 신설
② 유특회계		② 지속 지원(~'25)		③ 이관 후 지속 지원	유지
③ 시·도, 시·군·구 예산		③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2단계]	➔	④ 지속 지원	
④ 시·도교육청 예산		④ 지속 지원		⑤ 통합모델 적용에 따라 교부금 등 활용 추진	+α (추가 소요)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바,
- '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액은 4조 6,624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4조 8,837억 1,100만원) 보다 △4.5%, △2,213억 800만원 감수납된 것임

〈표 3-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수결정액 (B)	결 산 (수 납) 액		예 산 현 액 대 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 감 액 (C-A)	수납률 (C/A)
합 계	4,883,711	4,662,402	4,662,402	35.0	△221,308	△4.5
법 정 이 전 수 입	4,485,693	4,264,388	4,264,388	32.0	△221,305	△4.9
지 방 교 육 세 전 입 금	1,946,118	1,848,346	1,848,346	13.9	△97,772	△5.0
담 배 소 비 세 전 입 금	284,423	275,335	275,335	2.1	△9,088	△3.2
시 도 세 전 입 금	2,113,329	2,010,586	2,010,586	15.1	△102,743	△4.9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987	0	0	0.0	△1,987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4,151	104,425	104,425	0.8	△9,725	△8.5
교 육 급 여 보 조 금	10,424	10,435	10,435	0.1	11	0.1
무 상 교 육 경 비 전 입 금	15,258	15,258	15,258	0.1	0	0.0
비 법 정 이 전 수 입	398,017	398,014	398,014	3.0	△3	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40,713	240,713	240,713	1.8	0	0.0
기초자치단체전입금	157,303	157,300	157,300	1.2	△3	0.0

※ 주1) 세입결산액(13조 3,145억 1,600만원)에 대한 구성비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생략
-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⑨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결산액은 4조 2,643억 8,800만원으로 예산현액(4조 4,856억 9,300만원) 보다 △2,213억 500만원이 부족수납된 것으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지방세법」 제71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 73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²¹⁾가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하는 세액이나, '23년 3월, 「지방세법 시행령」 중 재정자주도 산정방식을 개정 함에 따라²²⁾ 당초 교육부의 내시액²³⁾(1,141억 5,100만원) 보다 △97억 2,500만원 감액 교부된 것으로 검토됨

- **학교용지매입시도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²⁴⁾에 따라 개발사업 지역의 학교용지 매입비의 1/2을 시·도 일반회계 및 학교 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3개교(공진초, 공향초, 마곡중)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서울시부담금을 편성한 것이나,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주택도시공사 간 학교용지 매입비 정산절차가 지연되어 예산현액(19억 8,700만원) 전액이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동 부담금은 지난 '22회계연도 결산시에도 동일한 사유로 전액 수납되지 않고, '23회계연도에도 전액 미수납 된 것이나, '24년 4월, 3개교에 대한 학교용지 매입비 정산이 완료되고,²⁵⁾ 서울시에서도 부담금을 '24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²⁶⁾ '24회계연도중 전액 수납 될 것으로 예상됨

21)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6호)에 따라 '23년도의 경우 충청북도지사임

22) 「지방세법」 제69조에 의거 지방소비세율 100분의 11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하되,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 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그 안분액을 교육감에게 납입

23)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1171('23. 2.23), “2023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통지”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25) 서울주택도시공사, 분양부-1262('24. 4. 2)

26) ■ 서울특별시, 「2024년 예산서」, p.914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13829('23. 8.25), 재구성

학교명	위치	최초계약일자	변경(예정) 금액(A)	서울시부담(A*1/2)
공진초	강서구 마곡동	2012. 12. 26.	1,396,740,020원 7,247,889,980원 (기 계약금액) 8,644,630,000원 (측량후 정산금액)	698,370천원
공향초	강서구 마곡동	2013. 3. 11.	1,353,671,000원 6,981,419,000원 (기 계약금액) 8,335,090,000원 (측량후 정산금액)	676,836천원
마곡중	강서구 마곡동	2012. 12. 7.	1,224,636,340원 6,335,483,660원 (기 계약금액) 7,560,120,000원 (측량후 정산금액)	612,319천원
합 계				1,987,525천원

-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의 결산액은 4조 1,342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4조 3,438억 7,200만원) 보다 △ 2,096억 400만원 부족 수납된 바, 서울시의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²⁷⁾ 지방교육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 미정산분 872억 8,200만원을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²⁸⁾에 근거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 추가 전출할 것으로 예상됨

〈표 3-8〉 2023회계연도 서울시 법정전입금 미전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편 성 액 (A)	실 전 입 금 (B)	서 울 시 세 입 결 산 액 (C)	미 전 입 액 (C-B)
합 계	4,343,872	4,134,268	4,221,550	87,282
지 방 교 육 세 전 입 금	1,946,118	1,848,346	1,845,647	△2,699
담 배 소 비 세 전 입 금	284,423	275,335	281,906	6,571
시 도 세 전 입 금	2,113,329	2,010,586	2,093,996	83,410

○ 비법정이전수입의 결산액은 3,980억 1,400만원으로 예산현액(3,980억 1,700만원) 보다 △300만원 부족 수납된 것으로 제출한 바,

- 기초자치단체전입금중 '마을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과학교실 사업'(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이 예산현액(2,500만원) 보다 △300만원이 부족 수납된 것으로 구로구가 '23년 3월,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500만원 전액을 교부하여²⁹⁾ 간주처리까지 하였으나, '23년 12월, 구로구청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회계연도중 반납 요청함에 따라³⁰⁾ 동일 회계연도중 '과오납금반환'으로 반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³¹⁾

27)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4034('24. 3. 5), 6310('24. 5. 1)

28)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29) 구로구청, 교육지원과-3684('23. 3.24)

30) 구로구청, 교육지원과-14093('23.12.14)

31)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남부분원-224('23.12.14)

- 그러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³²⁾이 정하는 과오납금의 반환은 ①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②납입후의 감면, ③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을 경우에 제한적으로 기수납한 금액을 반환하는 회계처리절차라는 점에서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은 과오납금의 반환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³³⁾에는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을 세출과목으로 별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의 반납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되어야 할 사안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 외 서울시교육청 스스로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은 없는 바, 동 사례는 「지방재정법」³⁴⁾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됨

32)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0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을 경우로서 납부자로부터 제49조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관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3)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411호, '22. 8.11 일부개정)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별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제5조제2항 관련)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	정
700	예비비및기타				
	710	예비비및기타			
		710-02 반환금및기타	기초자치단체보조금반환	○	기초자치단체보조금 반환액

34)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23회계연도 비법정이전수입 수납내역을 검토하면 '23년 5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지방이양사무보전금**³⁵⁾(4,300만원)을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으나, 지방이양사무보전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보전금³⁶⁾으로 「지방세법」³⁷⁾에 근거하고 있어 **법정이전수입**으로 편성·징수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는 바,³⁸⁾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은 동 보전금을 시·도 **법정전출금**(730-01)으로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³⁹⁾ 서울시의 경우에도 **법정전출금**으로 편성하여⁴⁰⁾ 서울시교

- 35) 2단계 전환사업(지방이양) 추진에 따른 지자체 보전금중 교육청분(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461, '21.10. 5)
- 3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1.11.11), 「2단계 재정분권 관계법률 국회 통과 ... 자치분권 한걸음 더」
- 37) 「지방세법」 제71조(납입)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38)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의 세입(2)」('18.1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이전하는 수입은 크게 **법령에 의해 부담규모가 정해지고 반드시 이전해야 하는 법정이전수입**과 법령에 근거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이전여부 및 규모가 전해지는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분됨
- 39)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29호, '22.12.14)
- 시도 보전금 일부에 대한 교육청 전출
 - ‘지방이양사무지원’ 사업에서 지방일괄이양에 따라 교육청에 보전하는 인건비, 경상비 등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시도로 배분 예정
 - **시도는 붙임3에 해당하는 보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703-01)’으로 편성하여 각 교육청으로 전출**
[붙임 3] 시도별 교육청 전출규모(지방이양사무지원)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자치단체 예산	교육청 예산
서울특별시	903,600	859,800	43,800

- 40) 서울특별시, 「2023년 예산서」 p.940

(단위 : 천원)

부서·정책·단위·세부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액
(일반회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원		
지방이양사무 지원		
100-703-01 법정전출금	○ 지방이양사무 지원 43,800,000원 =	43,800

육청으로 전출하였음에도,⁴¹⁾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동 예산을 **비법정이전 수입**으로 편성·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세입 조치 함에 따라 세입과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됨

- 다만, 교육부의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⁴²⁾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에 근거한 전환사업 보전금중 “제71조제3항 제3호나목” 및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한하여 법정이전수입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 서울시교육청이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징수한 지방이양사무보전금의 경우에는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되어, 세입예산 편성·징수에 혼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⁴³⁾ 교육부에 관련 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1)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6391('23. 5.19), “지방이양사무 보전금 전출 알림”

4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411호, '22. 8.11 일부개정)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10000			이전수입			
	12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100	법정이전수입			
			12103 시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의한 시도세 전입금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4호나목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1단계 재정분권) 보전금(2026년 12월 31까지 유효) ○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제2항제7호나목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전환사업(2단계 재정분권) 보전금(2026년 12월 31까지 유효)	

43) 시·도교육청중 10개 교육청은 법정이전수입으로 편성·징수, 4개 교육청은 비법정이전수입으로 편성·징수

(3)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민간이전수입과 자치단체간이전수입으로, '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130억 1,300만원) 대비 107.0%, 139억 2,800만원이 수납되어 9억 1,500만원이 초과 수납된 바,

〈표 3-9〉 기타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		예산현액대비	
			금액(C)	구성비 ^{※1)}	증감 (C - A)	수납률 (C / A)
합계	13,013	13,928	13,928	0.1	915	107.0
민간이전수입	9,045	9,963	9,963	0.1	917	110.1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967	3,965	3,965	0.0	△2	99.9

※ 1) 세입결산액(13조 3,145억 1,600만원)에 대한 구성비

- 민간이전수입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납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지원금이 예산현액(60억 3,600만원) 보다 △3억 1,300만원 부족수납되고, 농협은행에서 납부하는 교육금고약정 협력사업비가 예산현액(24억 5,900만원) 보다 12억 3,1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0〉 민간이전수입 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결산(수납)액 (B)	예산현액대비 (B - A)	납부처
합계		9,045	9,963	917	
교육혁신과	AI활용교육지원	535	535	0	한국과학창의재단
중등교육과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6,036	5,723	△31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생교육과	디지털문해교육	14	14	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교육재정과	교육금고협력	2,459	3,690	1,231	NH농협은행 서울시교육청지점

3. 자체수입

(1) 수납액 관련

- 자체수입은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44)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그 밖에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 '23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결과 예산현액(2,020억 1,100만원) 보다 23.8%, 480억 1,700만원 증가된 2,500억 2,800만원이 수납된 것이나, 징수결정액(2,613억 7,800만원)보다는 △4.3%, △113억 5,000만원이 부족 수납된 것임

〈표 3-11〉 자체수입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 결 정 액 (B)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E)
				금 액 (C)	비 율 (C/B)	금 액 (D)	비 율 (D/B)	
합	계	202,011	261,378	250,028	95.7	2,434	0.9	8,914
교수학습 활동수입	소 계	1,294	1,175	1,174	100.0	0	0.0	1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3	1	1	81.6	0	0.0	1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1,290	1,173	1,173	100.0	0	0.0	0
행정활동수 입	소 계	5,305	4,625	4,621	99.9	0	0.0	3
	사용료 및 수수료	5,305	4,625	4,621	99.9	0	0.0	3
	특별부과금 및 분담금	0	0	0	0.0	0	0.0	0
자산수입	소 계	30,851	31,864	31,829	99.9	0	0.0	35
	자산임대수입	484	539	504	93.5	0	0.0	35
	자산매각대	30,366	31,324	31,324	100.0	0	0.0	0
이자수입	이 자 수 입	36,410	44,866	44,866	100.0	0	0.0	0
기타수입	소 계	128,150	178,846	167,536	93.7	2,434	1.4	8,875
	제 재 금 수 입	1,134	1,595	994	62.4	5	0.4	594
	기 타 수 입 등	126,574	166,309	166,257	100.0	0	0.0	52
	지난연도수입	441	10,942	284	2.6	2,429	22.2	8,228

44)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① 공립·사립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체수입 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1,967억 6,500만원)보다 27.1%, 532억 6,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표 3-12〉 2023~2022회계연도 자체수입 수납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2 0 2 3 회 계 연 도			2 0 2 2 회 계 연 도			증 감 수 납액 (B - D)
		징 수 결 정 액 (A)	수 납 액 (B)	비율① (B/A)	징 수 결 정 액 (C)	수 납 액 (D)	비율① (D/C)	
합 계		261,378	250,028	95.7	208,980	196,765	94.2	53,263
교 수 학 습 활 동 수 입	소 계	1,175	1,174	100.0	1,118	1,103	98.7	71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	1	81.6	31	16	52.9	△15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1,173	1,173	100.0	1,086	1,086	100.0	87
행 정 활 동 수 입	소 계	4,625	4,621	99.9	4,691	4,669	99.5	△47
	사용료 및 수수료	4,625	4,621	99.9	4,275	4,252	99.5	369
	특 별 부 과 금 및 분 담 금	0	0	0.0	416	416	100.0	△416
자 산 수 입	소 계	31,864	31,829	99.9	22,474	22,438	99.8	9,391
	자산임대수입	539	504	93.5	582	546	93.7	△42
	자 산 매 각 대	31,324	31,324	100.0	21,892	21,892	100.0	9,432
이 자 수 입	이 자 수 입	44,866	44,866	100.0	19,559	19,559	100.0	25,307
기 타 수 입	소 계	178,846	167,536	93.7	161,135	148,994	92.5	18,542
	제 재 금 수 입	1,595	994	62.4	2,100	1,697	80.8	△703
	기 타 수 입 등	166,309	166,257	100.0	145,094	144,968	99.9	21,289
	지난연도수입	10,942	284	2.6	13,941	2,327	16.7	△2,043

- 자체수입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의 경우, 11억 7,400만원이 수납되어 직전 회계연도(11억 300만원) 보다 6.5%, 7,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평생학습관과 도서관의 평생학습 수강인원이 증가하여 평생학습 수강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행정활동수입**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으로, 직전회계연도(46억 6,900만원) 보다 △4,700만원 감소된 46억 2,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자산수입**은 자산임대수입과 자식매각대로서, 중부교육지원청 관내 토지매각(291억 9,200만원)⁴⁵⁾에 따라 **자산매각대**가 '22회계연도(218억 9,200만원)보다 42.7%, 93억 4,200만원 증가된 313억 2,400만원으로 수납되었음
- **이자수입** 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195억 5,900만원) 보다 129.4%, 253억 700만원이 증가한 448억 6,600만원으로, 기준금리 인상⁴⁶⁾에 따른 금고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및 보유자금중 정기예금 등의 운용률이 증가⁴⁷⁾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3〉 예금 이자수입 현황(2023~202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합 계 (① + ②)		정 기 예 금 ①		기 타 예 금 ②	
	일 평 균 잔 액	총 예 금 이 자 (A = B + C)	일 평 균 잔 액	정 기 예 금 이 자 (B)	일 평 균 잔 액	기 타 예 금 이 자 (C)
2023	1,251,025	44,866 (100.0)	1,100,972	40,984 (91.3)	150,053	3,881 (8.7)
2022	1,319,629	19,559 (100.0)	891,890	15,322 (78.3)	427,739	4,237 (21.7)
2021	961,071	6,265 (100.0)	592,438	3,822 (61.0)	368,633	2,442 (38.9)

※ ()는 총예금이자에 대한 비율임

45)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동 3-14번지 등 38필지, 1,228.4㎡ (한남3구역재정비촉진구역)

46)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 '22년 평균 2.2% → '23년 평균 3.7% (▲ 1.5%)

47) 정기예금 등의 운용률 증가추이 : '22년 평균 81.8% → '23년 평균 98.2% (▲ 16.4%)

- **기타수입**은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등의 제재금수입 및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보조금등반납금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예산현액(1,281억 5,000만원) 보다 30.7%, 393억 8,500만원 초과된 1,675억 3,600만원이 수납된 바,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1,117억 8,100만원)이 예산현액(675억 2,200만원) 보다 65.5%, 442억 5,900만원 초과수납되고, **보조금등반납금수입**(311억 4,100만원)은 예산현액(395억 3,300만원) 보다 △21.2%, △83억 9,200만원 부족수납된 것으로 검토됨

■ **보조금등반납금수입**은 지난 '22년 8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시⁴⁸⁾ 시·도교육청 재정분석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신설된 세입과목으로,⁴⁹⁾ '23회계연도부터 보조금 등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에 대한 지난연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은 보조금등반납금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 서울시교육청은 '23년 9월에 이르러서야 소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외부재원이 포함된 사업의 반납액을 **보조금등반납금수입**으로 세입조치하도록 안내한 것은 물론, 이미 수납된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을 **보조금등반납금수입**으로 경정처리한 것으로 확인됨⁵⁰⁾

48)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411호, '22. 8.11 일부개정) 제4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 내부거래 등으로 구분하며, 장·관·항·목·원가통계목별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제4조 관련)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	정
20000			자체수입			
	27000		기타수입			
		27200	기타수입등			
			27204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학교회계전출금 반납수입	○ 회계연도 종료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중 목적사업비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금 수입(보조금 등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에 대한 지난연도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은 보조금등 반납금수입으로 처리)	
			20205 보조금등 반납금수입	보조금등 반납금수입	○ 회계연도 종료이후 지난연도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에 대한 정산 반납금 수입(국가, 시도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전전년도 등 지난연도 정산분에 대한 반납 금액)	

49)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4522('22. 9. 6),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유의사항 알림”

5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20011('23. 9. 4), “교특회계 세입과목 경정처리 및 결과보고 제출 안내”

- 특히,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수납내역중 ‘2022년도 수영교육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7건, 968만원의 경우에는 보조금등반납금 수입으로 수납처리 되어야 함에도 징수기관에서 관련 기준을 숙지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수입과목으로 세입조치한 것으로 확인됨⁵¹⁾
- 동 사례의 경우, 지난 ’22회계연도 결산심사시 ‘2022년 현장지원자료 개발 보급사업 시·도교육청 분담금’(자치단체간이전수입)을 특별부과금 및 분담금으로, ’21회계연도 결산심사시 ‘2021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국고보조금)을 보통교부금으로 잘못 징수하여 세입과목오류가 발생한 바,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세입예산을 세입조치 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표 3-14〉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중 세입과목오류 현황(보조금등반납금수입)

(단위 : 원)

연번	징 수 기 관	수 납 액	세 부 내 역
1	서울보라매초등학교	4,253,400	'22년도 수영교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	서울갈현초등학교	3,146,000	'22년도 서울시특별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3	서울대림초등학교	1,597,200	'22년도 서울시특별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4	서울신자초등학교	681,680	'22년도 조리사등 인건비(무상-서울시) 교부금 반납
6	서울화양초등학교	3,980	'22년도 학교흡연예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6	서울대진초등학교	1,670	'22년도 초등돌봄교실증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7	북부교육지원청	420	'22년도 서울시전입금 인덕선사업 집행잔액 반납
계	7건	9,684,350	

5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2)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관련

- '23회계연도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110억 9,400만원)보다 △19.7%, △21억 8,000만원 감소한 89억 1,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5〉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

회 연	계 도	징 결 정 액 (A)	수 납 액		불 납 결 손 액		미 수 납 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C)	비 율 (C/A)	금 액 (D=A-B-C)	비 율 (D/A)
2 0 2 3		261,378	250,028	95.7	2,434	0.9	8,914	3.4
2 0 2 2		208,980	196,765	94.2	1,120	0.5	11,094	5.3
2 0 2 1		222,738	208,338	93.5	139	0.1	14,261	6.4

-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은 주로 지난연도수입(82억 2,800만원), 변상금(4억 9,100만원), 연체료(5,800만원), 과태료(4,200만원) 항목에서 발생한 바,

- 지난연도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92.3%, 82억 2,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수입이 장기 미수납되지 않도록 이월된 미수납액을 적극관리하여 세입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3-16〉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 현황(2023~2019)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2	2021	2020	2019
자 미	체 수 납 입 액	8,914	11,094	14,261	14,239	12,966
	지 미 난 연 도 수 납 액	8,228 (92.3)	10,508 (94.7)	13,433 (94.1)	11,775 (82.6)	11,859 (91.4)
	전 년 대 비 증 감 률	△21.7	△21.8	14.1	0.7	

※ ()는 자체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비율

〈표 3-17〉 자체수입 미수납액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미수납사유 (미수납액)
				금액 (D-ABC)	미수납률 (D/A)	구성비율	
합계	41,086	29,736	2,434	8,914	21.7	100.0	
지난연도료	0.3	0	0	0.3	100.0	0.0	○고등학교 수업료: 363천원
사용료수입	4,362	4,358	0	3	0.1	0.0	○토지 사용료: 3,938천원
수수료수입	263	263	0	0.001	0.0	0.0	○수수료: 1천원
임대료수입	539	504	0	35	6.5	0.4	○토지 임대료: 35,226천원
변상금	771	275	4	491	63.7	5.5	○공유재산 변상금: 491,704천원
위약금	428	427	0.005	1	0.3	0.0	○증가산금: 1,424천원
연체료	119	59	0.8	58	49.3	0.7	○공유재산 연체료: 44,158천원 ○기타연체료: 14,588천원
과태료	273	231	0	42	15.6	0.5	○학원과태료: 42,617천원
그외수입	23,385	23,333	0	52	0.2	0.6	○소송비용: 51,259천원 ○변상금분납이자등: 976천원
지난연도입	10,942	284	2,429	8,228	75.2	92.3	○변상금: 5,210,525천원 ○위약금 및 연체료: 986,253천원 ○소송비용액: 694,845천원 ○과태료: 303,313천원 ○대지료: 132,472천원 ○분납이자: 99,628천원 ○부당이득금 등: 804,694천원

※ 전체 자체수입 항목 중 미수납이 발생한 과목에 대한 현황

-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구분하면,⁵²⁾ ①채무자 재력부족 35억 7,300만원(40.1%), ②재산압류중 34억 9,500만원(39.2%), ③기타 8억 2,100만원(9.2%), ④납부자태만 7억 3,900만원(8.3%), ⑤채무자거소불명 2억 5,400만원(2.9%), ⑥채무자 징수유예⁵³⁾ 3,000만원(0.3%) 순으로 검토되는 바, 자체수입이 납부자 태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미수납되지 않도록 채권 관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8〉 자체수입에 대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① 채 무 자 재력부족	② 재 산 압 류 중	③ 기 타	④ 납 부 자 태 만	⑤ 채 무 자 거소불명	⑥ 채 무 자 징수유예
금 액	8,914	3,573	3,495	821	739	254	30
구 성 비	100.0	40.1	39.2	9.2	8.3	2.9	0.3

- **불납결손액**은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⁵⁴⁾에 따라 부채의 면제 또는 시효의 완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 '23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직전회계연도(11억 2,000만원) 보다 117.3%, 13억 1,400만원 증가된 24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고, 불납결손률은 직전회계연도(0.5%) 보다 0.4%p 증가된 0.9%인 것으로 확인됨⁵⁵⁾

52) 교육부,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p.88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해 유예된 경우

54)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1조(불납결손처분)

①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부채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5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 불납결손액 발생 사유⁵⁶⁾는 ①시효완성 21억 2,600만원, ②무재산 300만원, ③기타 3억 5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⁵⁷⁾ 불납결손액 발생의 상당 부분은 납부태만과 관련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하여도 불납결손액이 많을수록 교육재정의 가용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시효완성 직전까지 미수납액을 적극 징구하는 등 결손 처분 사례가 감소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표 3-19〉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22년 불납결손액	'23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금 액	구 성 율	② 무 재 산	거 불 소 명	① 시 효 완 성	③ 기 타
합 계	1,120,429	2,434,882	100.0	3,179	-	2,126,502	305,200
지 난 연 도 입 학 금	5	-	-	-	-	-	-
지 난 연 도 수 업 료	14,517	-	-	-	-	-	-
변 상 금	-	4,938	0.2	-	-	-	4,938
위 약 금	-	5	0.0	5	-	-	-
연 체 료	1,320	822	0.0	-	-	822	-
지난연도수입	1,104,586	2,429,117	99.8	3,174	-	2,125,680	300,262

〈표 3-20〉 회계연도별 불납결손 현황(2023~2019)

(단위 : 천원, %)

구 분	2023	2022	2021	2020	2019
불 납 결 손 액	2,434,881 (117.3)	1,120,429 (705.6)	139,075 (25.3)	110,984 (△51.7)	229,690 (-)

※ ()는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56) 교육부,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p.88

5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p.871

4. 지방채

○ 지방채의 경우, 「'23년~'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는 동 기간동안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으며⁵⁸⁾ '23년도 세입예산에 미편성하여 '23회계연도 지방채 현재액은 없음⁵⁹⁾

- 교육부는 '22년 12월,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기준」을 개정하며 그동안 사용된 용어인 '지방교육채'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로 변경하였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방채 발행보고서」에는 여전히 '지방교육채'로 구분하고 있는 바,
-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기준」중 지방채 발행보고서 작성서식에도 '지방교육채'로 기재하고 있어, 법령 정합성 및 회계관계 용어의 정확성 등을 위해 교육부에 수정·보완을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3-21〉 지방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발행액	-	-	-	-	-	133,440	-	421,065

5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2027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p.45

(단위 : 백만원, %)

구분	'21년말잔액	'22년말예상잔액	지방채발행·상환계획					연평균증가율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지방채발행		0	0	0	0	0	0	0.0
지방채상환		0	0	0	0	0	0	0.0
지방채잔액		0	0	0	0	0	0	0.0

※ 지방채 (예상)잔액 = 전년도 지방채 잔액 + 당해연도 지방채발행 예정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 예정액

5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중 지방채 발행보고서, p.953

(단위 : 원)

지방교육채구분	기간		이율 (%)	기채선	기채액 (A)	기상환액 (B)	당해연도 상환액 (C)	향후 상환계획 (E=A-B-C)	기채사유
	기채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해	당		없	음		

5. 기타

- **기타**는 전년도이월금⁶⁰⁾과 금융자산회수⁶¹⁾로 구성되는 바, '23회계연도 **기타** 결산액은 1조 9,437억 9,5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7,628억 9,400만원) 보다 153.0%, 1조 1,755억 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3-22〉 기타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A)	징수결정액 (B)	결 산 (수 납) 액		예 산 현 액 대 비	
				금 액 (C)	구성비 ^{주1)}	증감(C-A)	수납률(C/A)
합	계	1,943,795	1,943,795	1,943,795	14.6	-	100.0
	전 년 도 이 월 금	1,927,134	1,927,134	1,927,134	14.5	-	100.0
	금 융 자 산 회 수	16,661	16,661	16,661	0.1	-	100.0

※ 주1) 세입결산액(13조 3,145억 1,600만원)에 대한 구성비

60) 전년도이월금 :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명시·사고·계속비이월금)

61) 금융자산회수 : 융자금원금회수(학자대여금회수액), 보증금회수

(1) 전년도이월금

- '23회계연도 **전년도이월금** 결산액은 세입결산액(13조 3,145억 1,600만원)의 14.5%, 1조 9,271억 3,400만원으로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① 순세계잉여금 1조 3,214억 3,000만원과 ③명시·사고이월액 6,021억 4,300만원을 수납 처리한 것임

〈표 3-23〉 전년도이월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		예산현액대비	
				금액(C)	구성비 ^{주1)}	증감(C-A)	수납률(C/A)
합	계	1,927,134	1,927,134	1,927,134	14.5	-	-
	① 순세계잉여금	1,321,430	1,321,430	1,321,430	9.9	-	-
	② 보조금사용잔액	3,559	3,559	3,559	0.0	-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95	1,495	1,495	0.0	-	-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2,060	2,060	2,060	0.0	-	-
	기타지원금 사용잔액	3	3	3	0.0	-	-
	③ 이월금	602,143	602,143	602,143	4.5	-	-
	명시이월금	325,906	325,906	325,906	2.4	-	-
	사고이월금	276,237	276,237	276,237	2.1	-	-

※ 주1) 세입결산액(13조 3,145억 1,600만원)에 대한 구성비

- **전년도이월금** 중 ②보조금사용잔액은 전년도 국고보조금과 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기타기관지원금)의 사용잔액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반납금인 바, '23회계연도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35억 5,900만원을 전액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2) 금융자산회수

- **금융자산회수**는 지난 '22회계연도부터 **자체수입**에서 **기타**로 과목을 이동⁶²⁾한 것으로 '23회계연도 결산액은 166억 6,100만원으로 제출한 바, ①공무원 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에 따른 융자금원금회수 150억 8,100만원과 ②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보증금(2건) 15억 8,000만원이 세입처리된 것으로 확인됨⁶³⁾

〈표 3-24〉 금융자산회수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정액 (B)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금액 (C)	비율 (C/B)	금액 (D)	비율 (D/B)	금액 (E)
합	계	16,661	16,661	16,661	100.0	-	-	-
	융자금원금회수	15,081	15,081	15,081	100.0	-	-	-
	보증금회수	1,580	1,580	1,580	100.0	-	-	-

62) 교육부,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1. 8), p.35

5.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

○ 기금 등 교육환경 변화 수요에 따른 과목 신설, 성질별 과목 및 용어 등 정비

- 회계연도 종료이후 학교회계전출금 사용잔액 반납금 별도 과목 신설, 과목체계 부적합한 '금융자산회수' 과목이동, 기금 등 재원 활용 위한 '예탁금 및 예수금' 과목 신설

6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단위 : 천원)

세입과목	수납액	결의일	내역
보증금회수	80,000	'23. 6.29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소(마포구 동교동 162-5, 4층)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장기임차보증금 반환
	1,500,000	'23. 7.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소(종로구 교북동 11-1, 6층)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장기임차보증금 반환

IV.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 '23회계연도 최종예산은 13조 7,858억 6,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021억 4,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조 3,880억 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4조 9,294억 5,700만원) 보다 △3.6%, △5,414억 5,000만원 감소된 것임
- 세출결산 결과 지출액은 11조 7,664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8%가 집행되어 직전회계연도(12조 8,110억 4,300만원, 85.8%) 보다 집행률은 △4.0%p 감소한 바,
- 불용액은 1조 8,366억 9,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3,239억 8,600만원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에도 직전회계연도보다 1,813억 4,500만원 증가된 7,834억 8,900만원으로 제출됨

〈표 4-1〉 세출예산 결산 총괄(2023~2022)

(단위 : 백만원, %)

구 분	최종예산	전 년 도 이 월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보조금반납 예 정 액		불 용 액	
	(A)	(B)	(C=A+B)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D)	(D/C)	(E)	(E/C)	(F)	(F/C)	(G-C-D-E-F)	(G/C)
2023	13,785,862	602,143	14,388,006	11,766,497	81.8	783,489	5.4	1,322	0.0	1,836,696	12.8
2022	14,633,332	296,125	14,929,457	12,811,043	85.8	602,143	4.0	3,559	0.0	1,512,710	10.1
증감액	△847,469	306,018	△541,450	△1,044,545	△4.0	181,345	1.4	△2236	△0.0	323,986	2.7
증감률	△5.8	103.3	△3.6	△8.2		30.1		△62.8		21.4	

- 부문·정책사업별 세출결산 결과를 검토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총 지출액(11조 7,664억 9,700만원)의 49.5%, 5조 8,271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인건비** 부문에서 총 지출액의 45.5%, 5조 3,511억 5,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교육일반**에서는 총 지출액의 4.3%, 5,096억 5,500만원이 지출되었음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지출액 증감율이 높은 정책사업을 검토한 결과,
 - **교육행정일반**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43.3%, 621억 2,900만원 증가된 것으로 ①물품관리(전자철관) 404억원 증가, ②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인건비 119억원 증가⁶⁴⁾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며,
 - **기관운영**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23.4%, 136억 7,200만원 증가된 것으로 ①평생교육기관환경개선사업비 92억원, ②직속기관환경개선사업비 44억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고,
 - **재무활동**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85.3%, △1조 3,449억 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기금전출금 △1조 1,533억 1,100만원⁶⁵⁾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64)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정책사업이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교육행정일반으로 이관됨

65) 기금별 불용액 :

- ①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 9,200억원
- ②신청사 및 연수원건립기금 전출금 18억 1,100만원
- ③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2,315억

〈표 4-2〉 부문·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 예정액		불용액	
			금액 (B)	비율 (B/A)	구성비 주1)	금액 (C)	비율 (C/A)	금액 (D)	비율 (D/A)	금액 (E=A-B-C-D)	비율 (E/A)
합	계	14,388,006	11,766,497	81.8	100.0	783,489	5.4	1,322	0.0	1,836,696	12.8
	유아 및 초중등교육	7,119,225	5,827,185	81.9	49.5	736,743	10.3	1,322	0.0	553,973	7.8
	인적자원운용	71,339	67,119	94.1	0.6	128	0.2	-	-	4,092	5.7
	교수학습활동지원	786,054	703,071	89.4	6.0	39,440	5.0	482	0.1	43,059	5.5
	교육복지	799,564	767,205	96.0	6.5	1,572	0.2	762	0.1	30,024	3.8
	보건급식	1,222,236	1,096,715	89.7	9.3	37,919	3.1	72	0.0	87,528	7.2
	학교재정지원관리	2,337,455	2,285,901	97.8	19.4	-	-	-	-	51,553	2.2
	학교시설여건개선	1,902,573	907,171	47.7	7.7	657,682	34.6	4	0.0	337,714	17.8
	평생교육	36,564	33,195	90.8	0.3	880	2.4	0	0.0	2,488	6.8
	평생교육	36,564	33,195	90.8	0.3	880	2.4	0	0.0	2,488	6.8
	교육일반	1,731,469	509,655	29.4	4.3	45,865	2.6	-	-	1,175,948	67.9
	교육행정일반	220,103	205,500	93.4	1.7	2,691	1.2	-	-	11,911	5.4
	기관운영	125,961	72,114	57.3	0.6	43,173	34.3	-	-	10,673	8.5
	재무활동	1,385,403	232,040	16.7	2.0	-	-	-	-	1,153,363	83.3
	예비비	111,438	45,307	40.7	0.4	-	-	-	-	66,130	59.3
	예비비및기타	111,438	45,307	40.7	0.4	-	-	-	-	66,130	59.3
	인건비	5,389,309	5,351,153	99.3	45.5	-	-	-	-	38,155	0.7
	인건비	5,389,309	5,351,153	99.3	45.5	-	-	-	-	38,155	0.7

※ 주1) 전체 지출액(11조 7,664억 9,700만원) 대비 해당 부문·정책사업의 구성비율임

〈표 4-3〉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액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회 계 연 도		2022 회 계 연 도		증 감 액	증 감 륜
		지출액 (A)	구 성 비	지출액 (B)	구 성 비	(C = A - B)	(C / B)
합	계	11,766,497	100.0	12,811,043	100.0	△1,044,545	△8.2
	인 적 자 원 운 용	67,119	0.6	61,670	0.5	5,448	8.8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703,071	6.0	662,989	5.2	40,082	6.0
	교 육 복 지	767,205	6.5	807,152	6.3	△39,947	△4.9
	보 건 급 식	1,096,715	9.3	1,159,268	9.0	△62,553	△5.4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2,285,901	19.4	2,249,532	17.6	36,369	1.6
	학 교 시 설 여 건 개 선	907,171	7.7	843,807	6.6	63,363	7.5
	평 생 교 육	33,195	0.3	37,046	0.3	△3,850	△10.4
	교 육 행 정 일 반	205,500	1.7	143,371	1.1	62,129	43.3
	기 관 운 영	72,114	0.6	58,442	0.5	13,672	23.4
	재 무 활 동	232,040	2.0	1,576,945	12.3	△1,344,904	△85.3
	예 비 비 및 기 타	45,307	0.4	43,283	0.3	2,023	4.7
	인 건 비	5,351,153	45.5	5,167,532	40.3	183,620	3.6

2. 불용액⁶⁶⁾

(1) 불용액(집행잔액) 현황

- '23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14조 3,880억 600만원)의 12.8%, 1조 8,366억 9,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보다 21.4%, 3,239억 8,6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서울시가 예산현액의 4.3%를 불용⁶⁷⁾시킨 것을 고려하면 사업내용과 집행시기에 상대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불용률 12.8%는 과도한 규모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4-4〉 불용액 발생 현황 (2023~2021)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불 용 률	전년대비 증감액 (증 감 률)
2023	14,388,006	1,836,696	12.8	323,986 (21.4)
2022	14,929,457	1,512,710	10.1	1,094,450 (261.7)
2021	12,162,447	418,259	3.4	117,154 (38.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66) 용어사용 관련사항

- 2014년 11월 신설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2에서 세출결산에 관하여 “집행잔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사용되어 온 법정용어인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변경됨
- 2016년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 바, 현재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세출결산 명시사항으로 “집행잔액”을 규정하고 있음
-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에는 불용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예정액”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는 '24년 현재까지도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부분적으로 병기하고 있음에 따라, 동 검토보고에는 “불용액”으로 병용함

67) 예산현액 51조 4,900억 4,800만원중 4.3%, 2조 2,388억 5,000만원이 불용됨

- 불용액(집행잔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①**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9.7%, 1조 2,800억 3,700만원이며 ②**지출잔액**이 14.4%, 2,635억 6,900만원, ③**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10.3%, 1,891억 8,400만원, ④**예비비 및 기타**가 3.6%, 653억 7,800만원으로 제출된 바,

〈표 4-5〉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2023~20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68)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및 기타
2023	14,388,006	1,836,696	189,184 (10.3)	-	1,280,037 (69.7)	38,526 (2.1)	263,569 (14.4)	65,378 (3.6)
2022	14,929,457	1,512,710	46,570 (3.1)	1,066,337 (70.5)	96,331 (6.4)	15,981 (1.1)	264,045 (17.5)	23,442 (1.5)
2021	12,162,447	418,259	51,219 (12.2)	-	60,630 (14.5)	14,721 (3.5)	286,123 (68.4)	5,562 (1.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68)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23.12.), p.28

3.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용어설명 및 사례

- ①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 : 자체재원대응투자가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재원에 대한 정산 잔액
 ②예산절감액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③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및 교육행정기관의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교육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예) 집단민원 발생으로 해당사업 미착공,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하여 발생된 잔액 등
- ④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간 동안 재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으로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임
 ⑤지출잔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예산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조금반납예정액과 보조금대응투자정산잔액은 제외
 ⑥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과목(710-01, 710-03)의 잔액을 기재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한 불용액은 직전 회계연도(963억 3,100만원)보다 1,228.8%, 1조 1,837억 600만원 증가한 1조 2,800억 3,700만원이 발생한 것이나, 불용액중 79.7%, 1조 203억 1,100만원이 기금전출금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으로 검토됨
 -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465억 7,000만원) 보다 306.2%, 1,426억 1,400만원 증가한 1,891억 8,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불용액중 70.3%, 1,330억원은 기금전출금 미집행에 따라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계획」⁶⁹⁾에 따라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된 1조 3,844억 3,900만원중 83.3%, 1조 1,533억 1,100만원을 불용한 것이며 불용액중 1조 203억 1,100만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1,330억원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을 사유로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검토하면, 예산담당관 1조 100억 5,800만원(55.0%), 미래학교추진단 2,873억 3,700만원(15.6%), 체육건강 예술교육과 812억 200만원(4.4%), 교육시설관리본부 627억 5,000만원(3.4%) 순서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 바,
- 예산담당관의 경우에는 불용액(1조 100억 5,800만원)중 91.1%, 9,200억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세출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기금전출금(통합교육재정안정화) 1조 1,200억원중 9,200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제출됨

69)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8604('23. 9.2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안)"
 -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예정 통보('23. 9.21)에 따라 기금전출금 등의 미집행을 통해 세출예산 절감 추진

- 미래학교추진단의 경우, 불용액(2,873억 3,700만원)중 52.6%, 1,511억 9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1,330억원(46.3%)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을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은 기금전출금(교육시설환경 개선) 985억원과 그린스마트 시설비(국고보조금) 374억 8,800만원 등이며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금액**은 그린스마트학교 국고보조금에 대응편성된 자체예산인 기금전출금(교육시설환경개선) 1,330억원인 것으로 제출됨

- 체육건강예술교육과의 경우, 불용액 812억 200만원중 67.2%, 545억 3,300만원이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을 사유로, 194억 1,300만원 (23.9%)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은 지방자치단체보조금(시·구)에 대응편성된 자체 예산인 학교급식운영 사업 545억 3,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 교육시설관리본부의 경우, 불용액 627억 5,000만원중 67.7%, 424억 6,6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191억 7,700만원 (30.6%)은 **지출잔액**을 사유로, 11억 600만원(1.8%)는 **낙찰차액**을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 424억 6,600만원은 내진보강중 공정간섭으로 인한 시설사업 취소 또는 연기, 현장실사 결과 공사물량 감소, 학교장 요청으로 인한 사업 취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

- 다만,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 구분에 있어 교육부의 기준⁷⁰⁾에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의 경우에는 **낙찰차액**으로 분류하고, 세출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지출잔액**으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70)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23.12.), p.28

-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집행잔액 발생사유⁷¹⁾와 결산서상 집행잔액 구분⁷²⁾을 검토한 결과,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낙찰차액**에 따른 것으로 작성하고도 결산서상에는 **지출잔액**으로 기재하고 있어 일부사업에서 집행잔액 발생사유 구분이 혼용되어 불명확한 것으로 검토됨
- 특히,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지원과 소관 학교신증설 등 시설사업비 세부사업에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을 **지출잔액**으로 작성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바, 향후 교육부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잔액 발생사유 작성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71)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내역(기재 사례 일부 발췌)

주관부서	세부사업	사업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 예정액	집행잔액 발생 사유구분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
교육시설 관리본부	학교시설 환경개선			...			지출잔액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지출잔액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4-6-8.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내역」, 재구성
72) 나-2. 세출결산조서(소관별·목별)

□ 소관 : 교육시설관리본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다음연도 이월액 ③	보조금 반납 예정액 ④	집행잔액 ⑤=①-②-③-④			
					소계	보조금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및기타
학교시설 환경개선	325,065	204,161	68,764	-	52,140	-	-	38,154
						-	13,985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p.183, 재구성

〈표 4-6A〉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예산현액	불용액	구성비	발생 사유					
				보조금 대응투자 장기자산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액	예비 비 및 기타
합 계	14,388,006	1,836,696	100.0	189,184 (10.3)	-	1,280,037 (69.7)	38,526 (2.1)	263,569 (14.4)	65,378 (3.6)
대 변 인	6,019	100	0.0	-	-	-	61	38	-
감 사 관	1,675	161	0.0	-	-	-	-	161	-
총 무 과	53,203	2,927	0.2	-	-	79	-	2,848	-
안전총괄팀등만	1,093	342	0.0	-	-	13	-	329	-
정책기획관	4,794	276	0.0	44	-	-	-	231	-
예산담당관	6,362,717	1,010,058	55.0	-	-	920,000	-	24,680	65,378
행정관리팀등만	2,039	113	0.0	-	-	-	-	113	-
참여협력팀등만	189,723	9,524	0.5	1,536	-	-	-	7,987	-
노사협력팀등만	622,701	16,286	0.9	-	-	-	-	16,286	-
대외협력팀등만	1,191	252	0.0	-	-	79	-	172	-
디지털·혁신 미래교육과	248,182	20,465	1.1	68	-	16,681	1,884	1,830	-
유아교육과	593,240	17,951	1.0	-	-	15,077	-	2,874	-
초등교육과	191,590	5,887	0.3	-	-	201	-	5,686	-
중등교육과	318,381	10,759	0.6	-	-	18	-	10,740	-
교수학습· 기초학력지원과	32,131	9,670	0.5	-	-	-	0.3	9,669	-

〈표 4-6B〉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 업 부 서	예산현액	불 용 액	구 성 비	발 생 사 유					
				보 조 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 찰 차 액	지 찬 출 액	예비 비 및 기타
평 생 교 육 과	38,938	2,468	0.1	0	-	11	144	2,312	-
민 주 시 민 생활교육과	41,601	2,653	0.1	-	-	-	103	2,549	-
진로직업교육과	83,630	1,078	0.1	-	-	186	40	852	-
체 육 건 강 예술교육과	1,207,604	81,202	4.4	54,533	-	19,413	362	6,892	-
특수교육과	47,149	1,280	0.1	-	-	-	23	1,256	-
학교지원과	1,512,561	41,967	2.3	-	-	86	-	41,881	-
교육재정과	88,273	3,085	0.2	-	-	1,877	-	1,208	-
교육시설안전과	287,194	37,859	2.1	-	-	13,998	5,687	18,173	-
미래학교추진단	308,267	287,337	15.6	133,000	-	151,109	33	3,194	-
청사이전추진단	38	5	0.0	-	-	-	-	5	-
동 부 교육지원청	97,868	11,773	0.6	-	-	4,674	3,502	3,596	-
서 부 교육지원청	172,986	16,615	0.9	-	-	9,302	3,889	3,423	-
남 부 교육지원청	176,063	15,220	0.8	-	-	6,807	2,164	6,248	-
북 부 교육지원청	151,917	27,106	1.5	-	-	18,329	2,529	6,247	-
중 부 교육지원청	76,060	7,585	0.4	-	-	4,237	1,278	2,069	-
강 동 송 파 교육지원청	231,027	40,397	2.2	-	-	12,608	335	27,453	-

〈표 4-6C〉 사업부서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예산현액	불용액	구성비 [※]	발생사유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 비및 기타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195,855	22,958	1.2	-	-	6,558	2,913	13,486	-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180,400	25,895	1.4	-	-	16,531	4,759	4,604	-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114,881	12,329	0.7	-	-	5,112	2,414	4,802	-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86,786	10,518	0.6	-	-	7,494	1,762	1,261	-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88,059	11,931	0.6	-	-	6,378	3,138	2,414	-
직속기관 ^{주2)}	572,153	70,647	3.8	-	-	43,171	1,495	25,981	-

※ 주1) 구성비는 전체 불용액(1조 8,366억 9,600만원)중 해당 사업부서의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2) 직속기관은 교육연구정보원, 융합과학교육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교육시설관리본부⁷³⁾, 평생학습관(4개관), 도서관(17개관)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73) 교육시설관리본부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용액	구성비 [※]	발생사유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및 기타
424,627	62,750 (100)	3.4	-	-	42,466 (67.7)	1,106 (1.8)	19,177 (30.6)	-

* 구성비 : 전체불용액(1조 8,366억 9,600만원)중 사업부서의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 또한 교육부는 지난 '20년 12월, 「2021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을 개정하며 불용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해 **보조금 반납 예정액과 집행잔액(불용액)**을 분리한 바,

- **보조금 반납예정액**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을 대상으로 '23년도에 교부된 보조금중 반환(예정)할 금액으로 '23회계연도 결산 결과 13억 2,200만원의 보조금 반납예정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보조금 지원사업은 서울시교육청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포함하여 편성·심의·의결·집행되고 있어 보조금 미집행 예산을 별도 명시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고, 보조금 반납예정액만큼 재정책임이 희석되는 이른바 '불용액에 대한 착시현상'도 발생될 수 있어 재정운용의 책임성이 희석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7〉 세출결산 집행잔액 변경 내역 상세

결산서중 세출결산 ('20회계연도까지 적용)

과목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 용 결정액			계	명시 이월	사 고 이월	계 속 비 이월	소계	계획 변경 및 취 소	예산 절 감 액	지 급 사 유 미 발 생 (예비비 등)	집 행 잔 액
		전용액	이 용 · 이 체											



결산서중 세출결산 ('22회계연도부터 적용)^{주1)}

과목	예산액	예산성립 후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예정액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 용 결정액			계	명시 이월	사 고 이월	계 속 비 이월		소계	보조금 대응 투자 정산 잔액	예산 절 감 액	계 획 변 경 등 집 행 사 유 미 발 생	예비비 및 기 타 지 출 잔 액
		전용액	이 용 · 이 체												

※ 주1) '21회계연도부터 “보조금반납예정액”이 구분되었으나, '22회계연도에 집행잔액 구분 개정되어 현 기준의 집행잔액 내역은 '22회계연도부터 적용

〈표 4-8〉 보조금 반납예정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세 부 사 업	보 조 금 반납예정액	발 생 사 유 (재 원)
합	계	1,322	
참여협력담당관	교 육 비 지 원	729	입 학 준 비 금 잔 액 (지 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디 지 털 · 혁 신 미 래 교 육 과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0.1	발 명 교 실 운 영 잔 액 (국 고 보 조 금)
유 아 교 육 과	누 리 과 정 지 원	33	만 3 ~ 5 세 유아 학 비 잔 액 (유아 교육 특별 회 계 전 입 금)
중 등 교 육 과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0.02	학교 현장 체험 학습 버스 지원 잔 액 (지 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교 수 학 습 · 기 초 학 력 지 원 과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1	원어민 교사 및 보조 강사 운영 잔 액 (지 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평 생 교 육 과	도 서 관 운 영	0.004	공공 도서관 실감형 창작 공간 조성 잔 액 (국 고 보 조 금)
민 주 시 민 생 활 교 육 과	대 안 교 육 운 영	476	대 안 교 육 기 관 지 원 잔 액 (지 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체육건강예술교육과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4	초 등 스포츠 강사 운영 잔 액 (국 고 보 조 금)
	학 교 급 식 운 영	1	무 상 급 식 비 잔 액 (지 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학 교 보 건 관 리	71	학 교 흡 연 예 방 사 업 잔 액 (국 고 보 조 금)
교 육 시 설 안 전 과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4	특 별 교 육 경 비 보 조 잔 액 (지 방 자 치 단 체 보 조 금)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2)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한 107개 사업중 10개 세부사업에서 전체 불용액(1조 8,366억 9,600만원)의 90.6%, 1조 6,639억 7,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검토됨

〈표 4-9〉 불용액 발생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주2)	2 0 2 3 회 계 연 도				2 0 2 2 회 계 연 도				불용액 증감액 (A-B)
	예산현액	불용액(A)	불용률	구성비 ^{주3)}	예산현액	불용액(A)	불용률	구성비 ^{주4)}	
합 계	10,657,594	1,663,978	15.6	90.6	10,267,435	315,427	3.1	20.9	1,348,542
기금전출금	1,384,439	1,153,311	83.3	62.8	1,472,857	-	-	0.0	1,153,311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1,717,566	333,148	19.4	18.1	1,255,580	122,237	9.7	8.1	210,911
학교급식운영	956,263	54,990	5.8	3.0	917,637	43,510	4.7	2.9	11,480
인건비재정 결 함 지 원	1,311,501	27,265	2.1	1.5	1,282,377	1,563	0.1	0.1	25,702
학교보건관리	73,782	19,783	26.8	1.1	187,680	30,560	16.3	2.0	△10,777
운영비재정 결 함 지 원	284,817	18,461	6.5	1.0	229,972	4,284	1.9	0.3	14,177
학교정보화 여 건 개 선	51,398	15,084	29.3	0.8	31,881	470	1.5	0.0	14,614
누리과정지원	494,866	14,640	3.0	0.8	567,412	18,360	3.2	1.2	△3,720
교육공무직원 인 건 비	521,765	14,537	2.8	0.8	482,747	16,685	3.5	1.1	△2,147
교원인건비	3,861,197	12,756	0.3	0.7	3,839,290	77,758	2.0	5.1	△65,001

※ 주1) 불용액 10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한정함

주2) 내부유보금, 예비비 불용액은 제외함

주3) 2023회계연도 총 불용액(1조 8,366억 9,600만원) 대비 세부사업의 불용액 비율임

주4) 2022회계연도 총 불용액(1조 5,127억 1,000만원) 대비 세부사업의 불용액 비율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① 재무활동

- 재무활동⁷⁴⁾중 대규모로 불용액이 발생한 **기금전출금**은 전체 불용액(1조 8,366억 9,600만원)의 62.8%, 1조 1,533억 1,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된 바,
- 불용액을 발생 사유별로 구분하면, ①**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8.5%, 1조 203억 1,100만원, ②**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11.5%, 1,330억원으로 확인됨

〈표 4-10〉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재무활동)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대 응 투 자 정 산 잔 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생	낙 차	차 액	지 잔	출 액
합 계	1,384,439	1,153,311 (100.0)	133,000 (11.5)	-	1,020,311 (88.5)	-	-	-	-
기 금 전 출 금	1,384,439	1,153,311	133,000	-	1,020,311	-	-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 '23년 9월, 교육부가 국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로 보통교부금을 기편성액(6조 3,622억 5,300만원)보다 △9,131억 8,700만원 감액한 5조 4,490억 6,600만원으로 추계하여 통보⁷⁵⁾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계획」⁷⁶⁾을 수립하고,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된 1조 3,844억 3,900만원중 83.3%, 1조 1,533억 1,100만원을 불용처리(기금으로 미전출)한 것으로 확인됨

74) 재무활동비는 지방채상환등, BTL상환, 기금전출금 총 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75)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5333('23. 9.2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협조 요청 사항”

76)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8604('23. 9.2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안)”

-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의결('23. 7. 5)된 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교부변경 통보('23. 9.21)되어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 조정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동 불용사례의 경우, 편성된 보통교부금이 교부되지 않아 장부상 허수에 불과한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한 사례로서 회계연도중 교부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되는 예산액을 감액조정하지 않는다면 세출결산 결과에는 불용액 발생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 기금전출금의 불용(미전출)에 따라 연동되는 기금의 실제 수납액을 감소시켜 기금의 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11〉 기금전출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 예산액 (A)	추경증감액 (B)	변경사용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불용액 (F=D-E)	불용률 (F/D)
합	계	1,234,439	150,000	-	1,384,439	231,127	1,153,311	83.3
	통합교육재정안정화 기금전출금	970,000	150,000	-	1,120,000	200,000	920,000	82.1
	신청사맞춤수업지원 기금전출금	32,939	-	-	32,939	31,127	1,811	5.5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전출금	231,500	-	-	231,500	-	231,500	100.0

※ 불용액 1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한정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② 인건비

- 인건비⁷⁷⁾중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한 3개 세부사업인 ①**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②**교육공무직원 인건비**, ③**교원 인건비**는 전액 **지출잔액**을 사유로 발생한 불용액으로 전체 불용액(1조 8,366억 9,600만원)의 3.0%, 545억 5,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되었음

〈표 4-12〉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인건비)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 조 금 대 응 정 산	투 자 자 산	예 산 절 감	계 획 변경 집 행 미	경 등 사 유 발 생	낙 차	찰 액 지 잔 출 액 예 비 비 및 기타
합 계	5,694,465	54,558 (100.0)	-	-	-	-	-	-	54,558 (100.0)
인 건 비 재 정 결 함 지 원	1,311,501	27,265	-	-	-	-	-	-	27,265
교육공무직원 인 건 비	521,765	14,537	-	-	-	-	-	-	14,537
교 원 인 건 비	3,861,197	12,756	-	-	-	-	-	-	12,756

※ 불용액 5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한정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 중등교육과 및 학교지원과 소관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은 사립 중·고·특수 학교 300교에 인건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1조 3,115억 100만원) 대비 2.1%, 272억 6,500만원이 불용된 것임

77) 인건비는 교원·교육전문직·지방공무원 등 공무원인건비와 계약제교원·계약제근로자·교육공무직원인건비, 사립학교 교직원인건비를 지원하는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표 4-13〉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 예산액 (A)	추경증감액 (B)	변경사용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불용액 (F=D-E)	불용률 (F / D)
합	계	1,311,501	-	-	1,311,501	1,284,236	27,265	2.1
	인 건 비 재정결함보조	1,196,408	-	-	1,196,408	1,176,108	20,300	1.7
	교 원 명 예 퇴 직 수 당	29,600	-	-	29,600	27,355	2,244	7.6
	사 무 직 원 명예퇴직수당	743	-	-	743	728	14	1.9
	맞춤형복지비	19,636	-	-	19,636	18,142	1,494	7.6
	사 립 교 원 성 과 상 여 금	59,000	-	-	59,000	56,553	2,446	4.1
	사립사무직원 성 과 상 여 금	6,113	-	-	6,113	5,348	765	12.5

- 학교지원과 소관인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에서 발생한 불용액 203억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원 보다 실제 지원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⁷⁸⁾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 중등교육과 소관 **교원명예퇴직수당**에서 발생한 불용액 22억 4,400만원은 명예퇴직 최종 신청인원이 349명으로 당초 예상인원 370명보다 △21명 감소되어 지출잔액이 발생되고, **사립교원성과상여금**에서 발생한 불용액 24억 4,600만원의 경우에도 실제 신청 금액이 예상보다 감소되어 지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78) '21년~'23년도 인건비재정결함보조 지원대상 현황

- '23년도 편성대상 대비 실제 지원대상자수 감소 (교원 △300명, 사무직원 △88명)
-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연 도	학 교 수	교원				사 무 직 원	(지원대상) 합 계
		정원	(정규)현원	(기간제)현원	(현원)계		
2021	295	15,087	11,218	3,758	14,976	1,565	16,541
2022	297	14,977	10,928	3,912	14,840	1,915	16,755
2023	300	14,825	10,341	4,452	14,793	1,938	16,731

- 인건비의 경우, 예산편성 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대상 인원과 보수액의 차이가 있고, 휴직과 퇴직 등의 경우 사전예측이 용이하지 않아 소요예산 산출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회계연도중 불용예상액을 감조정함으로써 불용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23회계연도에는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예산현액(5,217억 6,500만원) 대비 2.8%, 145억 3,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 불용액(166억 8,500만원) 보다 △21억 4,8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4-14〉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 예산액 (A)	추경증감액 ^{제)} (B)	변경사용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불용액 (F=D-E)	불용률 (F / D)
합	계	522,665	-	△900	521,765	507,228	14,537	2.8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	510,100	△1,757	-	508,342	494,050	14,292	2.8
	맞춤형복지비	12,564	1,757	△900	13,422	13,177	244	1.8

※ 주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3. 7. 5) 증·감액 사유

- 맞춤형복지비 인상(1인 10만원)분 편성을 위해 통합인건비 △17억 5,700만원 감액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중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142억 9,200만원으로 ①교육공무직원 대체인건비 83억 4,800만원, ②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44억 8,100만원, ③사립학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11억 4,100만원, ④교육공무직원 법정부담금 3억 2,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추경을 통해 예산 일부를 감액조정(△17억 5,700만원) 하였음에도 '22회계연도 대규모 불용(160억 5,200만원)⁷⁹⁾에 이어 '23

79) '22회계연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세부사업) 불용액(166억 8,400만원)중 교육공무직원 통합인건비(세부사업) 불용액(160억 5,200만원)

회계연도에도 100억원이 넘는 불용(142억 9,200만원)이 발생한 것인바, 예산편성시 정밀한 추계에 근거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중 불용예상액은 적극적인 조정을 실시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지난 '23년 7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7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23년 10월, △9억원을 감액 변경 사용하였으며 결산결과 2억 4,4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법」 제150조⁸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예산담당관 소관 **교원 인건비**는 예산현액(3조 8,611억 9,700만원) 대비 0.3%, 127억 5,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불용액 777억 5,800만원)보다 △650억 200만원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표 4-15〉 교원인건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본예산액 (A)	추경·증·감액 [※] (B)	변경사용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불용액 (F=D-E)	불용률 (F / D)
합	계	3,887,375	△26,192	15	3,861,197	3,848,441	12,756	0.3
	보수	2,935,223	-	15	2,935,238	2,924,830	10,407	0.4
	법정부담금	781,578	△26,192	-	755,385	754,611	773	0.1
	명예퇴직수당	107,600	-	-	107,600	106,100	1,499	1.4
	맞춤형복지비	62,974	-	-	62,974	62,898	75	0.1

※ 주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23. 7. 5) 증·감액 사유
- 법정부담금 불용예상액 △261억 9,200만원 감액

80)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전문생략)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원 인건비 중 **보수**는 예산현액 대비 0.4%, 104억 700만원이 불용되었고, **법정부담금**은 예산현액 대비 0.1%, 7억 7,300만원, **명예퇴직수당**은 예산현액 대비 1.4%, 14억 9,900만원이 불용된 바,

- 교원 인건비는 '23회계연도에는 **법정부담금** 불용예상액 261억원 감액 조정 등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⁸¹⁾ 객관적인 추계와 세출예산 경정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81) ■ '23~'21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2 3 년 (전 년 대 비 증 감)	' 2 2 년 (전 년 대 비 증 감)	' 2 1 년 (전 년 대 비 증 감)
12,756(△65,002)	77,758(△26,415)	104,173(94,951)

③ 시설사업비

- 시설사업비⁸²⁾중 대규모로 불용액이 발생한 ①**학교시설환경개선**, ②**기관시설유지관리**, ③**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은 전체 불용액(1조 8,366억 9,600만원)의 19.0%, 3,482억 2,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된 바,
- 불용액을 발생 사유별로 구분하면, ①**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59.2%, 2,060억 2,500만원, ②**지출잔액**에 따른 불용액이 30.7%, 1,067억 6,600만원, ③**낙찰차액**이 10.2%, 354억 2,700만원으로 확인됨

〈표 4-16〉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시설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보조금대응 투자정산 잔 액	예 산 절 감액	계획변경등 집 행 사 유 미 발 생	낙 찰 차 액	지 출 잔 액	예비비 및 기 타
합 계	1,914,998	348,220 (100.0)	-	-	206,025 (59.2)	35,427 (10.2)	106,766 (30.6)	-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1,717,566	333,148 (100.0)	-	-	197,315 (59.2)	33,127 (10.0)	102,706 (30.8)	-
기 관 시 설 유 지 관 리	85,969	7,798 (100.0)	-	-	3,857 (49.5)	1,357 (17.4)	2,583 (33.1)	-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111,462	7,272 (100.0)	-	-	4,852 (66.7)	943 (13.0)	1,477 (20.3)	-

※ 불용액 5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한정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82) 시설사업비는 기관시설유지관리,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환경개선, 학교시설확충, 학교신증설 총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환경개선**은 예산현액(1조 7,175억 6,600만원) 대비 19.4%, 3,331억 4,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①**둔촌초**⁸³⁾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의 경우, '22회계연도로부터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8억 4,200만원중 48.2%, 61억 8,7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23년 6월, 둔촌초 개축공사 현장 내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서 지장물(지하공동구)이 발견되어 조합측 시공사의 지하공동구 철거공사로 인해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⁸⁴⁾ 연도내 일부 공사 완료가 불가하여 불용 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 ②**혜원여고**⁸⁵⁾ **가동(본관) 드라이비트해소**(예산현액 대비 97.2%, 19억 800만원), ③**서울고**⁸⁶⁾ **교사(본관)드라이비트해소**(예산현액 대비 97.2%, 12억 2,400만원), ④**세류초**⁸⁷⁾ **교사동 외부창호개선**(예산현액 대비 95.7%, 9억 2,900만원)은 내진보강 간섭으로 인해 불용된 것으로,

■ 동 사업 추진 이전에 내진간섭 여부를 점검하고, 내진공사 연계에 대한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미 사업 예산을 편성한 후 내진보강 연계 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되어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교육부에서는 「'24~'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⁸⁸⁾」에 따라 '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이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사업부서에 따르면 '24년 3월 기준, 교육청 소관 학교 내진보강 대상

83)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8길 27

84)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8905('23. 9.22), “공사기간 연장보고(둔촌초 그린스마트 개축 공사)”

85)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58길 39

86)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7

87) (강동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64

88) 교육부 보도자료('23.12.11),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본격 추진」

건물⁸⁹⁾은 총1,520동이며 '24년부터 6년간 연간 평균 256동의 내진 보강을 추진할 계획으로,⁹⁰⁾

- 향후 내진보강과 간섭되는 공사들에 대한 예산요구시 내진공사 추진과 사전 조율을 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⑤**BTL사업운영 제안비용보상비**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⁹¹⁾사업 제안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에게 사업제안비 일부를 보상해주는 비용으로 예산 현액(17억 4,100만원)중 85.0%, 14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은 「'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이 '21년 12월 가결⁹²⁾되어 '22년도 본예산에 17억 4,100만원을 편성한 것이나 사업시행자 지정 지연을 이유로 '23회계연도로 전액 명시이월한 것으로,
- '21년 12월, 전문지원기관(KEDI, 한국교육개발원)에 보상비 적정성을 검토 의뢰한 결과, 항만, 도로 등에 비해 설계가 단순한 학교 공사에 적합하도록 보상비를 감액함에 따라 예산현액 17억 4,100만원중 2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7,9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임
- 동 불용사례의 경우, '21년 12월에 전문지원기관에서 보상비 감액 의견을 회신 받았으므로 '22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었을

89) 창고·경비실 등 소규모 비교육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학교건물(사립유치원 제외)

9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4498('24. 4.17), “2024년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안)”

■ 학교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연차별 계획

내진보강 미확보건물	내진보강 대상건물	총소요액	해소 소요기간	연간투자계획	
				건물동수	예정액
1,678동	1,520동*	4,873억	6년	256동	812억

* 내진미확보건물(1,678동)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158동) = 1,520동

91) BTL(Build Transfer Lease) :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정부에 임대하는 방식

92) '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안번호 2937, 제출일 '21.10.15, '21.12.22 수정가결)
- 5개사업 8개 학교(동구로초, 도신초/ 금호여중, 청운중/ 유현초, 수유초/ 신화중 / 청량중 개축 임대형 민자사업)

것이나, 예산 조정없이 전액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14억 7,9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향후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⑥**상봉중**⁹³⁾ **교사 바닥개선**은 예산현액 13억 7,100만원중 3억 9,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67.4%, 9억 2,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당초 총 78.5실로 교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실시 전 현장 조사 결과 개선 필요한 물량은 35실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물량이 감소하였고, 바닥자재도 목재마감인 플로어링에서 단가가 낮은 비닐계로 변경하여 9억 2,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향후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세출재원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17A〉 학교시설 환경개선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불 용 액	불 용 률	발 생 사 유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① 둔 촌 초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12,842	6,187	48.2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지작물 (공동구)이 발견되어 공사완료 불가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위 려 초 그린스마트스쿨시설비	12,649	5,879	46.5	연도내 공사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교육시설 관리본부	②혜원여고 가동(본관) 드라이비트 해소	1,962	1,908	97.2	내진성능평가예산 확보 후 사업 진행 예정
미래학교 추진단	⑤ B T L 사업 운영 제안비용보상비	1,741	1,479	85.0	전문지원기관(KEDI)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보상비 감액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등원중 교사1동 외부창호개선	2,151	1,459	67.9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동 부 교육지원청	내진보강사업	1,834	1,351	73.7	안평초, 장평초, 장안중 학교요청, 드라이비트 해소 간섭에 따라 연기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③서울고 교사(본관) 드라이비트 해소	1,260	1,224	97.2	내진보강연계 및 학사일정에 따른 사업 추진시기 조정
북 부 교육지원청	월계고 교사동 화장실개선	2,286	1,175	51.4	학교 측 요구로 전면에서 부분 화장실개선으로 계획 변경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동작고 교사동 내진보강사업	2,371	1,069	45.1	외벽개선공사와 병행추진하여 공사범위 중첩에 따른 예산절감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서울정문 학교 스프링클러설치	1,026	978	95.3	학교요청에 따라 공사 연기
교육시설 관리본부	상명중 교사동 외부창호개선	1,719	974	56.7	설계결과 사업물량 감소
북 부 교육지원청	중원중 본관동 내진보강사업	1,198	960	80.2	내진보강량 및 보강방안 변경으로 보강소요비 감소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④세륜초 교사동 외부창호개선	972	929	95.7	내진보강연계 및 학교요구로 사업 지연

〈표 4-17B〉 학교시설 환경개선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불 용 액	불 용 률	발 생 사 유
동 부 교육지원청	⑥ 상 봉 중 교 사 바 닥 개 선	1,371	925	67.4	자 재 변 경 및 물 량 감 소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번 동 초 본 관 외 부 창 호 개 선	1,726	910	52.7	설 계 및 현 장 조 사 결 과 사 업 물 량 감 소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동 덕 여 고 석 면 해 체 제 거 작 업	1,396	853	61.1	설 계 결 과 사 업 물 량 감 소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양 강 중 본 관 외 부 창 호 개 선	1,832	801	43.7	명시이월 예산으로 우선집행하여 '23년 편성예산 불필요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서 정 초 본 관 바 닥 개 선	752	738	98.2	체 육 관 동 바 닥 개 선 과 병 행 추진하기 위해 공사 연기
북 부 교육지원청	노원중 체육관 및 목욕탕 당 환 경 개 선 공 사	1,343	679	50.6	교 육 부 특 별 교 부 금 시 설 비 기준단가 차이로 잔액 발생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강 서 공 고 본 관 외 벽 개 선	1,287	662	51.4	낙 찰 차 액 및 집 행 잔 액
남 부 교육지원청	한강미디어고 교사동 외 부 창 호 개 선	3,465	651	18.8	입찰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경 기 여 고 교 사 동 냉 난 방 개 선	981	646	65.8	석 면 연 계 및 학 사 일 정 에 따른 사업 추진시기 조정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양 재 고 교 사 동 외 부 창 호 개 선	1,872	627	33.5	낙 찰 차 액 및 집 행 잔 액
동 부 교육지원청	봉 화 중 체 육 관 전 면 보 수	1,774	618	34.9	교 육 부 특 별 교 부 금 시 설 비 기준단가 차이 및 물량감소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창 덕 여 고 교 사 동 화 장 실 보 수	1,762	609	34.6	낙 찰 차 액 및 준 공 정 산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신 정 초 교 사 동 바 닥 개 선	2,062	609	29.6	낙 찰 차 액 및 집 행 잔 액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언 주 중 본 관 동 내 진 보 강 사 업	605	598	99.0	주 민 민 원 에 따 라 학교에서 공사시기 변경 요청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신 서 초 본 관 외 부 창 호 개 선	1,377	578	42.0	낙 찰 차 액 및 집 행 잔 액

〈표 4-17C〉 학교시설 환경개선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발 생 사 유
교육시설 관리본부	상 명 고 본 관 외 부 창 호 개 선	1,602	575	35.9	설 계 결 과 사 업 물 량 감 소
북 부 교육지원청	중 원 중 체 육 관 전 면 보 수	1,089	545	50.1	낙 찰 차 액 및 준 공 정 산
남 부 교육지원청	세 곡 초 본 관 및 신 관 외 벽 개 선	1,643	543	33.1	내 진 공 사 와 중 첩 된 구 간 은 내 진 공 사 예 산 사 용
중 부 교육지원청	장 충 초 체 육 관 전 면 보 수	1,274	543	42.7	낙 찰 차 액 에 따 른 집 행 잔 액
동 작 관 악 교육지원청	봉 림 중 교 사 동 내 진 보 강 사 업	1,436	538	37.5	낙 찰 차 액 및 지 출 잔 액
북 부 교육지원청	월 계 고 교 사 동 바 닥 개 선	1,184	523	44.2	낙 찰 차 액 및 준 공 정 산
동 작 관 악 교육지원청	삼 일 초 교 사 동 바 닥 개 선	690	506	73.4	자 재 변 경 으 로 인 해 소 요 금 액 감 소
강 동 송 파 교육지원청	토 성 초 교 사 동 및 체 육 관 냉 난 방 개 선	523	506	96.7	학 교 측 요 구 로 사 업 계 획 잠 정 연 기
강 동 송 파 교육지원청	강 명 초 외 2 2 교 L E D 조 명 임 차	719	503	70.0	낙 찰 차 액(낙 찰 륜, 48.8%), 학 교 자 체 L E D 개 선 등 에 따 라 물 량 감 소

※ 주1) 불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주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제외함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서 별도 검토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기관시설유지관리**는 예산현액(859억 6,900만원) 대비 9.1%, 77억 9,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학생교육원(퇴촌야영교육원)⁹⁴⁾ 사면유실 복구 및 배수로개선**은 '22년도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이월예산으로 14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일부 구역을 산림청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사업 범위가 축소되고 산출물량이 감소하여 예산현액의 58.7%, 8억 3,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⁹⁵⁾

94)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95)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125('23. 1.20)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퇴촌야영교육원) 추진 현황 제출”

- **학생교육원(대천임해)⁹⁶⁾ 별관동 드라이비트해소**는 '23년도 본예산으로 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연수원 신규 건립이 중단되고 대천임해교육원(별관동)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이 검토됨에 따라 연수원(교직원힐링센터) 구축사업 범위 중첩과 예산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어⁹⁷⁾ 예산현액중 기집행액 2,000만원을 제외한 96.1%, 4억 8,800만원을 불용시킨 것으로 확인됨

〈표 4-18〉 기관시설유지관리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불 용 액	불 용 률	발 생 사 유
교육시설 관리본부	학생교육원(퇴촌) 사면유실복구 및 배수로개선	1,426	836	58.7	사업범위 축소 및 산출물량 감소
교육시설 관리본부	마포평생학습관 외부창호개선	1,404	400	28.6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교육시설 관리본부	학생교육원(대천임해) 별관동 드라이비트해소	508	488	96.1	연수원(교직원힐링센터) 구축 사업범위 중첩으로 취소

※ 주1) 불용액 4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주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제외함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서 별도 검토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급식환경개선**은 예산현액(1,114억 6,200만원) 대비 6.5%, 72억 7,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성북초⁹⁸⁾ 본관 급식실 개선**은 '23년도 본예산으로 10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산액의 99.2%, 10억 6,700만원이 불용된 것임

96)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2길 19

97)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시설1과-2452('23.10.13) “학생교육원(대천임해) 별관동 시설사업 추진 변경 보고”

98) (성북강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0

- 동 사업은 당초 ①'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나, ②학교 요청에 따라⁹⁹⁾ 급식실 개선에서 급식실 이전 증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¹⁰⁰⁾ ③'22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전액 감액한 뒤 ④'23년도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예산으로 13억 8,8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한 것이나, '23년에도 급식실 개선 예산 10억 7,600만원이 중복 편성된 것으로 확인됨
 - '23회계연도의 경우, 두 차례의 추경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복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 전 검토 절차를 소홀히 하여 사업 예산을 중복 편성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한정성을 외면하는 결과로서 「지방자치법」 제150조¹⁰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매봉초¹⁰²⁾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시설비**는 '23년 7월, 제2회 추경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의 95.4%, 4억 7,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실시설계시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위치인 정보관 필로티 내 구조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구조보강 공사비를 추가 확보하고,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발생하여 연도 내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기집행된 설계비를 제외한 4억 7,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99) 서울성북초등학교-3090('22. 4. 6), “급식시설개선공사 배치 변경 요청”

100)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1492('22. 4.26), “사업 추진 변경 검토 보고(성북초 급식시설 개선공사)”

101)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전문생략)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2) (남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1길 55

〈표 4-19〉 학교급식환경개선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서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발 생 사 유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성 북 초 본 관 급 식 실 개 선	1,076	1,067	99.2	급 식 실 및 학 생 식 당 증 축 예 산 중 복 편 성 으 로 불 용
남 부 교육지원청	매봉초 급식실 및 학생 식당 신증축 시설비	500	477	95.4	정보관 구조보강 공사 추가실시에 따라 연도내 공사추진 불가

※ 주1) 불용액 4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함

주2)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제외함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서 별도 검토

④ 교육사업비

○ 교육사업비¹⁰³⁾중 ①학교급식운영, ②누리과정지원, ③학교보건관리, ④학교정보화 여건개선, 4개 사업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액(1조 8,366억 9,600만원)의 5.7%, 1,044억 9,800만원이 불용된 바,

-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①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이 52.2%, 545억 2,300만원, ②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46.5%, 486억 3,900만원, ③지출잔액이 1.2%, 12억 2,800만원, ④낙찰차액이 0.1%, 1억 600만원으로 검토됨

〈표 4-20〉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교육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 업	예산현액	불 용 액	발 생 사 유					
			① 보 조 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② 예 산 절 감 액	③ 계획변경 등집행사 유미발생	④ 지 출 잔 액	⑤ 낙 찰 차 액	⑥ 찰 예비비 액 및기타
합 계	1,576,311	104,498 (100.0)	54,523 (52.2)	-	48,639 (46.5)	1,228 (1.2)	106 (0.1)	-
① 학교급식운영	956,263	54,990 (100.0)	54,523 (99.2)	-	24 (0.0)	420 (0.8)	22 (0.0)	-
② 누리과정지원	494,866	14,640 (100.0)	-	-	14,361 (98.1)	278 (1.9)	-	-
③ 학교보건관리	73,782	19,783 (100.0)	-	-	19,236 (97.2)	462 (2.3)	84 (0.4)	-
④ 학 교 정 보 화 여 건 개 선	51,398	15,084 (100.0)	-	-	15,017 (99.6)	67 (0.4)	-	-

※ 불용액 100억원 이상 세부사업으로 한정함

103) 교육사업비는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과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 평생교육사업 등으로 구성됨

○ **학교급식운영**은 예산현액(9,562억 6,300만원)의 5.8%, 549억 9,000만원이 불용된 바,

- 불용액중 99.2%, 545억 2,300만원은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무상급식**¹⁰⁴⁾에서 발생한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¹⁰⁵⁾으로, 소관부서에서는 ①‘급격한 학생수 감소 및 예산편성단가와 실제 지원단가(학생 수에 따른 구간별 차등지원)의 차이¹⁰⁶⁾’ 및 ②조리실무사 인력부족으로 인한 각종 수당 불용액 등이 발생한 것으로 불용사유를 제출하고 있으나,¹⁰⁷⁾
- 동 사업은 지난 ’21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제한, 원격수업에 따른 급식 축소 등’을 사유로 486억 7,300만원이 불용되고, ’22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단계적 등교 제한과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급식 축소 등’을 사유로 435억 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설명한 사례가 있음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18935('22.10.26) “2023년 학교급식비 예산 편성 계획 조정(안)”

- 재원 분담 :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2010, 행정협의회)

- 학교급식예산 총액 기준 실제 재원 분담 비율 : **교육청 61%, 서울시 23%, 자치구 16%**

☞ 협약 분담금과 실제 재원분담 비율 차이 발생사유 :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분담하고 있는 공립학교 조리(실무)사 인건비 일부를 2023년부터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

105)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p.26

※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 자체재원 대응투자가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재원에 대한 정산 잔액

106)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2096('23. 2. 9), 「2023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p.14

Ⅲ. 학교급식 예산 지원 단가 ※ **급식 인원수별 차등**

1.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 공립초 : 1식당 4,540원~3,732원 (1구간~5구간), 급식일수 192일

○ 국·사립초 : 1식당 6,228원~5,420원 (1구간~5구간), 급식일수 192일

2. 중학교 급식비 지원

○ 공립중·각종중 : 1식당 4,786원~4,072원 (1구간~5구간), 급식일수 180일

○ 국·사립중·각종중 : 1식당 6,833원~6,119원 (1구간~5구간), 급식일수 180일

3.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 공립고·각종고 : 1식당 5,053원~4,351원 (1구간~5구간), 급식일수 173일

○ 국·사립고·각종고 : 1식당 7,229원~6,527원 (1구간~5구간), 급식일수 173일

■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2097('23. 2. 9), 「2023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p.61

V. 친환경 유치원급식 추진, 2. 세부 내용

가. 식품비 지원 : 1식당 3,011원~3,367원 (1구간~3구간) ※ **급식 인원수별 차등**

나. 관리비 지원 : 1식당 162원

다. 인건비 지원 : 공립 679원(교특인건비 교육청 부담), 사립 3,023원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 매회계연도 결산 시 예산과 결산의 차이를 비교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원인을 진단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 동 사업의 경우, 납득할 수 없는 형식적인 불용사유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에는 실제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운용의 한정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동 사업은 매년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하는 예산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서도 재원분담 비율만큼 급식비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부정확한 추계는 결국 유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결과와 연동되는바, '23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 일반회계 결산에서도 '친환경 학교급식·유치원 급식지원' 세부사업에 160억 4,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되어¹⁰⁸⁾ 지방재정의 한정성을 잠식하는 원인일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4-21〉 학교급식운영 예산집행 현황(2023~20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금액 (C)	보조금반납 예정액 (D)	불용액 (E=A-B-C-D)	불용률 (E / A)
2023	956,263	901,271	-	2	54,990	5.8
2022	917,637	874,030	16	79	43,509	4.7
2021 ^{주1)}	715,042	666,368	-	-	48,673	6.8

※ 주1) 2021년은 '학기중급식비지원' 세부사업의 예산집행 현황임
'21년 학기중급식비지원 → '22년부터 학교급식운영(교육부 훈령 개정)

108)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제2장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p.447, 재구성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회계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일반회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03,371	190,669	12,702	6.2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23,823	20,476	3,346	14.0
	합계		227,194	211,146	16,048	7.1

〈표 4-22〉 학교급식운영 세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금액 (C)	보조금 반납예정액 (D)	불용액 (E=A-B-C-D)	불용률 (E / A)
합	계	956,263	901,271	-	2	54,990	5.8
	급식실작업 환경개선 등	455	71	-	-	383	84.2
	맞춤형영양식 생활교육(특교)	107	107	-	-	-	0.0
	무 상 급 식	954,343	899,818	-	2	54,523	5.7
	식생활교육	12	11	-	-	1	8.3
	영양교육 과정개발	15	14	-	-	1	10.1
	학교급식 기획운영	35	20	-	-	15	42.1
	학교급식 운영지원	1,272	1,210	-	-	62	4.9
	학교급식 위원회운영	20	16	-	-	4	19.3

○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지원**은 예산현액(4,948억 6,600만원) 대비 3.0%, 146억 4,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23년 7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 의결된 이후 '23년 8월, 교육부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예산을 당초 4,905억원에서 4,761억 3,800만원으로 △143억 6,100만원 감교부 통지한 바,¹⁰⁹⁾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 하지 못하여 감교부 액만큼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국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인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예산은 교육부에서 매 회계연도 하반기 시·도별 집행과정을 점검하여 시·도별 예산교부액을 조정하고 있는바, 사업부서에서는 교부되지 않는 국비를 감액조정 하더라도 해당 재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 감추경에 대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109)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001('23. 8.31), "2023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 조정 결과 알림"

- 기 편성된 국비가 회계연도중 교부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됨에도 예산액을 감액조정 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입결산에서는 미수납 처리되고, 세출결산에는 장부상 허수에 불과한 불용액을 발생시켜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원없는 불용'의 경우에는 회계연도중 적극적인 감추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3〉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예산 교부현황(2023~20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당초내시액 (A)	예산편성액 (B)	실제교부액 (C)	교 부 차 액 (C - B)	차 액 발 생 사 유
2 0 2 3	490,500	490,500	476,138	△14,361	교육부 교부액조정 (' 2 3 . 9 . 1)
2 0 2 2	556,340	556,340	545,400	△10,940	교육부 교부액 조정 (' 2 2 . 1 0 . 1 2)
2 0 2 1	575,077	575,077	564,077	△11,000	교육부교부액 조정 (' 2 1 . 9 . 3)

〈표 4-24〉 누리과정 세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B)	다 음 연 도 이 월 금 액 (C)	보 조 금 반납예정액 (D)	불 용 액 (E=A-B-C-D)	불 용 률 (E / A)
합	계	494,866	480,192	-	33	14,640	3.0
	외 국 국 적 유아학비지원	2,901	2,681	-	-	219	7.6
	유아보육료	271,431	257,069	-	-	14,361	5.3
	유 아 학 비	219,069	219,035	-	33	-	0.0
	유 아 학 비 부 대 경 비	246	241	-	-	5	1.9
	저소득층유아 학비추가지원	1,218	1,163	-	-	54	4.5

○ **학교보건관리**는 예산현액(737억 8,200만원)의 26.8%, 197억 8,3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불용액중 98.2%, 194억 1,800만원이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학교감염병관리** 불용액으로 제출됨

- **학교감염병관리**는 '23회계연도중 ①코로나19 확진자 감소 및 감염병 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방역활동(인건비, 물품비, 소독비) 수요 감소, ②감염병 대응훈련 비대면 진행 등의 사유로 방역활동지원비 190억 9,300만원을 불용하고,¹¹⁰⁾ '23년 9월, ②교육부 주관 학생·교직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기편성한 시·도분담금 3억 2,500만원을 불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¹¹¹⁾
- **방역활동지원비**의 경우, '23회계연도중 감염병 단계 전환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수요 감소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소요예산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23회계연도중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23회계연도 결산에 이르러서야 수요 감소를 사유로 대규모 불용액을 발생시킨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은 물론 교육재정의 한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11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나이스시스템부-861('23. 9.21)

〈표 4-25〉 학교보건관리 세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B)	다 음 연 도 이 월 금 액 (C)	보 조 금 반납예정액 (D)	불 용 액 (E=A-B-C-D)	불 용 률 (E / A)
학 교 보 건 관 리		73,782	53,928	-	71	19,783	26.8
	교 육 연 수 연 구 운 영	108	105	-	-	3	2.5
	당 뇨 학 생 건강관리지원	501	500	-	-	1	0.0
	보건교육·연수 연구활동지원	203	173	-	-	30	14.9
	보건실현대화	1,820	1,820	-	-	-	0.0
	성교육및성폭력 예 방 교 육	429	367	-	-	62	14.4
	학 교 감 염 병 관 리	59,132	39,714	-	-	19,418	32.8
	학 교 보 건 사 업 지 원	1,468	1,380	-	-	88	6.0
	학교보건운영 보건지원강사	3,820	3,753	-	-	67	1.8
	학교흡연예방교육 (국고보조금)	3,108	3,037	-	71	-	0.0
	학생건강검진	1,541	1,539	-	-	2	0.2
	학생건강관리 내실화(특교)	915	887	-	-	28	3.1
	학 생 마 음 건 강 지 원	733	649	-	-	84	11.4

○ **학교정보화 여건개선**은 예산현액(513억 9,800만원)의 29.3%, 150억 8,400만원이 불용된 바,

- 불용액중 99.6%, 150억 1,700만원이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소관 **인프라구축확충지원**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으로 교육부 주관 '**K-에듀통합플랫폼구축**'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2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 시·도분담금 150억 1,7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비는 '22년도에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교육부가 사업 착수 일정을 변경하여,¹¹²⁾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하고,¹¹³⁾ '23년도 본예산으로 재편성하였으나
- '23년 6월,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수학습플랫폼 구축 계획'을 'AI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변경하고¹¹⁴⁾ 동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액 불용된 것으로, 정부 주도 사업이라 할지라도 편성·감액·편성을 반복하는 사업은 회계연도중 상시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경정하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¹¹⁵⁾

112) 교육부, 미래교육추진담당관-737('22. 2.25)

가.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일정 변경(안)

구축일정	당초	변경
1단계 개발/ 개통	'22.12.~'24.2./ '24.3.	'23.3.~'24.8./ '24.8.
2단계 개발/ 전면개통	'24.3.~'25.2./ '25.3.	'24.9.~'25.8./ '25.9.

나. 구축일정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확보) 관련 협조 요청사항

- 2022년 확보된 인프라 구축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추경(안) 등 조치 후 2023년 본예산에 구축예산이 재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11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회계연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439

114)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1726('23. 6.13), "AI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 플랫폼 등 관련 안내"

- 기존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계획"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등에 따른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민간 주도·민관 협업 방식의 디지털 전환 방향 등을 고려하여 "AI 디지털교과서와 연계한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으로 변경·추진할 예정임

※ 각 시도교육청에서 편성한 예산은 교육청 자율적으로 활용

115) '24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664

165. 인프라구축확충지원, 1. 사업별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도 본예산	2023년도		전년대비 증감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K에듀통합플랫폼구축	-	15,017	좌동	△15,017	좌동	교육부 사업 미추진

〈표 4-26〉 학교정보화 여건개선 세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금액 (C)	보조금 반납예정액 (D)	불용액 (E=A-B-C-D)	불용률 (E / A)
합	계	51,398	36,314	-	-	15,084	29.3
	인공지능기반 융합교육여건개선	5,491	5,476	-	-	15	0.3
	인프라구축 확충지원	16,939	1,922	-	-	15,017	88.6
	정품 S W 라이선스임대	11,702	11,690	-	-	12	0.1
	학교무선 환경구축	10,184	10,183	-	-	0.4	0.0
	학교정보화기기 보급및관리	7,081	7,041	-	-	40	0.6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급여지원**은 예산현액(308억 6,900만원)의 5.9%, 18억 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불용액중 50.5%, 9억 1,300만원은 ‘지출잔액’, 49.5%, 8억 9,600만원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¹¹⁶⁾으로 제출함

- 교육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¹¹⁷⁾ 서울시교육청과 국가,

116)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p.26

※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 자체재원 대응투자가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재원에 대한 정산 잔액

11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교육급여)

①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학교의 종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급여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부담한다. 1. ~ 3. (생략)

■ 교육부,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기준		입학금·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부담주체	부담비율	부담주체	부담비율
중위소득 40%이상~50%이하		교육청	62%	국가	60%
중위소득 40%미만	부양의무자 있음	국가	23%	시	28%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시	11%	구	12%
		구	4%		

서울시, 자치구가 차등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사업으로, 국가, 서울시, 자치구 분담금 집행잔액의 경우 '23회계연도 결산시 '보조금 반납예정액'¹¹⁸⁾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계좌이체(현금)에서 바우처 형태로 개편하면서 사업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바,¹¹⁹⁾ '23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정산이 '25년 초에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23회계연도 결산시에는 보조금 반납예정액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7〉 교육급여지원 보조금 반납예정액 및 불용액 현황(2023~202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보조금 반납 예정액	불용액	발생 사유					
				보조금 대응투자 장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집행사 유발생	낙차	차액	지출 잔액
2023	30,869	-	1,809 (100.0)	896 (49.5)	-	-	-	913 (50.5)	-
2022	31,626	1,339	1,610 (100.0)	682 (42.4)	-	-	-	927 (57.6)	-
2021	25,061	665	1,231 (100.0)	786 (63.9)	-	-	-	444 (36.1)	-

118)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p.26

※ 보조금 반납예정액 :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기타지원금(기타지원금, 유특)을 대상으로 2023년도 교부된 보조금 중 반환(예정)할 금액으로, 다음연도 세입 보조금사용잔액(항)으로 반영됨

119)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3288('22. 8.19), “교육급여 지급방식 개편(안) 기본계획 알림”

- (교육급여 바우처 도입·운영) 교육활동지원비가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
- (지급수단) 수급권자가 보유한 일반 신용·체크카드 내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23. 3.29~'24. 6.28 / 교육청 지급의뢰 익월부터 신청
- (사용기간) 바우처 배정일(신청 이후 2~10일 이내) ~ '24. 8.31
- (정산·반납)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및 사용을 위한 충분한 기회 제공을 위해 총 24개월 단위 사업관리를 통해 정산관리

* 학년도별 교육급여 사업 잔액은 최종 정산(~차년도 12월) 시 반납

○ **ICT활용교육지원**은 예산현액(1,310억 8,800만원)의 2.6%, 34억 2,500 만원을 불용한 바, 불용액중 83.5%, 28억 6,100만원이 디지털·혁신미래 교육과 소관 **원격교육지원**에서 발생한 것임¹²⁰⁾

- **원격교육지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원·학생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 하기 위해 실시한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Digital+ 벗)**」 사업으로, '연차별 디벗 보급 계획에 따라 '23학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421교, 70,530대의 스마트기기 디벗을 보급한 바,¹²¹⁾
- 원격교육지원은 '23회계연도중 제1회 추경예산(292억 9,200만원), 제2회 추경예산(274억 3,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349억 4,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확인됨¹²²⁾
- 더욱이 동 사업은 지난 '22회계연도에도 추경예산으로 증액한 353억 8,200만원 전액을 이월하여 다음회계연도에 집행하고, '23회계연도에도 추경예산으로 증액한 예산 567억 2,700만원의 61.6%, 349억 4,500 만원을 다음회계연도로 이월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회계연도중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며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결산시에는 절차이행 등이 예정보다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재정 운용결과를 제출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20) ①불용액중 53.6%, 18억 3,600만원은 '23학년도 스마트 기기 '디벗' 구매 **낙찰차액**이고,
②불용액중 26.9%, 9억 2,000만원은 스마트기기 '디벗' 보급 변경계획에 따른 MDM 라이선스 구매 축소로 인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
③불용액중 17.5%, 6억원은 스마트기기 '디벗' 기기 및 충전함 구매 관련 조달수수료 등 **지출잔액**
④불용액중 2.0%, 6,800만원은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운영의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으로 확인됨

121)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4628('23. 9.14), "2023학년도 중학교 디벗 학교별 보급 안내"
※ 중학교 387교, 69,273대 / 특수학교(중) 28교, 374대 / 각종학교(중) 6교, 883대

122) 명사이월액 : 325억 7,700만원, 사고이월액 : 23억 6,700만원

〈표 4-28〉 원격교육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2023~2021)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본 예산	추경예산	전 년 도 이월금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금액	불용액
2023	-	57,005	35,382	92,388	54,581	34,945	2,861
2022 ^{주1)}	54,970	△15,009	-	39,961	2,265	35,382	2,312
2021 ^{주2)}	547	62,249	-	62,796	62,775	- ^{주3)}	21

※ 주1) 증액 353억 8,200만원(임차방식 : 운영비 → 구매방식 : 유형자산)

감액 △503억 9,100만원(구매방식 : 학교회계전출금 → 임차방식 : 운영비)

주2) '21년 스마트교육지원(세부사업) → '22년 ICT활용교육지원(교육부 훈령 개정)

주3) '21년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집행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이월 미발생

〈표 4-29〉 연차별 「디벗」 보급 계획(2027~2022)

구분	초				중			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2022년					보급	-	-	-	-	-
2023년					보급	활용				
2024년	디지털 선도학교(53교, 특수1 별도)				디지털 선도학교(34교)			디지털 선도학교(31교)		
					보급	활용	활용	보급		
2025년	보급	보급			활용	활용	활용	보급	활용	
2026년	활용	활용	보급	보급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2027년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활용

※ 학교급 확대 : '22년 중1 → '23년 중1 → '24년 중1, 고1·2, 초3~6(디지털 선도학교) →

'25년 초3·4, 고1 → '26년 초5·6 순으로 신규 보급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20739('23. 5.27), '24년 본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재구성

〈표 4-30〉 ICT활용교육지원 발생사유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불용액	발생사유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집행사 유미발생	낙차	차액	지출 잔액
합	계	131,099	3,425 (100.0)	69 (2.0)	-	920 (26.9)	1,836 (53.6)	600 (17.5)	-
	원격교육지원	92,448	2,861	-	-	920	1,836	105	-
	원격수업지원 플랫폼구축	12,820	74	-	-	-	-	74	-
	SW교육현장안착 및활성화(특교)	7,795	-	-	-	-	-	-	-
	디지털교과서개발 및활용활성화	5,771	-	-	-	-	-	-	-
	인공지능 교육기반관련	4,856	321	69	-	-	-	252	-
	디지털기반교육 혁신지원(특교)	4,381	10	-	-	-	-	-	-
	S W 교육지원	1,575	133	-	-	-	-	-	-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지원(특교)	450	-	-	-	-	-	-	-
	서울미래 학교운영	350	-	-	-	-	-	-	-
	서울스마트교육 체험관운영	203	-	-	-	-	-	-	-
	수업지원목적 저작물이용보상금	203	-	-	-	-	-	-	-
	서울교육포털 시스템운영	177	13	-	-	-	-	13	-
	꿀박사운영	31	11	-	-	-	-	11	-
	사이버가정 학습운영	25	1	-	-	-	-	1	-

○ **지방공무원연수운영**(충무과), **행정개선활동지원**(정책기획관, 구로도서관, 동작도서관), **시설사업운영**(학교지원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북부교육지원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관리**(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계속 7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¹²³⁾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취소 또는 축소를 주요 사업집행 부진 사유로 기재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어온 점을 고려하면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등 추진방식을 개선하거나 집행상황을 감안하여 추진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액 경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더욱이 '23회계연도의 경우, '23년 상반기중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교육부에서도 학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추진하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한 바,¹²⁴⁾ 회계연도 중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으로 판단됨

12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12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23. 5.30)
■ 교육부,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23. 6. 1)

〈표 4-31〉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계속 70% 이하인 사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연 도	예 산 액	집 행		불 용		불 용 사 유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지 방 공 무 원 연 수 운 영 (총 무 과)	2 0 2 3	1,479	914	61.8	565	38.2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대면연수 감소 등
	2 0 2 2	983	601	64.1	337	35.9	
	2021 ^{주1)}	783	510	65.1	273	34.9	
행 정 개 선 활 동 지 원 (정책기획관)	2 0 2 3	10	2	24.2	8	75.8	갈등관리 민간자문 및 조정 신청이 없어 관련 예산 불용
	2 0 2 2	10	0.2	2.3	10	97.7	
	2 0 2 1	10	2	24.4	8	75.6	
시 설 사 업 운 영 (학교지원과)	2 0 2 3	1,052	301	28.6	91	8.7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 (학교용지), 공동투자삼사(에코스쿨) 등 행정절차 지연
	2 0 2 2	1,079	34	3.2	671	62.2	
	2021 ^{주2)}	1,361	278	29.5	419	30.8	
행 정 개 선 활 동 지 원 (구로도서관)	2 0 2 3	24	10	45.6	13	54.4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강좌 예산 집행 저조
	2 0 2 2	21	9	43.9	12	56.1	
	2 0 2 1	12	8	65.2	4	34.8	
행 정 개 선 활 동 지 원 (동작도서관)	2 0 2 3	13	7	52.5	6	47.5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강좌 예산 집행 저조
	2 0 2 2	13	8	60.9	5	39.1	
	2 0 2 1	9	5	60.6	4	39.4	
교육행정정보 시 스템 운 영 (북부교육지원청)	2 0 2 3	2	1	61.4	0.6	38.6	코로나19로 인한 정보화연수 미실시
	2 0 2 2	2	1	63.6	0.6	36.4	
	2 0 2 1	2	0.6	35.1	1	64.9	
교육행정정보 시 스템 운 영 (강 서 양 천 교육지원청)	2 0 2 3	2	1	60.0	0.7	40.0	코로나19로 인한 정보화연수 미실시
	2 0 2 2	2	1	69.3	0.5	30.7	
	2 0 2 1	2	1	59.1	0.7	40.9	
학 교 환 경 위 생 관 리 (동 작 관 악 교육지원청)	2 0 2 3	15	5	32.7	10	67.3	코로나19로 인한 합동단속 참여인원 감소
	2 0 2 2	10	5	52.3	5	47.7	
	2 0 2 1	13	7	51.4	6	48.6	

※ 주1) '21년 지방공무원연수지원 → '22년부터 지방공무원연수운영(교육부 훈령 개정)

주2) '21년 시설사업관리 → '22년부터 시설사업운영(교육부 훈령 개정)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총 682건, 4,834억 2,4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바,¹²⁵⁾
 - 8억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총 53건, 3,178억 8,500만원으로 ①**기금전출금**(미래학교추진단), ②**학교시설환경개선**, ③**기관시설유지관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기금전출금**(미래학교추진단)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학교단위공간혁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기금 전출금으로 '23년 본예산에 2,3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¹²⁶⁾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①**정의여고**¹²⁷⁾ 외 7교¹²⁸⁾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국고보조금)는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2년 10월, 제2회 추경예산으로 33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추진기간 부족을 사유로 '23회계연도로 전액 명시이월 되었음에도 '23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전액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공사로 사업 2~3년차까지는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나, 국고보조금은 총사업예산이 사업 1년차부터 연부율에 따라 매년 분할 교부되어¹²⁹⁾ 사업 초기에 교부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으나,

12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126)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8604('23. 9.2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안)”

127)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9길 69

128) 영파여중, 대광중, 강서고, 고대부중, 동성고, 동성중, 광운중

129) 서울특별시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3298('23. 6.26), “2023년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 변경안”

■ 2023년 연차별 국고 연부율(4년 분할 교부)

: 2023년 1년차 신규사업 10:10:50:30, 2022년 2년차 계속사업 10:20:40:30, 2021년 3년차 계속사업 10:30:20:40

- 동 불용사례의 경우, 사업 초기 사전절차 등에 따른 집행 부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학교별 사업추진 현황과 향후 집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이월예산을 적극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예산 현액 전액을 '23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재차 불용처리한 것인 바,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장기공사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이월,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추진상황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수준의 사업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연부율 조정을 건의하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 ②예일여고¹³⁰⁾ **본관외벽개선**(예산현액 20억 7,500만원), ③혜원여고¹³¹⁾ **본관외벽개선**(예산현액 19억 7,900만원), ④영락고¹³²⁾ **본관외벽개선**(예산현액 17억 6,800만원), ⑤송곡여고¹³³⁾ **본관가동외벽개선**(예산현액 15억 9,500만원), ⑥논현초¹³⁴⁾ **본관및별관외벽개선**(예산현액 15억 3,700만원), ⑦신반포중¹³⁵⁾ **교사동외벽개선**(예산현액 15억 3,700만원) 등은 내진보강 간섭으로 인해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제출된 바,
- 이미 동 사업들의 예산이 편성된 이후 내진보강 연계 여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내진보강 추진 이후 또는 병행 추진하기 위해 사업이 연기되거나 학교가 내진보강을 희망하지 않아 사업이 취소되어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교육부에서는 '29년까지 모든 학교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¹³⁶⁾, 내진보강 대상건물¹³⁷⁾들의 내진공사를 적기에

130)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17

131)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58길 39

132)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6길 25

133) (교육시설관리본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67

134)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33

135)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26

136) 교육부 보도자료('23.12.11),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본격 추진」

실시하고, 내진보강이 간섭되는 공사 예산이 다시 불용되지 않도록 내진 공사 연계 추진에 대한 학교의견 사전수렴 등 공사 기간을 조율하여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⑧ **봉은중¹³⁸⁾ 교육연구시설 내진보강사업**은 '22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예산 9억 5,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학교 요청에 따라¹³⁹⁾ '23년도 겨울방학에 공사 추진 예정이었으나, '23년 11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컨설팅 의뢰 결과 일반공법으로 설계된 기존 내진보강설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사업을 연기하고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임
- ⑨ **남산도서관¹⁴⁰⁾ 냉난방개선**은 '23년도 본예산으로 15억 7,1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기관 요청에 따라¹⁴¹⁾ 기 추진중인 공간 재구조화(리모델링) 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23년 7월, 자체 재정투자심사에서 반려됨에 따라 냉난방개선도 잠정 보류되어 예산 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임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요인에 의해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가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시 사전 검토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에 발생될 개연성이 있어 향후 사업의 집행가능 여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하고, 회계연도중 불용예상액을 적극적으로 감액조정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3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4498('24. 4.17), “2024년 내진보강사업 추진계획(안)”

■ 연차별 계획

내진보강 미확보건물	내진보강 대상건물	총소요액	해소 소요기간	연간투자계획	
				건물동수	예정액
1,678동	1,520동*	4,873억	6년	256동	812억

* 내진미확보건물(1,678동) -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158동) = 1,520동

138) (강남서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128길 59

139) 봉은중학교-1576('22. 2.23), “2022 본예산 및 내진공사 추진희망시기 학교의견 제출”

1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월로 109

141) 서울특별시교육청남산도서관, 행정자료과-175('23. 1.11), “2023년 본예산 직속기관 시설사업 집행관련 의견 제출”

〈표 4-32A〉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사 업 부 서	사 업 내 역	예 산 현 액	불 용 액
1	기 금 전 출 금	미 래 학 교 추 진 단	교 육 시 설 환 경 개 선 기 금 전 출 금	231,500	231,500
2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① 정 의 여 고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10,329	10,329
3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① 영 파 여 중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6,495	6,495
4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① 대 광 중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4,684	4,684
5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① 강 서 고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3,311	3,311
6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① 고 대 부 중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2,608	2,608
7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① 동 성 고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2,286	2,286
8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②예일여고 본관외벽개선	2,075	2,075
9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① 동 성 중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2,044	2,044
10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③혜원여고 본관외벽개선	1,979	1,979
11	학교시설환경개선	미 래 학 교 추 진 단	① 광 운 중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1,905	1,905
12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④영락고 본관외벽개선	1,768	1,768
13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⑤송곡여고 본관가동외벽개선	1,595	1,595
14	기관시설유지관리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⑨남산도서관 냉난방개선	1,571	1,571
15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⑥논현초 본관및별관외벽개선	1,537	1,537

〈표 4-32B〉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사 업 부 서	사 업 내 역	예 산 현 액	불 용 액
16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⑦신반포중 교사동외벽개선	1,537	1,537
17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서울여상고 체육관전면보수	1,494	1,494
18	학교시설환경개선	북 교 육 지 원 청	창일중 교사동외부창호개선	1,476	1,476
19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강동초 동관및 본관 외부창호개선	1,458	1,458
20	학교시설환경개선	북 교 육 지 원 청	자운초 교사동외부창호개선	1,350	1,350
21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서 양 천 교 육 지 원 청	경서중 교사동외부창호개선	1,345	1,345
22	학교시설환경개선	북 교 육 지 원 청	녹천중 교사동외부창호개선	1,287	1,287
23	학교시설환경개선	북 교 육 지 원 청	신방학중 본관외부창호개선	1,260	1,260
24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정의여고 강당 내진보강공사	1,242	1,242
25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서원초 교사1 외벽개선	1,230	1,230
26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천동초 교사동 외부창호개선	1,224	1,224
27	학교시설환경개선	북 교 육 지 원 청	불암중 교사동외부창호개선	1,224	1,224
28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강동초 본관 드라이비트해소	1,220	1,220
29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잠신중 교사동 외벽개선	1,191	1,191
30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남강고 후관 외벽개선	1,172	1,172

〈표 4-32C〉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사 업 부 서	사 업 내 역	예 산 현 액	불 용 액
31	학교시설환경개선	중 교 육 지 원 청	한남초 본관외부창호개선	1,170	1,170
32	학교시설환경개선	동 작 관 악 교 육 지 원 청	남사초 본관외벽개선	1,114	1,114
33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선사고 교사동 바닥개선	1,061	1,061
34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세륜초 교사동 외벽개선	1,051	1,051
35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영파여고 동암관드라이비트해소	1,045	1,045
36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풍납중 본관 화장실개선	1,033	1,033
37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교육시설관리본부 통합형 학교단위시설개선 감리비	1,000	1,000
38	학교시설환경개선	동 작 관 악 교 육 지 원 청	대림초 그린스마트스쿨 설계비	1,000	1,000
39	학교시설환경개선	북 교 육 지 원 청	청계초 본관외부창호개선	972	972
40	학교시설환경개선	서 교 육 지 원 청	진관초 본관외벽개선	961	961
41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남강고 후관드라이비트해소	960	960
42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⑧봉은중 교육연구시설 내 진 보 강 사 업	950	950
43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영산여고 본관드라이비트해소	907	907
44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창문여중 진수당 내진보강사업	880	880
45	학교시설환경개선	서 교 육 지 원 청	응암초 본관외벽개선	864	864

〈표 4-32D〉 예산현액 전액불용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사 업 부 서	사 업 내 역	예 산 현 액	불 용 액
46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신천초 별관동 드라이브트해소	863	863
47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신천초 별관 외벽개선	826	826
48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신천초 본관동 드라이브트해소	825	825
49	학교시설환경개선	중 부 교 육 지 원 청	종로산업정보학교 창의동 외 부 창 호 개 선	819	819
50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서초중 교사(본관) 외벽개선	807	807
51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서초중 교사(신관) 외벽개선	807	807
52	학교시설환경개선	강 동 송 파 교 육 지 원 청	신천초 본관 외벽개선	807	807
53	학교시설환경개선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서일문화예술고 본관A동 드 라 이 비 트 해 소	800	800

※ 예산현액 8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내부유보금 불용액(614억 5,100만원)은 제외함

3.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¹⁴²⁾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예산의 운용부서를 이관하는 것임
- '23회계연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생한 예산의 이체는 총 1건, 1,662억 1,100만원으로 제출된 바, 전년 대비(785억 6,900만원) 건수는 △2건 감소하였으나 이체규모는 876억 4,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3〉 최근 3년간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 계 연 도	2023	2022	2021
건 수	1	3	2
금 액	166,211	78,569	776
증 감 액	87,641	77,792	△11,764

- 지난 '23년 6월 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23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안전총괄담당관,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청사이전추진단을 신설하고, 담당·소관업무를 이관하고자 예산을 이체¹⁴³⁾한 것으로 확인됨

- **안전총괄담당관**은 개별 부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 이관하여, 정책기획관(6억 6,100만원), 유아교육과(7,700만원), 민주시민생활교육과(700만원), 교육재정과(1억 6,800만원)로부터 9억 1,500만원이 이체되었고,

142)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3)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5171('23. 6. 8), “2023. 7.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계획(안)”

-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는 기초학력 관련 업무통합 등을 하고자 부서를 신설하여, 정책기획관(700만원), 초등교육과(51억 600만원), 중등교육과(263억 2,800만원)에서 314억 4,2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 **청사이전추진단**을 신설하여 교육시설안전과로부터 청사이전 업무를 분리함에 따라 교육시설안전과에서 3,8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부서 재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이체가 발생한 내역을 검토하면,

-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는 부서 재편으로, 중등교육과(1,131억 5,600만원)의 ‘원격교육’, 행정관리담당관(34억 9,500만원)과 교육연구정보원(15억 8,400만원)의 ‘교육·행정정보 일원화 및 정보화 기능’을 통합 이관하여, 3개 부서로부터 1,182억 3,500만원이 이체되었고,
-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전 교육혁신과)는 **예산담당관**(1,600만원)으로 학교 자율운영체제지원 업무를 이관하고, **초등교육과**(9억 1,500만원)로 생태 전환교육내실화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중등교육과**로 ①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지원 업무(114억 3,700만원), ②고입선발 업무(3억 4,000만원) ③자사고 일반고 전환지원 업무(1억 6,600만원), ④자율학교 등 지정·운영·평가 업무(800만원)를 이관하여 128억 8,400만원을 3개 부서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됨
- 체육건강예술교육과는 **참여협력담당관**(800만원)으로 교육기부 업무를 이관하였고, **보건안전진흥원**(20억 6,600만원)으로 학교보건 및 급식기획 업무를 이관하여 20억 7,400만원을 이체하였음
- 정책기획관은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집행사무를 이관하여 4억 600만원을 이체하였고,
- 유아교육과는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지능형나이스유치원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이관하여 2억 1,200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4〉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이 체 부 서		이 체 액	이 체 사 유
	준 부 서	받 은 부 서		
합 계			166,211	‘23. 7.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신 설	정 책 기 획 관	안 전 총 괄 담 당 관	661	- 안전총괄담당관 신설 : 정책·안전기획과 업무를 정책기획과 안전관리로 구분하여 안전담당부서 신설하여 업무 이관
	유 아 교 육 과		77	
	민주시민생활교육과		7	
	교 육 재 정 과		168	
	정 책 기 획 관	교 수 학 습 · 기 초 학 력 지 원 과	7	-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 신설 : 기초학력 관련 업무 통합 등 기능 중심 개편
	초 등 교 육 과		5,106	
	중 등 교 육 과		26,328	
	교 육 시 설 안 전 과	청 사 이 전 추 진 단	38	- 청사이전추진단 신설
재 편	중 등 교 육 과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113,156	- ‘원격교육’ 업무 이관
	행 정 관 리 담 당 관		3,495	- 교육·행정정보 일원화 및 정보화 기능을 디지털·혁신 미 래 교 육 과 ’로 통 합
	교 육 연 구 정 보 원		1,584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예 산 담 당 관	16	- 학 교 자 율 운 영 체 제 지 원 업 무 이 관
		초 등 교 육 과	915	- 생태전환교육내실화 관련 업 무 이 관
		중 등 교 육 과	11,952	-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 손지원 등 업무 이관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참 여 협 력 담 당 관	8	- 교 육 기 부 업 무 이 관
		보 건 안 전 진 흥 원	2,066	- ‘학교보건’ 및 ‘급식기획’ 집 행 사 무 이 관
	정 책 기 획 관	보 건 안 전 진 흥 원	406	-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 안전보건 집행사무 부여
	유 아 교 육 과	교 육 연 구 정 보 원	212	- 지능형나이스유치원구축·운영 및 사립유치원 네트워크 환 경 개 선 업 무 이 관

4.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¹⁴⁴⁾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으로서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23년도 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8조를 통해 ①공무원의 보수, ②기간제근로자, 교육공무직 및 계약직교원 보수, ③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④재해대책비, ⑤반환금, ⑥학교신설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23회계연도의 경우, 총 2건, 72억 4,600만원을 이용 처리한 바, 전년 대비(26억원) 1건, 46억 4,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5〉 최근 3년간 이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 계 연 도	2023	2022	2021
건 수	2	1	0
금 액	7,246	2,600	0
증 감 액	4,646	2,600	0

144)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건의 이용 사례는 모두 인건비 관련 사업으로 총무과 **계약제교원인건비**는 퇴직금 부족분 27억원을 확보하고자 이용하였고, 초등교육과 **교원인건비**는 명예퇴직수당 45억 4,600만원을 확보하고자 이용한 것으로 제출됨

〈표 4-36〉 이용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세 부 사 업	예 산 액	이 용 액		이 용 사 유	이용일자
			감	증		
총 무 과	계약제교원 인 건 비	16,500		2,700	계약제교원 초과에 따른 퇴직금 부족액 발생	'23. 2.24
예산담당관	계약제교원 인 건 비	46,721	△2,700			
초등교육과	교원인건비	53,800		4,546	유아·초등교원 명예퇴직 교원 초과로 인한 부족액 발생	'23. 8.22
중등교육과	교원인건비	53,800	△4,546			

- 동 사업들은 모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예산총칙¹⁴⁵⁾에 따라 인건비 일부를 이용한 것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동일한 편성목에서 변경하는 것이기에 예산의 변경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¹⁴⁶⁾에서 동일 세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이용 절차를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의 이용을 통해 처리한 것으로 사료됨

14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p.3

예산총칙 제8조 다음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책사업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2~6. (생략)

146) 「지방재정제도 해설사례집」 행정자치부('15.12.) p.280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과)에서만 운영함이 원칙임. 다른 부서의 예산을 사용하려는 것은 정책사업간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용 절차(의회 승인)를 통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함

○ 총무과 소관 **계약제교원인건비**는 계약제교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23회계연도 상반기 퇴직금 부족분 27억원¹⁴⁷⁾을 예산담당관 **계약제교원인건비**에서 이용¹⁴⁸⁾한 바,

- '23회계연도 1~2월 수요조사 결과, 계약제교원 퇴직자가 과다 발생하여 본예산 편성액 대비 퇴직금 16억원이 부족하였고, 3~6월 퇴직금 예산액도 11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무경비인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부족분 27억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동 이용 사례가 필수경비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대안이라 할 지라도 이용 승인일이 2023년 2월 24일이라는 점에서 본예산이 확정¹⁴⁹⁾된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예산을 이용한 사례로, 당초 편성한 예산을 초과하는 재정수요가 수개월 뒤 발생하였다는 것은 계약제교원 퇴직수요를 부정확하게 예측한 결과로 향후 적정수요가 예측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4-37〉 계약제교원인건비(퇴직금)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급여종류	예 산 현 액					집 행 액	집 행 액
		본 예 산	추경1회	추경2회	변 경 (이 용)	계		
계 약 제 교 원인건비	퇴 직 금 리 관	15,610	-	1,050	2,700	19,360	18,640	719

147) 계약제교원 퇴직급여 부족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A)	소요액(B)			부족액(B_A)
		1~2월(신청액)	3~6월(추계치)	소계	
계약제교원 퇴직급여	15,500	17,049	1,139	18,189	2,689

148)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580('23. 2.23),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계약제교원 퇴직급여)”

149)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1469)

제출일 : '23.11. 1, 회부일 : '23.11. 3, 예결위의결 : '23.12.14, 본회의의결 : '23.12.15

- 초등교육과 소관 **교원인건비**는 유아·초등교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45억 4,600만원을 중등교육과 소관 **교원인건비**에서 이용¹⁵⁰⁾한 바, 본예산 편성시 연간 명예퇴직 인원을 538명으로 예상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명예퇴직 신청 접수 결과, 604명이 신청하여 실제 편성인원 수 보다 66명이 초과된 바,
 - 예산은 해당 사업의 편성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명예퇴직 인원 수를 예산의 범위 내로 확정함에도
 - 명예퇴직 인원 수가 당초 예상 인원(538명) 보다 66명이 초과된 것은 결국 명예퇴직 수요예측을 잘못된 결과일 수밖에 없음
- 다만, 인건비의 경우, 예산편성 시점과 집행시점에 대상인원 및 보수액의 차이가 있어 소요예산 산출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퇴직급여는 의무경비로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이기에 향후 소요예산 산출 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소요예산이 확보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0)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7338('23. 8.17), “2023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초등교원 명예퇴직수당)”

5.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151)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152) 및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153)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3회계연도의 경우, 총 53건, 308억 3,300만원이 전용된 것으로 '23회계연도 예산현액(14조 3,880억 600만원)의 0.2% 규모에 해당하고,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건수는 2건 증가하였고, 규모는 △237억 2,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8〉 최근 3년간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 계 연 도	2023	2022	2021
건 수	53	51	47
금 액	30,833	54,561	13,377
증 감 액	△23,728	41,184	△49,160

151)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152)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153)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p.156

○ **조직별** 전용현황을 검토하면 19개 담당관·과·직속기관에서 53건에 대해서 전용 한 바,

-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는 11건(21억 3,300만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는 9건(1억 4,900만원), 특수교육과는 5건(1억 1,9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9〉 부서별 전용 내역(3건 이상)

(단위 : 건, 백만원)

부 서 명	건 수	금 액
디 지 털 · 혁 신 미 래 교 육 과	11	2,133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9	149
특 수 교 육 과	5	119
예 산 담 당 관	4	237
노 사 협 력 담 당 관	3	5,084
유 아 교 육 과	3	9,219
중 등 교 육 과	3	137

-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는 '23회계연도에 11건, 21억 3,300만원을 전용한 바, **특색교육과정운영중** ①인정도서 개발과 관련하여 연수과정 및 도서 개발에 대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전용이 발생하였고,
-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중** ⑤**창의융합 과학실험실 환경구축**을 포함한 7개 사업내용(⑤~⑪)은 공모결과 국립학교 선정 여부에 따라 동일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전용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중 ⑤창의융합 과학실험실 환경구축과 ⑥미래융합형 수학교실구축**은 국립학교로 진출할 수 있는 예산과목¹⁵⁴⁾을 포함하는 세목인 “전출금 등(610)”을 당초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전용을 통해 “전출금 등(610)”을 신설하여 국립학교 지원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계획 및 여건 등의 변동에 재원을 신축적으로 융통하도록 한 장치임은 분명하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 대해 전용을 제한하고 있어¹⁵⁵⁾ 전용 제한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여도 예산과목을 신설하는 전용은 의회의 의결취지와 다를 수 있어 향후 유사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일한 맥락에서 **학교정보화 여건개선중 ③센클라우드 보안강화를 위한 시스템 S/W 구매**의 경우에도 당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지 않았으나¹⁵⁶⁾, 운영비중 2억 6,000만원을 자산취득비(무형자산)로 전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한 바,
- '23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로 이체(2억 9,300만원)되어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편성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나, 운영비를 자산취득비(무형자산)로 전용한 것은 의회의 의결취지와 무관한 결과일 수밖에 없어 유사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54) 국립학교학생지원경비(610-03)

155)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56

15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2303

〈표 4-40〉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번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 용 사 유	전용 일자
				감	증		
1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운 영 비	2,366	-	1,588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시도별 인정도서 개발 관련 위탁 기관과 개발계약 체결 목적	7. 26
		자치단체 등 이 전	1,800	1,588	-		
2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자치단체 등 이 전	1,800	-	10	교육청 개발 인정도서의 연수 기관으로 선정된 충남대 산학 협력단에 자금을 이전하기 위함	4. 24
		운 영 비	2,366	10	-		
3	학교정보화 여 건 개 선	무형자산	-	-	260	센클라우드(협업플랫폼)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 S/W 추가 구입을 위함	12. 1
		운 영 비	77*	260	-		
4	교 과 서 지 원	민간이전	246	-	8	초·중과정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소속 재학생에게 무상지원하는 교과용도서 추가 지원	10.16
		학교회계 전 출 금	233	8	-		
5	교 육 과 정 운 영 여 건 개 선	전출금등	-	-	100	‘창의융합 과학실험실 환경구축 사업’ 공모결과 국립 2교 선정	3. 2
		학교회계 전 출 금	8,420	100	-		
6	교 육 과 정 운 영 여 건 개 선	전출금등	-	-	50	‘미래융합형수학교실구축사업’ 공모결과 국립 1교 선정	2.21
		학교회계 전 출 금	8,420	50	-		
7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전출금등	10	-	10	‘메이커스페이스 환경개선 지원’ 공모결과 국립 1교 선정	3. 8
		학교회계 전 출 금	4,045	10	-		
8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전출금등	10	-	7	‘탄소중립 시범학교 운영지원’ 공모결과 국립 1교 선정	3.23
		학교회계 전 출 금	4,045	7	-		
9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전출금등	10	-	10	‘과학점핑학교 운영’ 공모결과 국립 1교 선정	5. 3
		학교회계 전 출 금	4,045	10	-		
10	I C T 활 용 교 육 지 원	학교회계 전 출 금	4,390	-	84	‘디지털 선도학교’ 공모결과 국립 학교 미선정	8. 7
		전출금등	87	84	-		
11	I C T 활 용 교 육 지 원	학교회계 전 출 금	4,390	-	5	‘디지털 선도학교’의 환경지원금 수요조사 결과, 국립학교 미선정	8.29
		전출금등	87	5	-		

* '23. 7.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금 2억 9,300만원 미포함

○ '23회계연도에 발생한 전용내역을 **사업별**로 검토하면,

-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ICT활용교육지원**은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개발 및 운영에 대한 사업으로, 주관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에게 11개 시도교육청이 위탁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합의하여¹⁵⁷⁾ 동일한 단위사업내 목그룹간 전용한 것으로 운영비(210)목 예산중 96억 6,600만원을 자치단체등이전(330)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동 전용 사례의 경우, 타 시도 교육청과의 합의 등에 따라 발생한 전용사례에 해당하나, 이미 '23년 3월, 시·도간 합의를 마친 것은 물론 '23년 5월에는 교육부 합의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당초 예산 의결·확정 당시 편성하지 않은 예산과목(자치단체등이전)을 '23년 11월에 이르러 신설하여 전용하기 보다는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¹⁵⁸⁾에 포함시켜 경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지원**은 교육부의 ‘2023년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시도별 예산 조정 결과’¹⁵⁹⁾에 따라 보육료는 감액하고 유아학비는 증액¹⁶⁰⁾이 필요하여 보육료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등이전(330)목에서 유아학비에 해당하는 학교회계전출금(620)목으로 91억 3,8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157) ■ 제89회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시도교육청 공동개발 제안” 합의('23. 3.23)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 교육부” 합의('23. 5.18)

158) ■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920)

제출일 : '23. 5.30, 예결위의결 : '23. 6.30, 본회의의결 : '23. 7. 5

159)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4001('23. 8.31), “2023년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 시도별 예산 조정 결과”

160)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학비 및 보육료 변경 세부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당초 예산(A)		변경 예산(B)		조정 예산(B-A)	
	지원인원	예산액	지원인원	예산액	지원인원	예산액
유아학비	60,872	209,930	61,579	219,069	707	9,138
보 육 료	64,410	280,569	59,015	257,069	△5,395	△23,500
계	125,282	490,500	120,594	476,138	△4,688	△14,361

-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공무직원인건비**는 ‘2024년 교육공무직원 급여통합 지급’ 사업에 앞서 기관 3곳을 시범운영하기 위하여 학교회계전출금(620)목에서 인건비(110)목 및 민간이전(320)목으로 39억 9,200만원을 전용한 바,
-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주요업무 보고’¹⁶¹⁾를 통해 시범운영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사업의 전면 시행(’24년 1월)에 앞서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 기관에서 시범운영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매월 교육공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서 소요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620)에서 기관 인건비(110)로 전용하여 확보한 것이나, 서울시교육청은 기 확보된 기관 인건비(110)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사업 종료 시기인 ’23년 12월이 되어서야 부족한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부터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전용의 경우 매 분기마다 시의회에 전용내역을 보고¹⁶²⁾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방식 및 기간 등 대규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사업방식을 경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전용건의 경우, 사실상 인건비 소요액의 착오 산정을 수정하기 위한 우회수단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적용으로써 한정적으로 예산 운용의 신축성을 부여한 전용 제도운영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로 「지방자치법」 제150조¹⁶³⁾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61) 제316회 임시회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23. 2.24) p.37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운영 체계의 효율적인 개선 추진

- 4세대 NEIS와 연계하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 체계 개선

※ (현행) 인건비 예산 학교 교부 → (개선) 본청·교육지원청 인건비 통합 지급

- 안정적인 인건비 지급 체계 구축을 위해 4세대 NEIS 테스트 지원 및 통합지급 시범 운영 추진

162)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2990(’23. 4. 4), “2023년 1/4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및 전용 내역 보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6014(’23. 7. 7), “2023년 2/4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및 전용 내역 보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142(’23.10.16), “2023년 3/4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 보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743(’24. 1.25), “2023년 4/4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및 전용 내역 보고”

163)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전문생략)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4-41〉 주요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 용 액		전 용 사 유	전용 일자
			감	증		
ICT 활용 교육지원	자치단체 등 이 전	-	-	9,660	11개 시도교육청의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 합의에 따라 서울시교육 청(주관 교육청)은 위탁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운영비(210) 예산 일부를 자치 단체등이전(330) 목으로 전용함	11. 2
	운 영 비	12,777	△9,660	-		
누리과정 지 원	학교회계 전 출 금	214	-	9,138	'23년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사업의 시도별 예산조정 결과에 따라 유아학비(620) 증액 및 보육료(330) 감액 조정이 필요 하여 전용함	11. 1
	자치단체 등 이 전	280	△9,138	-		
교 육 공 무 직 원 인 건 비	인 건 비	71,308	-	3,672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 사 업의 '24년 전면시행 전 3개 기 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23. 9. ~ 12.)하기 위하여 인건비 일부를 시범운영기관에 전용함	12. 4
	민간이전	2,359	-	320		
	학교회계 전 출 금	436,915	△3,992	-		
교 육 복 지 우 선 지 원	운 영 비	4,955	-	2,500	관련 조례가 전부개정('23. 7. 26)됨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지 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 하여 전용함	8.10
	자치단체 등 이 전	151	△2,500	-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운 영 비	2,366	-	1,588	'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시 도별 인정도서 자체 개발을 위 하여 위탁기관과 계약 체결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자치단체 등이전 목에서 운영비로 전용함	7.26
	자치단체 등 이 전	1,800	△1,588	-		
계약제교원 인 건 비	복리후생비	9,107	-	900	계약제교원의 증가에 따라 계 약제교원 대상 맞춤형복지비 부족분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에서 전용	10.19
교육공무직원 인 건 비	복리후생비	12,082	△900	-		
학 교 시 설 경 개 선	학교회계 전 출 금	104,940	-	880	기계설비성능점검 예산 집행방 식을 학교 개별 집행으로 변경 하여 예산 일부를 학교회계전 출금(620)으로 전용함	2.24
	운 영 비	12,355	△880	-		
교 원 인 건 비	복리후생비	10,396	-	512	교원 인사이동에 따른 근무처별 맞춤형복지의 금액 변동으로 학교근무자 대상 항목(620)에 서 기관근무자 대상 항목(240) 으로 전용함	10.19
	학교회계 전 출 금	52,578	△512	-		

※ 전용액 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복지우선지원**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¹⁶⁴⁾됨에 따라 '23년 서울미래교육지구 자치구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 운영비(210)목으로 편성한 예산 25억원을 자치단체등이전(330)목으로 전용한 것임

○ 아울러 **ICT활용교육지원** 외 6건은 최근 3년 연속 전용된 세부사업으로 매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에서 동일 사업의 전용이 연례화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회계연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표 4-42〉 최근 3년 연속 전용 세부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2023	2022	2021
1	교수학습활동지원	학 교 정 보 화	ICT활용교육지원	9,758	31,140	41
2	인 건 비	근 로 자 인 건 비	계약제교원인건비	900	210	4,408
3	교 육 복 지	교 육 복 지 지 원	교육복지우선지원	2,500	7	135
4	교 육 행 정 일 반	특별교육재정수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00	222	1
5	교수학습활동지원	학 교 정 보 화	특색교육과정운영	1,598	38	6
6	보 건 급 식	보 건 관 리	학 교 보 건 관 리	87	18,273	11
7	교수학습활동지원	학력신장및평가	학 력 향 상 지 원	210	1,414	76

-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의 전용이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편의 및 용이한 집행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수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용 사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164)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26)
제출일 : '23. 5.30, 교육위의결 : '23. 7. 3, 본회의의결 : '23. 7. 5

〈표 4-43〉 예산 전용의 제한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단위사업의 다른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 「재난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예산의 경우 이미 전용된 예산이라도 재난·재해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재전용 가능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① 법 제49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1. 인건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 또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총액인건비를 포함한다]
 2. 시설비 및 부대비
 3. 상환금. 다만, 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
- ②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6. 명시이월 관련

(1) 명시이월 일반 현황

○ 「지방재정법」¹⁶⁵⁾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명시이월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14조 3,880억 600만원 중 1.8%, 2,634억 9,100만원이 명시이월되어 직전 회계연도(3,259억 600만원)보다 △624억 1,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4-44〉 최근 3년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명 시 이 월			전 년 대 비	
		건 수	금 액 (B)	비 율 (C=B/A)	증 감 액 (D)	증 감 륜 * (E=D/B)
2 0 2 3	14,388,006	520	263,491	1.8	△62,415	△19.1
2 0 2 2	14,929,457	677	325,906	2.1	253,457	349.8
2 0 2 1	12,162,447	137	72,448	0.6	8,224	16.4

* 증감률[E = D / (전년도)B]

○ 명시이월은 당초 549건, 2,751억 7,300만원을 승인하였으나¹⁶⁶⁾ '23회계연도 결산결과 △29건, △116억 8,200만원 감소된 520건, 2,634억 9,100만원이 실제 명시이월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¹⁶⁷⁾

165)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6)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p.1501, IV. 명시이월 사업조서

167)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58('24. 1. 5),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명시이월 확정”

- 서울시의회가 당초 승인한 명시이월액(2,751억 7,300만원) 보다 실제 명시이월액(2,634억 9,100만원)이 감소한 것은 회계연도 종료 직전까지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사료되나, 실제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까지 시의회가 심사·의결하게 되는 비효율을 발생시킨 결과일 수 밖에 없어, 향후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명시이월이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5〉 명시이월 승인 및 결산 결과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승 인 (A)	결 산 (B)	증 감 (B - A)
건	수	549	520	△29
금	액	275,173	263,491	△11,682

(2) 발생사유별 주요 명시이월

- 명시이월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①사업추진시 장애발생이 1,452억 4,100만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2,634억 9,100만원)의 55.1%에 해당하며, ②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27.5%, 724억 4,400만원으로 제출되었음

〈표 4-46〉 명시이월 발생사유별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총	계	①사업추진시 장 애 발 생	② 사 업 추 진 기 간 부 족	③사업비부족	④ 기	타
건	수	520		268	129	26		97
이	월	액	263,491	145,241	72,444	5,920		39,884
구	성	비	100.0	55.1	27.5	2.2		15.1

○ **사업추진시 장애발생**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268건, 1,452억 4,100만원으로 15억원 이상 명시이월 된 내역중 예산현액 대부분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가칭)동진학교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10건¹⁶⁸⁾, 513억 6,900만원으로 검토되는 바,

〈표 4-47〉 사업추진시 장애발생으로 인한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66,554	59,272	89.0
1	일반재원	교육재정과	①(가칭)동진학교 토지보상비	27,690	27,690	100.0
2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위례초 시설비(그린스마트스쿨)	15,033	7,900	52.5
3	일반재원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②`23학년도 디벗 환경 구축 [학생스마트기기충전함보급(중)]	6,177	6,177	100.0
4	일반재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상도유 노후교사개축(시설비)	5,000	5,000	100.0
5	일반재원	남부교육지원청	(가 칭) 대 방 유 신 설	2,269	2,249	99.1
6	일반재원	서부교육지원청	서연중 강당 겸 체육관 시설비	2,000	1,942	97.1
7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가 락 중 본 관 화 장 실 개 선	1,761	1,761	100.0
8	일반재원	남부교육지원청	선유초 교사동 드라이비트해소	1,764	1,750	99.1
9	일반재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금용고 교사동 드라이비트해소공사	1,720	1,697	98.6
10	일반재원	북부교육지원청	한천중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공사	1,611	1,577	97.9
11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대경생활과학고 본관 외벽개선	1,526	1,526	100.0

※ 명시이월액 1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168) 이월률이 52.5%인 위례초 시설비(그린스마트)는 제외

- ①**(가칭)동진학교 토지보상비**는 토지보상비와 측량 및 감정평가 용역비를 포함하여 27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와 사업 협의지연 및 손실 보상절차 장기 소요 등으로 예산현액 278억 2,000만원중 99.9%, 278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제출함

〈표 4-48〉 (가칭)동진학교 토지보상비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이 월 액	이 월 률
합 계		27,820	27,810	99.9
학교신증설	(가칭)동진학교 토지보상비	27,690	27,690	100
	(가칭)동진학교 측량 및 감정평가 용역비	130	120	92.3

- 동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¹⁶⁹⁾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3년 3월 고시되었으나,¹⁷⁰⁾ 토지 및 물건조사는 '24년 2~3월 이행되었고, 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¹⁷¹⁾은 '24년 4월 게시되어 향후에도 감정평가 단계와 보상액 산정,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절차가 남아 있어 예산집행까지는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②**'23학년도 디벳 환경 구축[학생스마트기기충전함보급(중)]**은 디벳 스마트 기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학교 내 보관 및 충전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2억 600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여 충전함 3,420대를 구입하여 연내 중학교에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169) 보상 절차도

기본조사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보상

17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9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23. 3.23)

171) 「(가칭)동진학교 시설사업 보상계획 공고」('24. 4.24)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5억원 이상, 제안공고)을 위한 교육청의 제안 공고 과정에서 규격미달로 부적격 처리를 받은 업체가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¹⁷²⁾ '23회계연도 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하여 장애요인 발생을 사유로 61억 7,7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임

- 그 외에도 **위례초 시설비(그린스마트스쿨)**는 조달청 계약지연에 따라 연도 내 집행 불가능을 사유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23년도 본예산에 일반재원 150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79억원(52.5%)이 명시이월된 것이나, 공사 준공은 '25년 3월로 예정되어 재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은 129건, 724억 4,400만원으로 15억원 이상 명시이월된 내역중 예산현액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5건, 326억 5,200만원으로 검토됨

〈표 4-49〉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합계				32,652	32,652	100.0
1	일반재원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①'24학년도 디벗 환경 구축 [스마트기기보급(디지털선도학교)]	23,792	23,792	100.0
2	국고보조금	교육시설관리본부	③정의여고 시설비(그린스마트스쿨)	3,783	3,783	100.0
3	국고보조금	교육시설안전과	④고척도서관 그린리모델링	1,905	1,905	100.0
4	특별교부금	교육시설관리본부	진선여중 체육관 전면 보수	1,592	1,592	100.0
5	일반재원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②'24학년도 디벗 환경 구축 [학생스마트기기충전함보급 (디지털선도학교)]	1,579	1,579	100.0

※ 명시이월액 1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17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6801('23.11.30), “가처분신청서 접수”

- ①'24학년도 디벗 환경 구축 [스마트기기보급(디지털선도학교)], ②[학생 스마트기기충전함보급(디지털선도학교)]은 디지털 선도학교에 디벗 스마트 기기 및 충전함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각각 237억 9,200만원과 1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추진기간 부족을 이유로 예산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임

- 동 명시이월 건의 경우 조직개편에 따라 '23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에서 디벗 스마트기기 32,202대와 충전함 1,129대를 구입하고자 계약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사업의 규모에 따른 행정절차(원가조사, 일상감사, 과업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검토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된 것임

- 그 외에도 ③정의여고 시설비(그린스마트스쿨) 및 ④고척도서관 그린리모델링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3회계연도 말(12월)에 사업예산 37억 8,300만원과 19억 500만원이 각각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사업추진 기간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한 것임

○ **사업비 부족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은 123건, 458억 500만원으로 15억 이상 명시이월된 내역중 예산현액 전액이 명시이월된 사업은 6건, 177억 9,400만원인 것으로 검토됨

〈표 4-50〉 사업비부족 및 기타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17,794	17,794	100.0
1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①(가칭)산빛초 신축(토지매입비)	7,560	7,560	100.0
2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중 양 여 고 시 설 비	2,803	2,803	100.0
3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학 생 교 육 원 (대 성 리) 실 내 교 육 장 증 축 시 설 비	2,570	2,570	100.0
4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성 심 여 고 외 벽 보 수	1,638	1,638	100.0
5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영훈고 본관 외부창호 개선	1,620	1,620	100.0
6	일반재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②번동중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	1,602	1,602	100.0

※ 명시이월액 15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①(가칭)산빛초 신축(토지매입비)는 위례택지개발지구 내에 '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가칭)산빛초 신축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75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인근 학교용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관련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¹⁷³⁾ '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토지 무상공급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토지매입비(75억 6,000만원)를 '23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것으로,
- 협의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토지 무상공급 요구를 불수용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토지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토지매입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됨

173)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93108)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위례택지지구 학교용지((가칭)거암초, (가칭)거암중)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제기('23.10.27)

- ②**변동중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은 16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내진 보강공사 연계추진을 이유로 예산전액을 명시이월한 바,
- 외부창호 개선사업과 내진 보강공사는 공사의 연계성이 높아 서로 간섭 되는 사업이므로 외부창호 개선사업의 대상학교 선정 시 내진보강 공사 여부를 반드시 검토 후 예산편성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된 바, 향후 유사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대상학교 선정은 물론 명시이월 승인 요청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7. 사고이월 관련

(1) 사고이월 현황

- 「지방재정법」 174)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3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예산현액(14조 3,880억 600만원) 대비 3.6% 5,199억 9,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762억 3,700만원) 보다 347건, 2,437억 6,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된 바,

〈표 4-51〉 최근 3년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사 고 이 월			
	금 액 (A)	전 년 대 비 증 감 액	건 수	금 액 (B)	비 율 (C=B/A)	전 년 대 비 증 감 액
2 0 2 3	14,388,006	△541,451	1,474	519,997	3.6	243,760
2 0 2 2	14,929,457	2,767,010	1,127	276,237	1.8	52,561
2 0 2 1	12,162,447	906,567	844	223,676	1.8	△59,254

- 예산현액이 직전회계연도 보다 감소(△5,414억 5,100만원)하였음에도 사고이월 건수 및 발생규모가 증가한 것은 시설사업비 규모가 직전회계연도 보다 증가(1,960억 5,100만원)한 것도 주요 요인으로 사료됨

174)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실제로 '23회계연도 **시설사업비**는 1조 5,33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그중 32.7%, 5,084억 9,0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직전회계연도(2,561억 9,800만원) 보다 사고이월 발생규모가 2,522억 9,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표 4-52〉 최근 3년간 시설사업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전 시설 사업비		전 체 사고이월액	시 설 사 업 비 중 사 고 이 월 액			
	금 액 (A)	전 년 대 비 증 감 액		건 수	금 액 (B)	비 율 (C=B/A)	전 년 대 비 증 감 액
2 0 2 3	1,533,327	196,051	519,997	1,360	508,490	32.7	252,292
2 0 2 2	1,337,276	△62,379	276,237	1,024	256,198	19.1	39,190
2 0 2 1	1,399,655		223,676	755	217,007	15.5	

(2) 발생사유별 주요 사고이월

- 사고이월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면 ⑤학사일정을 고려한 방학중 공사추진이 전체 사고이월액(5,199억 9,700만원)의 64.3%, 3,345억 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①계약기간 미도래 1,659억 8,700만원(31.9%), ④사업추진중 장애발생 88억 9,600만원(1.7%), ②추경편성 사업 39억 1,600만원(0.8%), ③사전절차 지연 35억 9,900만원(0.7%), ⑥기타 30억 8,700만원(0.6%)인 것으로 확인됨

〈표 4-53〉 발생사유별 사고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총 계	① 계 약 기 간 미 도 래	② 추 경 편 성 사 업	③ 사 전 절 차 연 지	④ 사업추진중 장 애 발 생	⑤ 학 사 일 정 을 고 려 한 방 학 중 공 사 추 진	⑥ 기 타
건 수	1,474	376	14	18	30	1,010	26
이월액	519,997	165,987	3,916	3,599	8,896	334,511	3,087
구성비	100.0	31.9	0.8	0.7	1.7	64.3	0.6

○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에 따른 사고이월은 1,010건, 3,345억 1,100만원으로

- 동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중 20억원 이상 사고이월 내역 14건중 13건이 교육시설안전과 소관사업으로, 그중 석면제거사업이 10건(442억 3,400만원), 내진보강사업은 3건(95억 8,600만원)인 것으로 검토됨
- 교육시설안전과의 **석면제거**는 학사일정에 따른 학교 측의 요구로 예산현액(549억 100만원) 대비 80.5%, 442억 3,4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제출된 바,
- 서울시교육청은 '27년도까지 모든 학교가 석면제거를 완료하도록 하여 공사물량이 전년 대비 확대되고, 석면제거의 특성상 대부분 겨울방학 기간에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어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은 동일한 이유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매년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어, 일시에 연간 소요액을 편성하기 보다는 집행률을 제고하고 이월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4-54〉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 / A)
합 계 (14 건)				74,092	56,520	76.2
석면제거 (10 건)				54,901	44,234	80.5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북 부)	11,810	7,688	65.0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남 부)	5,927	5,570	93.9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동 작 관 악)	5,571	5,269	94.5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강 남 서 초)	6,708	4,937	73.6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중 부)	4,549	4,102	90.1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강 서 양 천)	4,484	3,769	84.0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성 동 광 진)	4,546	3,423	75.3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강 동 송 파)	3,680	3,404	92.5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동 부)	3,656	3,127	85.5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서 부)	3,967	2,940	74.1
내진보강사업 (3 건)				16,015	9,586	59.8
	특별교부금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성북강북)	3,900	3,548	91.0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 (남 부)	7,599	3,128	41.1
	일반재원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 (북 부)	4,515	2,909	64.4
기 타 (1 건)				3,176	2,700	85.0
	일반재원	동부교육지원청	회 경 공 고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	3,176	2,700	85.0

※ 사고이월액 20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은 376건, 1,659억 8,700만원으로 동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중 20억원 이상 사고이월된 13건중 12건이 각 교육 지원청의 학교시설(급식) 여건개선인 바,

- 그린스마트스쿨을 포함한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확충은 6건(396억 5,800만원), (가칭)개원2초 신설을 포함한 학교신증설은 5건(292억 4,600만원), 학교급식환경개선은 1건, 22억 1,000만원으로 확인됨

〈표 4-55〉 계약기간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13 건)				110,056	77,324	70.2
학교시설환경개선 및 학교시설확충 (6 건)				56,593	39,658	70.0
	일반재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①신남초 개축시설비(1차)	10,601	10,252	96.7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둔촌초 그린스마트스쿨	14,535	9,361	64.4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②위례초 그린스마트스쿨	18,033	9,584	53.1
	일반재원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종암중 시설비	4,232	4,120	97.3
	일반재원	남부교육지원청	당서초 특별교실 증축	4,701	3,634	77.3
	일반재원	남부교육지원청	당서초 체육관 증축	4,489	2,703	60.2
학교신증설 (5 건)				44,342	29,246	65.9
	일반재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③(가칭)개원2초 신설	25,000	14,804	59.2
	일반재원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가칭)강현유신설	6,150	5,693	92.5
	일반재원	중부교육지원청	남산초 병설유신설	7,156	3,367	47.0
	일반재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일원초 교실 증축	3,408	2,896	84.9
	일반재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은로초 교실 및 학생식당 증축	2,627	2,485	94.6
학교급식환경개선 (1 건)				2,537	2,210	87.0
	일반재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경인초 시설비	2,537	2,210	87.0
기관시설유지관리 (1 건)				6,582	6,208	94.3
	일반재원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청사 리모델링	6,582	6,208	94.3

※ 사고이월액 20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① **신남초 증개축시설비(1차)**는 '22회계연도에서 명시이월된 1차 시설비(106억 100만원)중 102억 5,200만원을 재이월(사고이월)한 것으로,
- '23년 7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3년 12월 공사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져 '25년 4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동 사업은 재이월사업이기에 '24년도까지 재이월된 시설비는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준공일을 '25년 4월까지로 계약한 결과 '24년도에 시설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24년도에 기성금으로 시설비를 일부 지급하더라도 재이월된 예산현액중 불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공사가 순연되어 '24년도에 편성된 2차 시설비(62억원) 또한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표 4-56〉 신남초 증개축시설비(1차) 예산 집행 현황(2024~2022)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 연 이 월 액	집 행 액
		전 년 도 이 월 액	본 예산	추 경 증 감 액	계			
2024	신남초 증개축시설비(2차)	10,252	6,200	-	16,452	-	-	-
2023	신남초 증개축시설비(1차)	10,891	-	-	10,891	276	10,252	363
2022	신남초 증개축시설비(1차)	-	11,000	-	11,000	-	10,891	10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23. 4.2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0102('23. 4.2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 동 사업이 '28년도까지 신남초 노후교사를 개축하는 장기계속공사¹⁷⁵⁾라고 할지라도 단계별로 공정을 완수하여 다음 공사일정이 순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이월예산 집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바, 「지방자치법」 제150조¹⁷⁶⁾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② **위례초 그린스마트스쿨**은 예산현액(180억 3,300만원)중 95억 8,400만원(53.1%)을 사고이월하고, 79억원(43.8%)을 명시이월한 것으로,
 - 사고이월된 1차 공사비(95억 8,400만원)는 '23년 2월 설계용역 완료하고 '23년 6월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이 예정되어 '24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명시이월된 2차 공사비(79억원)는 '25년 3월 준공예정되어 '24년도에는 재이월(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표 4-57〉 위례초 그린스마트스쿨 시설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지출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비고
	본 예 산	추 경 1	추 경 2	증감액 (이월)	계				
위례초 그린스마트스쿨	18,033	-	-	-	18,033	548	7,900	9,584	

175) 신남초 증개축공사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차	1차	2차	3차
금액	23,381	10,633	6,200	6,547
계약기간	'23.12.21 ~'27.10. 8	'23.12.21 ~'25. 4.24	'25. 4.24 ~'26.12. 1	'26.12. 1 ~'27.10.8

176)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① (전문 생략)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가칭)개원2초 신설은 예산현액(250억원)의 59.2%, 148억 400만원을 공사 추진중 준공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제출된 바,

■ 동 사업은 개포 주공 1,2단지 재건축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단지 내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2년 4월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통과하여 '22년 9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¹⁷⁷⁾를 받아 '23년 2월 착공 하였으나,

■ ①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연, ②행정절차 추가 이행 및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③재건축조합의 학교부지 조성 지연, ④학교 내 공공하수암거 점용에 따른 부지 대토·경계 확정 지연, ⑤공공기관의 적정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실시 등¹⁷⁸⁾의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당초 '24년 3월로 예정된 개교일을 '24년 9월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 동일한 재건축 단지(개포1단지)내 서울개원초(개원1초)가 준공지연으로 '24년 3월 재개교에 차질이 발생한 사례를 고려하여 동 사업은 계약기간 내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30건, 88억 9,600만원으로 사고이월 내역중 3억원 이상 사고이월된 사례는 6건, 72억 2,900만원인 것으로 검토되는 바,

177) ① 의안번호 : 제214호

② 안건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③ 안건제출 : '22. 8.29

④ 심사경과 : 가결('22. 9.28)

178) ①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지연 : 기존 교지 내 (가칭)개원2초 추가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기준초과로 도시계획 심의 절차 추진, 사업규모 재조정협의시 재건축조합 내부사정으로 정비계획 변경 지연

② 행정절차 추가 이행 및 중앙투자심사 재심사 : 도시관리계획결정 지연을 이유로 설계 미추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추가 이행,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재추진

③ 재건축조합의 학교부지 조성 지연 : 토목 및 기초공사 선시공 추진하였으나, 재건축조합의 학교 부지 조성이 지연됨

④ 학교 내 공공하수암거 점용에 따른 부지 대토·경계 확정 지연

⑤ 공공기관 적정공사기간 산정 의무화 : 「건설기술진흥법」개정으로 '발주자의 적정공사기간 산정' 의무화로, 서울시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심의결과 당초 16개월로 예상하였으나, 계획 대비 6개월이 연장됨

〈표 4-58〉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

재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합 계 (6 건)			9,978	7,229	72.4
일반재원	교육시설관리본부	① 강서도서관 가양분관 설립시설비	5,575	5,021	90.0
일반재원	도봉도서관	3층 디지털자료실 등 공간재구조화	932	567	60.7
일반재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② 경일고 포장개선	673	574	85.2
일반재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신관중진입로 개선사업	478	453	94.6
일반재원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디벳 디지털	1,966	395	20.1
일반재원	평생교육과	서울시교육청 전자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535	316	59.0

※ 사고이월액 3억원 이상 사업내역으로 한정

- ①강서도서관 가양분관 설립 시설비는 1차 시설비 예산현액(55억 7,500만원)의 90.0%, 50억 2,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선행 공정인 해체 및 철거공사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4년 6월까지 준공 예정되어 '24회계연도 내 집행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②경일고 포장개선은 예산현액(6억 7,300만원)의 85.2%, 5억 7,400만원을 사고이월 한 것으로
 - 경일고 교내의 보차도 도로포장을 위하여 '23년 1월 설계용역 실시하고, '23년 11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학교 인접 민간업체의 터파기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등 하자 발생이 우려되어 공사 착공을 '24년 7월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지난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8,300만원을 편성한 이후 여름방학 공사 추진을 이유로 '23년도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23년도 본예산(2,900만원)과 추가경정예산(4억 6,000만원)을 통해 4억 8,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에도, 장애발생을 이유로 또다시 ’24학년도 여름방학으로 공사를 연기하여 ’22년도로부터 이월된 9,9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7,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표 4-59〉 경일고 포장개선 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원 인 행위액 (E)	지출액 (F)	사 고 이 월 액 (G)			집 행 잔 액 (H=D - E)
	본예산 (A)	추 경 증 감 액 (B)		이월등 증감액 (C)	계 (D=A +B+C)			이월분	'23예산	소 계	
		추경1	추경2								
경 일 고 포장개선	29	-	460	183	673	663	88	99	475	574	10

-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확보에만 주력하여 재원을 확보한 이후,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고 또 다시 재이월하는 등 3개년에 걸쳐 공사가 순연되고 있는 바, 결국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한정된 재원을 잠식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예산편성 시 공사를 위한 제반 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예산에 한정하여 편성하고,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 회계연도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경정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전절차 지연 및 추경편성 사업**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32건, 75억 1,500만원 발생하여 전체 사고이월액의 1.4%인 것으로 확인됨

- 서부교육지원청은 청사시설개선 계획에 따라 ‘**노후시설 및 사무공간 개선**’ 사업 외 관련사업 11건, 총 44억 9,100만원을 ’23회계연도에 편성하였으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및 심의일정 지연’을 이유로 30억 6,4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 서부교육지원청사 청사시설 개선사업은 '23년 12월 착공하여 '24년 8월 준공예정으로 '24회계연도 내에 집행예정인 것으로 확인됨

〈표 4-60〉 서부교육지원청 청사시설 개선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번	재원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 / A)
합 계			4,491	3,064	68.2
1	일반재원	노후시설 및 사무공간 개선	1,949	874	44.8
2	일반재원	청사급식시설 개선	532	509	95.7
3	일반재원	노후청사시설공간재구조화	505	498	98.7
4	일반재원	청사석면제거	388	371	95.5
5	일반재원	청사내진보강사업	158	141	89.2
6	일반재원	청사네트워크개선	136	131	96.9
7	일반재원	강당방송 및 무대시설 개선	172	125	72.8
8	일반재원	옥상정원누수보수등	125	120	96.1
9	일반재원	진입로안전환경조성 및 포장	144	102	71.1
10	일반재원	방수 및 냉난방 및 바닥개선	269	84	31.4
11	일반재원	주차장포장개선	90	83	92.8
12	일반재원	청사시설이전비	20	20	100.0

(3) 사고이월 중 초과지출(이월) 내역

○ 사고이월 내역중 예산현액 보다 초과 지출(이월)된 사업은 11건으로, 예산현액 (13억 6,300만원) 보다 지출 및 이월액(14억 7,200만원)이 1억 900만원 초과된 것으로 확인됨

〈표 4-61〉 사고이월 중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지출(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연 번	소 부 관 서	사 업 명	예산현액 (A)	원안행위액 (B=C+D)	지 출 액 (C)	사고이월액 (D)	초과금액 (E=B-A)
합 계			1,363	1,473	575	897	109
1	교수학습기초 학력지원과	2023 초·중·등 IB 교육전 문가(IBE)C) 양성 과정	250	301	150	150	51
2	중 부 교육지원청	2024. 3. 1.자 초등학교 교사 전보 프로그램 개발	50	64	58	5	14
3	강 서 양 천 교육지원청	양강중 특별교실증축 시설비	8	19	19	0.4	11
4	특수교육과	나이스연계 특수교육지원 프 로 그 램 운 영 유 지 보 수	30	41	20	20	10
5	교수학습기초 학력지원과	중3 전환기 채움학기제 꿈을 키우는 도약캠프 위탁 운영	46	54	31	22	8
6	평생교육과	2023년 서울시교육청 전자 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535	540	224	316	5
7	북 부 교육지원청	청사 노후 파티션 교체	20	24	15	8	4
8	북 부 교육지원청	청 사 노 후 파 티 셴	12	13	9	4	1
9	디지털·혁신 미래교육과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 리 시 스템 구 축	320	322	0	322	2
10	남산도서관	부설주차장 물품 구매	28	28	5	22	0.4
11	북 부 교육지원청	청사 내 블라인드교체	63	63	40	22	0.0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078('24. 4.15)

○ **초·중등 IB 교육전문가(IBEC) 양성과정**은 '23년 12월부터 '24년 9월까지 초·중등 IB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위탁운영 사업이나, 예산현액(2억 5,000만원) 보다 원인행위액을 3억 100만원으로 제출한 바, 지출액(1억 5,000만원)과 사고이월액(1억 5,000만원)이 예산현액을 초과한 것으로 검토됨

-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¹⁷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되고, 「지방회계법」 제29조¹⁸⁰⁾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업부서는 세부사업(**특색교육과정운영**)에 편성된 예산을 개별 사업내용(세세부사업)에 융통하여 '**예산의 초과지출**'이 아니라고 변명할 여지가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¹⁸¹⁾에 따라 세출예산은 과목이 구분되어 있고, 예산의 초과지출이 발생한 초·중등 IB 교육전문가(IBEC) 양성과정은 세부사업인 특색교육과정운영중 개별 사업내용으로 사업별 설명자료에 기재¹⁸²⁾하여 심의·의결된 사안임

179)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180) 「지방회계법」 제27조(지출원인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8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411호, '22. 8.11 일부개정)

제5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제5조제1항 관련)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예시	성인·자녀·예산서 대상사업
				[02]교수학습활동지원		
				[01]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 운영 등 제반 경비	
				[05]특색교육과정운영	○ 시·도 자체 특색학교 및 지역교육과정 운영 제 경비(미래교육지구, 혁신학교, 행복학교, 국제학교 등) ○ 기타 시도 자체 특색교육과정 운영 ○ 컨설팅, 연수, 연구발표 등 ○ 학교 1특색사업 운영 등 특색사업 운영관련 제 경비	

182)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112

- 따라서 개별 사업내용(세세부사업)에 편성하여 확정된 사안을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조차 통하지 않고, 세부사업 내에서 재원을 임의로 융통한 것은 집행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결과일 수밖에 없어 회계질서문란 사례로 판단됨

○ 아울러 **초등학교 교사 전보프로그램 개발** 등 타 지출 사례도 지출액과 사고이월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사례로 판단되는 바,

- **초중등 IB 교육전문가(IBEC) 양성과정**을 포함한 11건의 초과지출(이월) 사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위반한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50조¹⁸³⁾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183)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전문생략)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및 지방채 상환을 제외한 잉여금을 의미함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7,632억 6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되었으며, 직전회계연도(1조 3,214억 4,300만원)보다 △5,582억 2,4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4-62〉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순 세 계 잉 여 금			다 음 연 도 예 산 반 영		
	금 액 (A)	전 년 대 비		본 예 산 (C)		추 경 예 산 (예 정)
		증감액(B)	비율(B/A)	금 액	비율(B/A)	
2023	763,206	△558,224	△42.2	61,451	8.0	701,755
2022	1,321,430	863,222	188.3	1,385,344	104.8	△63,914
2021	458,208	131,899	40.4	324,342	70.7	133,866

- 서울시교육청은 '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5,363억 1,500만원으로 전망하였으나¹⁸⁴⁾ 결산결과 당초 전망분보다 2,268억 9,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14조 3,880억 600만원)보다 △1조 734억 4,900만원 감소한 13조 3,145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고,
-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14조 3,880억 600만원) 보다 △2조

18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p.1533, 첨부서류
 “나.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전망” 중 징수전망액(13조 4,157억 6,100만원) 및 지출추정액(12조 8,794억 4,600만원) 5,363억 1,500만원 예상

6,215억 900만원 감소한 11조 7,664억 9,7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세입결산액(13조 3,145억 1,6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11조 7,664억 9,700만원)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1조 5,480억 1,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조 9,271억 3,400만원) 보다 △3,791억 1,600만원 감소한 바,

-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7,834억 8,800만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1조 3,227억 4,1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632억 600만원으로 제출됨

〈표 4-63〉 최근 3년간 결산상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3	2 0 2 2	2 0 2 1
최 종 예 산 (A)		13,785,862	14,633,332	11,815,292
전 년 도 이 월 액 (B)		602,143	296,125	347,154
예 산 현 액 (C = A + B)		14,388,006	14,929,457	12,162,447
세 입 결 산 액 (D)		13,314,516	14,738,177	12,202,396
세 출 결 산 액 (E)		11,766,497	12,811,043	11,445,002
결 산 상 잉 여 금 (F = D - E)		1,548,018	1,927,134	757,394
	명 시 이 월	263,491	325,906	72,448
	사 고 이 월	519,997	276,237	223,676
	계 속 비 이 월	-	-	-
	보 조 금 반 납 예 정 액	1,322,741	3,559	3,060
	보 조 금 집 행 잔 액	1,322,741	3,559	3,060
	교 부 차 액	-	-	-
	지 방 채 상 환	-	-	-
순 세 계 잉 여 금 (G)		763,206	1,321,430	458,208

-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통상적으로 세입·세출결산 이전임에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산상 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다음연도 본예산의 세입예산으로 미리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 '24년도 예산의 경우, '23년 7월,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통해 내부유보금을 614억 5,100만원으로 확정된 바 있어 '23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결산상 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는 내부유보금(614억 5,100만원)만 '24년도 예산중 세입예산에 편성한 바 있음
 - 따라서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7,632억 600만원이나, 이미 '24년도 세입예산중 전년도이월금으로 편성된 614억 5,100만원(내부유보금)이 차감된 세계잉여금 잔여분 7,017억 5,500만원도 '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전년도이월금으로 편성 요청된 것으로 확인됨¹⁸⁵⁾

18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p.31

■ 순세계잉여금(전년도이월금)

- 내용 : 전년도(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액

- 소요예산 : 701,755,433천원

9. 지방채 관련

- 지방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는 것으로,¹⁸⁶⁾ '23회계연도중 지방채 차입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1회계연도에 지방채 원금 전액(3,161억 7,600만원)과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한 이자(64억 2,000만원)를 상환하여,¹⁸⁷⁾ 현재까지 지방채 현재액은 없으며 향후 5년간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4-64〉 2023회계연도 지방채 발행 및 상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2 2 년 도 말 현 재 액	'23회계연도 증감				' 2 3 년 도 조기상환액	' 23년도말 현 재 액
		발 행 (차입)	상 환				
			원 금	이 자	계		
-	-	-	-	-	-	-	-

186)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4. (생략)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7) 서울특별시교육청,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 지방채 상환 예산 및 집행현황, p.90, 재구성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본예산	제1회추경	제2회추경	계		
지방교육채상환	15,553	249,301	57,794	322,649	322,597	52

- 재무제표, 채무관리 보고서, p.456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 류	전 년 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발생액	소멸액	
교육비특별회계	차 입 금	316,176	△316,176	-	316,176	-

V.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¹⁸⁸⁾

-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¹⁸⁹⁾에 따라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같은 법 제16조¹⁹⁰⁾ 및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¹⁹¹⁾에 따라
①**재정상태표**, ②**재정운영표**, ③**순자산변동표** 및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 명세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임¹⁹²⁾
- '23회계연도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결과 **총자산**은 18조 6,780억 3,200만원이며, **총부채**는 5,482억 3,8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8조 1,297억 9,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2.7%, △5,178억 2,600만원 감소한 것임
- '23회계연도 **총수익**은 11조 2,422억 6,700만원이며 **총비용**은 11조 7,512억 8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089억 4,100만원으로 제출된 바,¹⁹³⁾

188)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의 이해」 ('20.12), p.339 “재무보고서”

■ 공공기관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 기업회계에 준하는 재무회계 결산을 하도록 한 것으로 세입·세출 결산이 공공기관 내부의 결산이라면, 재무결산은 정보이용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대외적 결산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총칭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재무보고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

189)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재정상태표 나. 재정운영표 다. 순자산 변동표
4. 성과보고서

190)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③ 제1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9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제299호, '23. 3. 3, 일부개정)

제6조(재무제표의 구성) ① 재무제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註釋)으로 구성된다.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한다.

192) 단, 현금흐름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에 따라 작성이 유예되어 포함되지 않음

19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p.477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회계연도 이후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흑자 재정 운용 구조를 유지하였으나,¹⁹⁴⁾ '23회계연도에는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적자 재정운영 구조로 전환된 것으로 검토됨¹⁹⁵⁾

〈표 5-1〉 재무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 자 산	총 부 채	순 자 산	총 수 익	총 비 용	운 영 차 액
2023	18,678,032	548,238	18,129,793	11,242,267	11,751,208	△508,941
2022	19,195,859	557,124	18,638,734	13,882,268	11,467,322	2,414,946
증 감 (증감률)	△517,826 (△2.7)	△8,885 (△1.6)	△508,940 (△2.7)	△2,640,001 (△19.0)	283,886 (2.5)	△2,923,887 (△121.1)

194) 2015~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요약)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재 정 상 태			재 정 운 영		
	총 자 산	총 부 채	순 자 산	총 수 익	총 비 용	운 영 차 액
2021	16,837,625	613,837	16,223,787	12,090,540	10,760,766	1,329,774
2020	15,905,435	1,011,421	14,894,013	10,795,805	10,372,170	423,635
2019	15,542,121	1,071,744	14,470,377	10,905,211	9,888,411	1,016,800
2018	15,421,953	1,968,376	13,453,577	9,953,282	9,206,718	746,564
2017	14,872,540	2,165,527	12,707,013	9,139,145	8,823,286	315,859
2016	14,893,433	2,502,278	12,391,155	8,652,926	8,426,776	226,150
2015	14,327,355	2,162,350	12,165,005	7,898,833	8,006,873	△108,040

195)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p.36, Ⅳ. 재무제표, 가-1-2. 재정운영표
단, 기업회계와는 달리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1. 재정상태표

- **재정상태표**¹⁹⁶⁾는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¹⁹⁷⁾
- '23회계연도의 **총자산**은 18조 6,780억 3,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9조 1,958억 5,900만원) 보다 △2.7%, △5,178억 2,600만원 감소함
- '23회계연도 **총부채**는 5,482억 3,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571억 2,400만원) 보다 △1.6%, △88억 8,500만원 감소함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3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18조 1,297억 9,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8조 6,387억 3,400만원) 보다 △2.7%, △5,089억 4,000만원이 감소함

〈표 5-2〉 재정상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2 0 2 2	증 감 액
자	산	18,678,032	19,195,859	△517,826
부	채	548,238	557,124	△8,885
순	자 산	18,129,793	18,638,734	△508,940

19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의 이해」('20.12), p.155 “재정상태표”

■ 교육청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 내역 및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교육청의 교육서비스 제공 능력,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

197)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재정상태표)

①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시·도교육청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1) 자산¹⁹⁸⁾

○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¹⁹⁹⁾ 및 기타비유동자산²⁰⁰⁾으로 분류되며²⁰¹⁾

- 전체 자산의 80.2%을 차지하는 **유형자산**은 14조 9,817억 8,9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보다 1.4%, 2,130억 4,100만원 증가하였으나, 전체 자산의 18.9%를 차지하는 **유동자산**은 3조 5,306억 7,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보다 △17.0%, △7,226억 6,900만원 감소하였고,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도 감소하여, 총 △5,178억 2,600만원 감소한 18조 6,780억 3,200만원으로 제출됨

〈표 5-3〉 자산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2 0 2 2		증 감 액
		금	액	금	액	
합	계	18,678,032	100.0	19,195,859	100.0	△517,826
	유 동 자 산	3,530,670	18.9	4,253,339	22.2	△722,669
	투 자 자 산	163,880	0.9	170,785	0.9	△6,905
	유 형 자 산	14,981,789	80.2	14,768,748	76.9	213,041
	무 형 자 산	2	0.0	116	0.0	△113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689	0.0	2,868	0.0	△1,178

198)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 ①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시·도교육청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 ② 자산은 교육·학예 활동에 기여하거나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시·도교육청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 인식한다.

199) 무형자산 : 물리적 실체가 없으나 미래경제적 효익과 행정서비스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통제하고 있는 권리적 성격의 자산으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비, 교육컨텐츠 포함

200) 기타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보증금, 세외장기 현금 포함

20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자산의 분류)

- ①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유형자산,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감내용을 직전회계연도와 대비하여 검토하면,

- 유형자산²⁰²⁾의 경우, 토지·건물·건설중인자산 등의 ⊕증가분(5,159억 4,800만원)과 감가상각비 및 처분액 등의 ⊖감소분(△3,029억 700만원)이 반영되어 직전회계연도(14조 7,687억 4,800만원) 보다 2,130억 4,1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제출됨

〈표 5-4〉 유형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2	증 감 액
합 계		14,981,789	14,768,748	213,041
⊕ 토 지	지	7,491,616	7,387,891	103,725
⊕ 건 물	물	8,859,428	8,788,199	21,229
⊖ 건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592,714	△3,375,956	△216,757
⊕ 구 축 물	물	380,338	361,390	18,948
⊖ 구 축 물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48,775	△237,246	△11,529
⊕ 교 육 · 연 구 용 기 자 재		57,394	47,484	9,910
⊖ 교 육 · 연 구 용 기 자 재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2,617	△28,638	△3,979
⊕ 기 계 장 치	치	298,261	297,327	934
⊖ 기 계 장 치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75,711	△173,944	△1,766
⊕ 도 서	서	81,917	81,902	15
⊕ 집 기 비 품	품	1,635,010	1,516,251	118,758
⊖ 집 기 비 품 감 가 상 각 누 계 액		△969,694	△902,883	△66,810
⊕ 차 량 운 반 구	구	46,886	44,246	2,640
⊖ 차 량 운 반 구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5,514	△23,448	△2,065
⊕ 입 목	목	50,452	50,088	363
박 물 관 유 물	물	8	8	-
⊕ 건 설 중 인 자 산	산	1,125,418	935,992	189,425
기 타 의 유 형 자 산		83	83	-

202) 유형자산 : 1년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입목, 박물관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을 포함

- **유동자산**²⁰³⁾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7,226억 6,900만원 감소한 3조 5,306억 7,000만원으로 제출된 것으로,

- ①**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익 감소 등에 따라 △8,076억 7,400만원 감소하고, ③**미수채권**이 미수 시도세전입금 등의 감소로 △3,833억 1,200만원 감소하였으며, ②**단기금융상품**은 자금 운용을 위한 단기금융상품 예치증가로 4,578억 8,200만원 증가하였고, ④**미수수익**도 249억 9,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고금리기조 및 장기간 기금 예치에 따른 미수이자수익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③**미수채권**의 경우 '24년 5월, 서울시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정산자료의 수정 내역이 통보된 바,²⁰⁴⁾ 결산서 작성 시에는 미수 시도세전입금을 536억 2,500만원으로 고지하였으나,²⁰⁵⁾ 서울시의 법정전출금 산정 오류로 미수 시도세전입금을 297억 8,400만원 과소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 미수 시도세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래에 현금을 수취할 권리로서 미수채권으로 올바르게 계상하여야 하나, 서울시의 산정 오류에 따라 당초 서울시는 재무제표의 **부채**를 과소계상²⁰⁶⁾하여 서울시교육청도 **자산**을 과소계상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됨

203) 유동자산 :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단기대여금, 재고자산, 기타유동자산을 포함

204)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6310('24. 5. 1)

205)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4034('24. 3. 5)

206)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서울시 재무제표(안)」, p.6~p.7

■ 재정상태표중 부채 총계

구 분	2022년		2023년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유 동 부 채	3,394,145	18.8	4,879,528	25.2
장 기 차 입 부 채	9,721,703	53.8	9,760,907	50.4
기 타 비 유 동 부 채	4,935,552	27.4	4,719,771	24.4
부 채 총 계	18,059,400	100.0	19,360,206	100.0

(1)-2. 부채 : 지난해(19,360,026백만원) 대비 총부채내는 1,300,806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중략...) 교육청법정전출금 383,842백만원 등 일반미지급금 1,211,740백만원과 지방채증권(399,163백만원), 차입금(56,342백만원) 등을 포함한 채무는 455,50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다만, 서울시의 경우 결산검사 과정에서 수정되어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는 수정된 수치를 기재하고 있으나,²⁰⁷⁾ 결과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재무제표에 왜곡을 가져온 것으로써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주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5-5〉 서울시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오류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정 ^{주1)}	당 초 ^{주2)}	증 감 액
합	계	87,282	57,497	29,785
	지 방 교 육 세 전 입 금 ^{주 3)}	△2,669	△2,669	-
	담 배 소 비 세 전 입 금	6,571	6,571	-
	시 도 세 전 입 금	83,410	53,625	29,785

주1)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6310('24. 5. 1)

주2)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4034('24. 3. 5)

주3)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실제전입액이 결산액을 초과하여 부채(선수금)으로 계상²⁰⁸⁾

207) 서울특별시, 「2023회계연도 서울시 재무제표」, p.6~p.7

■ 재정상태표중 부채 총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년		2 0 2 2 년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유	동 부 채	3,423,926	18.9	4,879,528	25.2
장	기 차 입 부 채	9,721,703	53.8	9,760,907	50.4
기	타 비 유 동 부 채	4,935,552	27.3	4,719,771	24.4
부	채 총 계	18,089,182	100.0	19,360,206	100.0

(1)-2. 부채 : 지난해(19,360,026백만원) 대비 총부채는 1,271,02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중략...) 교육청법정전출금 354,057백만원 등 일반미지급금 1,181,958백만원과 지방채증권(399,163백만원), 차입금(56,342백만원) 등을 포함한 채무는 455,50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p.513, 라-13. 선수금의 세부내역

〈표 5-6〉 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2	증 감 액
합	계	3,530,670	4,253,339	△722,669
①	현 금 및 현 금 성 자 산	1,458,094	2,265,769	△807,674
②	단 기 금 융 상 품	1,912,272	1,454,389	457,882
③	미 수 채 권	69,110	452,422	△383,312
	미 수 채 권 대 손 총 당 금	△5,924	△8,311	2,386
	미 수 금	628	7	620
	단 기 대 여 금	9,252	15,081	△5,829
	선 급 금	7,782	5,575	2,207
	선 급 비 용	834	827	7
④	미 수 수 익	32,976	7,983	24,993
	기 타 의 유 동 자 산	45,643	59,595	△13,951

- 투자자산²⁰⁹⁾은 장기대여금과 퇴직급여예치금 증감에 따라 직전회계연도(1,707억 8,500만원) 보다 △69억 500만원이 감소한 1,638억 8,000만원으로 제출됨

〈표 5-7〉 투자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2	증 감 액
합	계	163,880	170,785	△6,905
	장 기 대 여 금	161,533	170,785	△9,252
	장 기 학 자 대 여 금	161,533	170,785	△9,252
	퇴 직 급 여 예 치 금	2,346	-	2,346

209) 투자자산 : 회계실체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기타투자자산을 포함

- **기타비유동자산**²¹⁰⁾은 장기임차보증금 감소 등으로 인해 직전회계연도(28억 6,800만원) 보다 △11억 7,800만원이 감소한 16억 8,900만원으로 제출됨

〈표 5-8〉 기타비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3	2 0 2 2	증 감 액
합	계	1,689	2,868	△1,178
	보 증 금	1,621	2,779	△1,157
	전 신 전 화 가 입 권	1,071	1,189	△118
	장 기 임 차 보 증 금	550	1,590	△1,040
	세 외 장 기 현 금	68	89	△21

210) 기타비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보증금, 세외장 기현금 포함

(2) 부채²¹¹⁾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²¹²⁾ ②장기차입부채가 전체 부채의 64.4%, 3,528억 9,000만원이고, ①유동부채는 21.1%, 1,155억 9,900만원, ③기타비유동부채는 14.5%, 797억 4,800만원으로 제출됨
- '23회계연도 **총부채**는 5,482억 3,800만원으로, 민자리스부채상환(BTL상임대료)에 따라 직전회계연도(5,571억 2,400만원) 보다 △1.6%, △88억 8,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5-9〉 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		2022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계		548,238	100.0	557,124	100.0	△8,885
	① 유동부채	115,599	21.1	127,742	22.9	△12,143
	② 장기차입부채	352,890	64.4	417,330	74.9	△64,439
	③ 기타비유동부채	79,748	14.5	12,050	2.2	67,697

211)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 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 ② 부채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12)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부채의 분류)

- ① 부채는 유동부채·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② 유동부채는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예수금·미지급금·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등을 말한다.
- ③ 장기차입부채는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 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로서 장기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말한다.
- ④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임대보증금, 장기선수수익 등을 말한다.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 **유동부채**중 ③선수금은 서울시 결산결과²¹³⁾ 발생한 지방교육세전입금 선수금(26억 9,900만원) 등으로 증가하였고, ④유동성장기차입부채(유동성민자리스부채)도 증가하였으나, ①미지급금(보조금반환예정액)과 ②미지급비용(소송패소비용), ⑤기타의유동부채(1년 미만 예치 대상 세외예수금)는 감소한 바, 직전회계연도(1,277억 4,200만원) 보다 △9.5%, △121억 4,300만원 감소한 1,155억 9,900만원으로 제출된 것임

〈표 5-10〉 유동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3	2 0 2 2	증 감 액
합	계	115,599	127,742	△12,143
①	미 지 급 금	1,322	3,559	△2,236
	보 조 금 반 환 미 지 급 금	1,322	3,559	△2,236
②	미 지 급 비 용	77	79	△2
	미 지 급 이 자 비 용	-	-	-
	기 타 미 지 급 비 용	77	79	△2
③	선 수 금	5,749	3,510	2,238
	지 방 교 육 세 전 입 금 선 수 금	2,699	-	2,699
	임 대 료 선 수 금	214	209	4
	사 용 료 선 수 금	240	635	△394
	자 산 매 각 선 수 금	2,595	2,665	△70
④	유 동 성 장 기 차 입 부 채	64,716	63,368	1,348
	유 동 성 민 자 리 스 부 채	64,716	63,368	1,348
⑤	기 타 의 유 동 부 채	43,733	57,225	△13,491
	세 외 예 수 금	43,733	57,225	△13,491

213) 서울특별시, 교육지원정책과-4034('24. 3. 5), 6310('24. 5. 1)

- **장기차입부채**는 3,528억 9,0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나, 상환일정이 개시된 신규 민자리스(BTL)가 없고, 차입금과 지방채 발행이 없고,²¹⁴⁾ '23회계연도중 민자리스(BTL) 부채(644억 3,900만원)를 상환함에 따라 직전회계연도(4,173억 3,300만원) 보다 장기차입부채는 △15.4%, △644억 3,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표 5-11〉 장기차입부채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3	2 0 2 2	증 감 액
합	계	352,890	417,330	△64,439
민	자 리 스 부 채	352,890	417,330	△64,439

- **기타비유동부채**는 직전회계연도 대비 561.8%, 676억 9,700만원이 증가한 797억 4,800만원으로 제출된 바, ①**퇴직급여충당부채**는 직전회계연도(119억 6,100만원) 대비 전액 감소한 것으로, '23회계연도말 퇴직금 추계액(1,289억 6,800만원) 보다 적립금액(1,313억 1,400만원)이 23억 4,600만원 초과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발생하지 않고, **퇴직급여예치금** 23억 4,600만원이 자산(투자자산)으로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²¹⁵⁾

214)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 채무관리 보고서(p.529), “해당없음”
- 지방채 발행 보고서(p.888), “해당없음”

215)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p.485

- 재정상태표중 자산, II.투자자산

(단위 : 백만원)

과목	해 당 연 도 (2 0 2 3 년)				직 전 연 도 (2 0 2 2 년)			
	교육비특별회계 (A)	기 금 (B)	내부거래 (C)	계 (A+B-C)	교육비특별회계 (A)	기 금 (B)	내부거래 (C)	계 (A+B-C)
II 투자자산	163,880	-	-	161,880	170,785	0	0	170,785
1. 장기대여금	161,533	-	-	161,533	170,785	0	0	170,785
2. 퇴직급여예치금	2,346	-	-	2,346	0	0	0	0

- **기타비유동부채**중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는 지난해계연도에는 8,900만원 (세외장기예수금)으로 소액이었으나 '23회계연도에는 796억 5,900만원이 증가한 797억 4,8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청담고 이전·재배치 변경 계획」²¹⁶⁾에 따라, 지난 '22년 11월, 서울특별시 교육청-서울특별시 재산간 상호 회계간 유상이관 협약²¹⁷⁾을 체결하고, '23년 8월,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 소관 토지(청담고 이전예정지)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유로 이관완료(등기명의인 표시변경)²¹⁸⁾하여 이관된 토지의 재산가액이 ②장기선수금으로 796억 8,0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5-12〉 기타비유동부채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 0 2 3	2 0 2 2	증 감 액
합 계		79,748	12,050	67,697
①	퇴 직 급 여 총 당 부 채	-	11,961	△11,961
	퇴 직 급 여 총 당 부 채	128,968	104,314	24,654
	퇴 직 급 여 예 치 금 (-)	△128,968	△95,352	△33,616
	기 타 의 기 타 비 유 동 부 채	79,748	89	79,659
	② 장 기 선 수 금	79,680	-	79,680
	세 외 장 기 예 수 금	68	89	△21

21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16235('21.11.25), “청담고 이전·재배치 변경계획(안)”

217)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재산간 상호 회계간 유상기관 협약서」('22.11.11), 재구성

◎ 재산의 표시

회 계 구 분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 재 지	서 초 구 잠 원 동 7 1 - 1 0 번 지 (청담고 이전 부지, 11,608㎡)	강 남 구 압 구 정 동 5 2 6 번 지 (현 청담고 부지, 15,889㎡)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 표시 공유재산([별첨 1] 유상이관 목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회계간 재산이관(유상이관) 협약을 체결한다.

218)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18119('23. 8. 9), “청담고 이전 부지 소유권 변경 등기 결과 알림”

- '23회계연도의 **부채비율**²¹⁹⁾은 3.0%로 직전회계연도(3.0%)와 동일하나,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지속 감소 추세인 바, 지방채 발행이 없고, 장기민자리스부채(BTL)는 계속 상환함에 따라 재무구조의 소폭 개선 요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5-13〉 재정상태 변동 및 지방채 발행 현황(2023~2021)

(단위 : 백만원, %, %p)

회 계 연 도	순 자 산 (A)	부 채 (B)	부 채 비 율 (B/A)	전 년 대 비 증 감	지 방 채 발 행 액
2 0 2 3	18,129,793	548,238	3.0	-	-
2 0 2 2	18,638,734	557,124	3.0	△0.8	-
2 0 2 1	16,223,787	613,837	3.8	△3.0	-

- '23회계연도 **유동비율**²²⁰⁾은 직전회계연도(3,329.6%) 보다 △275.4%p 감소한 3,054.2%로 검토되는 바, 유동부채가 △121억 4,300만원 감소하였으나, 유동자산도 중앙정부 이전수익 등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감소로 직전회계연도보다 △7,226억 6,900만원 감소하여 유동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낮아진 것으로 사료됨

219) ■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p.41, 마-2-2. 안정성
부채비율은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로 측정되며, 부채는 그 성격상 미래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순자산에 비해 부채규모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재정운영이 그만큼 경직되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짐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p.479

220) ■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p.41, 마-2-2. 안정성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을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은 이 비율이 클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p.479

〈표 5-14〉 유동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A)	2 0 2 2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C / B)
유 동 자 산 (A)	3,530,670	4,253,339	△722,669	△17.0
유 동 부 채 (B)	115,599	127,742	△12,143	△9.5
유동비율(A/B)	3,054.2	3,329.6		

(3) 순자산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23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직전회계연도(18조 6,387억 3,400만원) 보다 △2.7%, 5,089억 4,000만원 감소한 18조 1,297억 9,300만원인 바,

- 직전회계연도 대비 총자산의 감소(△2.7%)와 순자산의 감소(△2.7%)폭이 동일하여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인 **순자산비율**²²¹⁾도 직전회계연도(97.1%)와 동일한 97.1%로 검토되어 자산의 안정성은 직전회계연도와 동일한 것으로 사료됨

〈표 5-15〉 순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A)	2 0 2 2 (B)	증 감 액 (C = A - B)	증 감 (C / B)
순 자 산 (A)	18,129,793	18,638,734	△508,940	△2.7
총 자 산 (B)	18,678,032	19,195,858	△517,826	△2.7
순자산비율(A/B)	97.1	97.1		

221) ■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p.41, 마-2-2. 안정성
순자산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 측정되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안정성이 양호함을 의미함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p.479

2.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²²²⁾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²²³⁾

- '23회계연도 **총수익**은 11조 2,422억 6,700만원이며 **총비용**은 11조 7,512억 800만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089억 4,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조 4,149억 4,600만원) 보다 △121.1%, △2조 9,238억 8,7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5-16〉 재정운영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과목	2023(A)	2022(B)	증감액 (A - B)	증감률
운영차액(A - B)	△508,941	2,414,946	△2,923,887	△121.1
수익(A)	11,242,267	13,882,268	△2,640,001	△19.0
비용(B)	11,751,208	11,467,322	283,886	2.5

222)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의 이해」('20.12), p.155 “재정운영표”

- 수익과 비용 내역을 기능별로 보고함으로써 운용활동 결과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
 - 수익 :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
 - 비용 :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p.199, 2. 주요 제도적 변화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함

223)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재정운영표)

-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② 재정운영표에 기록하는 비용은 기능별 및 성질별로 구분하되,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필수보충정보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 **총수익**²²⁴⁾은 11조 2,422억 6,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3조 8,822억 6,800만원) 보다 △19.0%, △2조 6,400억 100만원 감소한 것임

- 총수익의 97.4%를 차지하는 **이전수익**은 10조 9,510억 2,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3조 6,718억 2,400만원) 보다 △2조 7,207억 9,900만원 감소한 바,

- 직전회계연도 대비 보통교부금 및 국세와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라 법정 전입금 규모도 감소하여 중앙정부이전수익중 ①**보통교부금수익**이 직전회계연도(7조 5,895억 8,900만원) 보다 △2조 1,026억 7,800만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중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수익도 직전회계연도(4조 1,316억 7,300만원) 보다 △3,812억 4,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영유아수 감소에 따라 ②**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수익**도 직전회계연도(5,291억 2,800만원) 보다 △533억 7,900만원 감소하였음

〈표 5-17〉 중앙정부 이전수익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2	증 감 액
합	계	6,441,835	8,638,058	△2,196,222
①	보통교부금수익	5,486,911	7,589,589	△2,102,678
	증액교부금수익	162,753	162,317	436
	특별교부금수익	247,644	267,469	△19,825
	국고보조금수익	68,778	89,552	△20,774
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수익	475,749	529,128	△53,379

224)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수익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기부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 **자체수익**은 총수익의 0.1%, 67억 2,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61억 7,300만원) 보다 5억 5,300만원 증가한 바, 사용료 및 임대료 수익이 직전회계연도(43억 3,900만원) 보다 9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의 정상화로 평생학습수익이 직전회계연도(9억 6,000만원) 보다 1억 6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수수료수익과 기타자체수익(분담금수익)은 직전회계연도(7억 3,100만원) 보다 △4억 6,8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 **기타수익**은 총수익의 2.5%, 2,845억 1,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042억 7,000만원) 보다 802억 4,400만원 증가한 바,
 - 기준금리 인상과 자금운용 확대 등의 요인으로 이자수익이 직전회계연도(356억 2,600만원) 보다 753억 6,900만원 증가하고, 토지매각대금 증가로 인해 자산처분이익이 직전회계연도(220억 9,800만원) 보다 55억 8,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보조금등반납금수익의 증가로 잡수익이 직전회계연도(1,209억 4,000만원) 보다 53억 100만원 증가하였음

 - 다만, 전기오류수정이익²²⁵⁾의 감소로 인해 기타수익중 기타의기타수익이 직전회계연도(235억 2,700만원) 보다 △55억 300만원 감소된 것으로 확인됨

225) 전기오류수정이익 : 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에 수정사항 중 순자산의 증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계기준 적용오류, 추정오류, 계정분류 오류, 계산상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

〈표 5-18〉 재정운영표 수익 세부 내용

(단위 : 백만원, %)

과목	2023 (A)		2022 (B)		증감액 (A - 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계	11,242,267	100.0	13,882,268	100.0	△2,640,001
① 이 전 수 익	10,951,024	97.4	13,671,824	98.5	△2,720,799
중앙정부이전수익	6,441,835	57.3	8,638,058	62.2	△2,196,22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4,277,092	38.0	4,715,029	34.0	△437,936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218,165	1.9	299,627	2.2	△81,462
기타이전수익	13,930	0.1	19,109	0.1	△5,178
② 자 체 수 익	6,727	0.1	6,173	0.0	553
등록금수익	1	0.0	15	0.0	△14
수익자부담수익	1,173	0.0	1,086	0.0	86
임대료수익	534	0.0	511	0.0	23
사용료수익	4,754	0.0	3,828	0.0	926
수수료수익	264	0.0	315	0.0	△52
기타자체수익	-	0.0	416	0.0	△416
③ 기 타 수 익	284,514	2.5	204,270	1.5	80,244
이자수익	110,996	1.0	35,626	0.3	75,369
자산처분이익	27,678	0.2	22,098	0.2	5,580
제재금수익	1,573	0.0	2,078	0.0	△504
잡수익	126,241	1.1	120,940	0.9	5,301
기타의기타수익	18,024	0.2	23,527	0.1	△5,503

※ '23회계연도 재무제표(재정운영표) 재구성, '23.12.31 기준

○ **총비용**²²⁶⁾은 직전회계연도(11조 4,673억 2,200만원) 보다 2.5%, 2,838억 8,600만원이 증가한 11조 7,512억 800만원으로,

- ⑤**학교재정지원관리**, ⑧**교육행정일반**, ⑪**인건비**, ⑫**기타현금지출비용** 등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4,848억 8,700만원 증가하고, ②**교수학습활동지원**, ③**교육복지**, ④**보건급식**, ⑥**학교시설여건개선**, ⑦**평생교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2,010억 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되었음

- ⑪**인건비**는 총비용의 45.5%, 5조 3,511억 5,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5조 1,675억 3,200만원) 보다 3.6%, 1,836억 2,000만원 증가한 바, 공무원인건비는 직전회계연도(4조 3,392억 7,200만원) 대비 2.6%, 1,143억 9,200만원 증가하고, 근로자인건비는 직전회계연도(8,282억 6,000만원) 대비 8.4%, 692억 2,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학생수 감소 등으로 근로자(교육공무직) 인원수는 감소추세²²⁷⁾이나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지급기준 인상²²⁸⁾ 등으로 인해 증가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⑤**학교재정지원관리**는 총비용의 19.5%, 2조 2,859억 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조 2,495억 3,200만원) 보다 1.6%, 363억 6,900만원 증가한 바,

■ 일상회복에 따른 코로나19 재난대응비 감액 및 학생수 감소 등의 학교 운영비 감소요인으로 공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지원은 직전회계연도(7,430억 3,100만원) 대비 △1.0%, △77억 2,200만원 감소하였으나,

226)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비용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 비용은 회계연도 동안의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등을 통한 경제적 효익의 사용 또는 유출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22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06('23. 4.21), 9078('24. 4.15), 4-7-3. 인건비 인원변동 현황

○ 교육공무직원 : (2022년) 12,625명 → (2023년) 12,390명, 직전회계연도 대비 △235명 감소

22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 교육공무직 관리운영계획」, 「2022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 재구성
3) 인건비 지급기준, 기본급

구분	유형1	유형2
2023회계연도	월 2,118,000원	월 1,918,000원
2022회계연도	월 2,068,000원	월 1,868,000원

사립학교에 대한 사학재정지원은 직전회계연도(1조 5,065억 100만원) 대비 2.9%, 440억 9,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23회계연도에 신규편성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재정결손지원²²⁹⁾ 및 다정다감 학교공간 개선사업²³⁰⁾ 등으로 인해 운영비재정결함지원이 직전회계연도(2,256억 8,700만원) 보다 18.0%, 406억 6,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④**보건급식**은 총비용의 9.1%, 1조 720억 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1,295억 7,600만원) 보다 △5.1%, △575억 7,300만원 감소한 바, 보건급식중 급식관리는 직전회계연도(9,278억 6,900만원) 보다 1.6%, 150억 1,600만원 증가하였으나, 보건관리는 직전회계연도(2,017억 600만원) 보다 △36.0%, △725억 8,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 까지 집중 편성된 학교감염병관리사업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검토됨
- ⑥**학교시설여건개선**은 총비용의 3.6%, 4,216억 4,400만원인 바, 단위 사업인 학생배치시설개선, 학교시설개선의 감소로 직전회계연도(5,021억 8,500만원) 보다 △16.0%, △805억 4,000만원 감소하였으며,
- ⑫**기타현금지출비용**은 총비용의 7.2%, 8,413억 7,100만원으로 감각상 각비²³¹⁾ 증가 등으로 직전회계연도(6,463억 8,400만원) 보다 30.2%, 1,949억 8,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229)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p.233

72. 사회통합전형미충원재정결손지원

- 기간 : 2023. 9. ~ 2024. 2.
- 대상 : 외고 6교, 자사고 17교, 일반고 전환고(자사고 교육과정 운영) 4교
- 내용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 학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
 - 교당 지원액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규모에 따라 상이함
- 소요예산 : 11,437,243천원

23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718('23. 1.13), “2023학년도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

▶ (다정다감 학교공간 개선사업)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 공간개선 사업, 학교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 (최소) 8천 8백만원 ~ (최대) 1억 2천만원 지원(교당 평균 1억원)

※ 학교별 공통경상운영비(포물러 산정 값)에 일정 비율 적용

231) 감가상각비 : 고정자산에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셈(내용연수 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계상)하는 회계상의 절차로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집기비품, 차량운반구에 한하여 적용함 (유형자산 중 토지, 도서, 입목, 건설중인자산, 기타의 유형자산, 박물관유물 제외)

〈표 5-19〉 재정운영표 비용 세부 내용

(단위 : 백만원, %)

과목	2 0 2 3 (A)		2 0 2 2 (B)		증 감 액 (A - B)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합 계	11,751,208	100.0	11,467,322	100.0	283,886
① 인 적 자 원 운 용	66,766	0.6	61,456	0.5	5,309
②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642,410	5.5	660,584	5.8	△18,173
③ 교 육 복 지	765,167	6.5	805,913	7.0	△40,745
④ 보 건 급 식	1,072,002	9.1	1,129,576	9.9	△57,573
⑤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2,285,901	19.5	2,249,532	19.6	36,369
⑥ 학 교 시 설 여 건 개 선	421,644	3.6	502,185	4.4	△80,540
⑦ 평 생 교 육	27,732	0.2	31,699	0.3	△3,966
⑧ 교 육 행 정 일 반	196,997	1.7	136,903	1.2	60,094
⑨ 기 관 운 영	37,567	0.3	33,081	0.3	4,486
⑩ 재 무 활 동	42,493	0.4	42,472	0.4	21
⑪ 인 건 비	5,351,153	45.5	5,167,532	45.1	183,620
⑫ 기타비현금지출비용	841,371	7.2	646,384	5.6	194,986

3. 순자산변동표

- **순자산변동표**²³²⁾는 한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23회계연도의 **기말순자산**은 18조 1,297억 9,3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8조 6,387억 3,400만원) 보다 △2.7%, △5,089억 4,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20〉 순자산변동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 0 2 3 (A)		2 0 2 2 (B)		증 감 액 (A - B)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기 말 순 자 산	18,129,793	100.0	18,638,734	100.0	△508,940
고 정 순 자 산					
Ⅰ. 전기이월고정순자산	14,288,048	78.8	14,031,747	75.3	256,301
Ⅱ. 고정순자산의 증가	721,752	4.0	687,459	3.7	34,292
Ⅲ. 고정순자산의 감소	445,619	2.5	431,157	△2.3	14,461
Ⅳ. 차기이월고정순자산	14,564,181	80.3	14,288,048	76.7	276,132
특 정 순 자 산					
Ⅰ. 수정후전기이월특정순자산	1,797,644	9.9	397,330	2.1	1,400,313
Ⅱ. 운 영 차 액	158,393	0.9	1,432,463	7.7	△1,274,069
Ⅲ. 특정순자산의 증가	-	0.0	0.3	0.0	△0.3
Ⅳ. 특정순자산의 감소	106,799	0.6	32,149	△0.2	74,649
Ⅴ. 차기이월특정순자산	1,849,238	10.2	1,797,644	9.6	51,594
일 반 순 자 산					
Ⅰ. 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2,553,040	14.1	1,794,709	9.6	758,331
Ⅱ. 운 영 차 액	△667,334	△3.7	982,483	5.3	△1,649,817
Ⅲ. 일반순자산의 증가	445,619	2.5	431,157	2.3	14,461
Ⅳ. 일반순자산의 감소	614,952	3.4	655,310	△3.5	△40,357
Ⅴ. 차기이월일반순자산	1,716,372	9.5	2,553,040	13.7	△836,667

232)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의 변동에 관한 내역을 표시한다.

○ **순자산**은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하는 바,²³³⁾

- **고정순자산**²³⁴⁾은 전체 순자산의 80.3%, 14조 5,641억 8,1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4조 2,880억 4,800만원) 보다 2,761억 3,200만원 증가함

■ '23회계연도중 고정순자산은 토지·건물 및 집기비품의 증가, 건설중인 자산의 순증가, 민자리스부채 등의 순감소 등의 사유로 7,217억 5,200만원이 증가(고정순자산의 증가)하였으나, 감각상각비 및 토지·건물 등의 감소로 인해 △4,456억 1,900만원 감소(고정순자산의 감소)한 것으로, 전기이월고정순자산에 고정순자산이 증감되어 기말순자산(차기 이월고정순자산)이 14조 5,641억 8,100만원으로 제출된 것임

- **특정순자산**²³⁵⁾은 전체 순자산의 10.2%, 1조 8,492억 3,8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조 7,976억 4,400만원) 보다 515억 9,400만원 증가한 바,

■ 특정순자산은 전액 기금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23회계연도중 1,583억 9,300만원이 증가하고, △1,067억 9,900만원이 ①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67억 9,900만원)과 ②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1,000억원)의 시설비 등이 집행됨에 따라 고정순자산(건설중인자산)은 증가하고 특정순자산은 감소하여, 기말순자산(차기 이월특정순자산)은 1조 8,492억 3,800만원으로 제출된 것임²³⁶⁾

233)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순자산의 정의 및 분류)

-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하고,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 ② 고정순자산은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 차입금·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③ 특정순자산은 채무상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그 사용목적이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하며, 그 적립금은 해당 목적에 따라 별도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④ 일반순자산은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34) 고정순자산 : 교육청이 고유활동(교육·학예·행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

235) 특정순자산 :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자산(기금 등) 고정순자산을 제외한 순자산 중 법령 또는 채권자, 기부자 등에 의해 사용에 제약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기금회계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중 적립성기금을 포함함

23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p.539

-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일반순자산**²³⁷⁾은 전체 순자산의 9.5%, 1조 7,163억 7,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2조 5,530억 4,000만원)보다 △8,366억 6,700만원 감소한 것임

〈표 5-21〉 순자산의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액 (A - B)	주 요 내 역
기 말 순 자 산 (① + ② + ③)	18,129,793	18,638,734	△508,940	
고 정 순 자 산				
Ⅰ. 전가이월고정순자산	14,288,048	14,031,747	256,301	
Ⅱ. 고정순자산의증가	721,752	687,459	34,292	· 토지 1,085억원 · 건물 783억원 · 구축물 202억원 · 교육연구용기자재 147억원 · 기계장치 229억원 · 도서 38억원 · 집기비품 2,146억원 · 차량운반구 53억원 · 입목 6억원 · 건설중인자산의 순증가 1,894억원 · 만기부채의 순감소 630억원
Ⅲ. 고정순자산의감소	445,619	431,157	14,461	· 토지 48억원 · 건물 42억원 · 구축물 10억원 · 교육연구용기자재 3억원 · 기계장치 16억원 · 도서 38억원 · 집기비품 63억원 · 차량운반구 4억원 · 입목 2억원 · 감가상각비 4,228억원
Ⅳ. 차가이월고정순자산 (Ⅰ + Ⅱ - Ⅲ) ①	14,564,181	14,288,048	276,132	

237) 일반순자산 :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순자산으로 교육청의 운영활동에 사용될 수 있는 자원, 일반순자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고정·특정자산의 증가·감소 금액과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포함됨

구	분	2023 (A)	2022 (B)	증 감 액 (A - B)	주요내역
특정순자산					
I.	수정후전기 이월특정순자산	1,797,644	397,330	1,400,313	
II.	운영차액	158,393	1,432,463	△1,274,069	
III.	특정순자산의증가	-	0.3	△0.3	
IV.	특정순자산의감소	106,799	32,149	74,649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 건설중인자산 67억 9,900만원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건설중인자산 1,000억원
V.	차기이월특정순자산 (I + II + III - IV) ②	1,849,238	1,797,644	51,594	
일반순자산					
I.	수정후전기 이월일반순자산	2,553,040	1,794,709	758,331	
II.	운영차액	△667,334	982,483	△1,649,817	
III.	일반순자산의증가	445,619	431,157	14,461	
IV.	일반순자산의감소	614,952	655,310	△40,357	
V.	차기이월일반순자산 (I + II + III - IV) ③	1,716,372	2,553,040	△836,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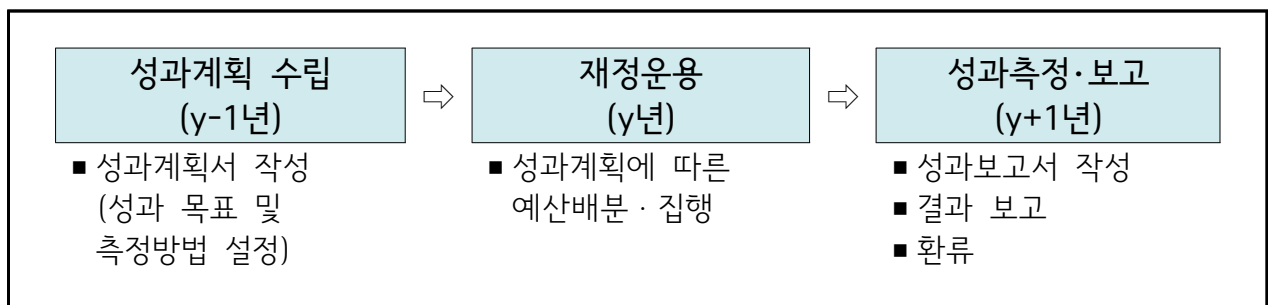
VI.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1. 성과보고서 검토

○ 「지방재정법」²³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회계법」은 성과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서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고,²³⁹⁾

- 성과보고서의 경우에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⁴⁰⁾

〈표 6-1〉 성과 목표관리의 기본구조



○ '23회계연도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5개 전략목표, 25개 성과목표, 91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달성도에 관한 것으로, 성과달성률에 따른 등급별 현황을 검토하면 91개 성과지표수 중 ①4개 지표(4.4%) **초과달성**, ②78개 지표(85.7%) **달성**, ③9개 지표(9.9%) **미달성**으로 제출됨

238)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39)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중략)

4. 성과보고서

240)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④ 제15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6-2〉 성과보고서 총괄현황

(단위 : 개, %)

전략목표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과달성도			달성률 ^{주4)}
			초과달성 ^{주1)}	달성 ^{주2)}	미달성 ^{주3)}	
5	25	91 (100.0)	4 (4.4)	78 (85.7)	9 (9.9)	90.1

※ 주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주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주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주4) '초과달성률'과 '달성률'의 합계

○ '23회계연도 **초과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을 검토하면, '주요 매체별 공익광고 건수'(대변인) 성과지표는 2개 회계연도 연속 초과달성하였으며, 2개 회계연도 연속 미달성 성과지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²⁴¹⁾

-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기준」은 성과분석시 성과를 미달성, 초과달성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시하도록 하는바,²⁴²⁾

■ '주요 매체별 공익광고 건수'(대변인)는 직전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홍보 매체 확대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초과달성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미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사안은 소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기 보다는 성과보고서의 실적을 차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목표치 수립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목표치가 설정되도록 목표치를 재검토 하여야 할 것임

24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p.837~p.856

242) 교육부,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 p.67

V. 성과보고서, 2. 성과보고서 작성방법

○ 성과분석 시 성과 미달성, 초과달성(달성률 130%이상)한 경우에 대한 원인분석 제시

○ 성과지표의 적정성(사업목적과의 연관성, 결과중심 지표), 목표수준의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개선 사항 등 시사점 도출

〈표 6-3〉 ‘주요 매체별 공익광고 건수’ 성과 달성도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3	2 0 2 2
[(방송광고6×매치수)+(인터넷광고0.6×매체수)+(옥외광고0.4×매체수)+(지면광고0.2×매체수)]	목 표	123	121
	실 적	165	160.8
	달 성 률	134.1	132.8

- ‘초·중학교 무상 교과용 도서 재고율’(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은 직전회계연도에는 성과를 미달성(85.7%)하였으나, ’23회계연도에는 성과를 초과 달성(139.4%)한 것으로²⁴³⁾ ’23년 3월, 초·중학교 전입생용 교과서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²⁴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하던 전입생용 교과서를 본청에서 통합관리하며 교과서 수급관리가 체계화되어 성과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6-4〉 ‘초·중학교 무상교과용 도서 재고율’ 성과 달성도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3	2 0 2 2
(보관 무상교과용 도서/필요 무상교과용 도서)×100 * 하향지표	목 표	1.9 이하	1.9 이하
	실 적	1.15	2.17
	달 성 률	139.4	85.7

-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운영교 비율’(초등교육과)은 ’23년 3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²⁴⁵⁾되어 초·중학교의 학교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생태전환교육 운영학교 수가 증가하여 성과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243)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p.840

24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3804(’23. 3.15), “2023학년도 전입생용 교과서 통합 관리 계획”

245)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6호, ’22. 6.10 일부개정, ’23. 3. 1 시행)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6-5〉 ‘지역연계 생태전환 교육 운영교 비율’ 성과 달성도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3	2 0 2 2
(지역연계 생태전환 교육 운영 학교 / 전 체 초 · 중 · 고) × 1 0 0	목 표	38	35
	실 적	64	36
	달 성 률	168.4	102.8

- '23회계연도 신규 성과지표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율’(특수교육과)은 달성률이 미흡(72.9%)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미달성 원인을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결국 수요 부족에 따라 실적을 미달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에는 합리적인 지원 신청 기준 마련 및 수요자인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홍보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예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성과지표명은 측정하는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나,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율’이라는 다소 모호한 지표명을 사용하고 있어 성과지표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6-6〉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율’ 성과 달성도(신규)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3	2 0 2 2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선정자수/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자수)×100	목 표	85	-
	실 적	62	-
	달 성 률	72.9	-

- '23회계연도 신규 성과지표인 '학생인권교육 학교 참여율 및 교육자료 제작보급률'(민주시민생활교육과)과 '학교채식선택제 확대'(보건안전진흥원)의 경우, 달성률이 각각 37.5%, 27.7%로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미달성 원인을 '2023년도 예산 전액 삭감에 따라 학생인권 교육 및 연수 사업 축소, 교육자료 제작 불가' 및 '2023년도 별도 예산 미확보로 이행 목표 미달'로 분석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성과계획서 확정시 각 부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 예산부서와 협의 후 수정·보완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²⁴⁶⁾
- 동 성과지표는 의회의 예산 심의과정 중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²⁴⁷⁾ 성과계획서 확정 시 의회의 예산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방자치법」²⁴⁸⁾에 따른 의회의 예산 심사 취지를 오인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23회계연도중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의 단서조항²⁴⁹⁾을 근거로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한 바,²⁵⁰⁾

246) 교육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8.), p.221 제3편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 III. 추진일정

○ 성과계획서 지방의회 제출 (11월, 예산부서)

- '23년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과계획서 의회 제출

○ 성과계획서 확정 ('22.12월~'23.1월)

- 각 부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고, 예산부서와 협의 후 수정·보완하여 「'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확정

247) 예산결산특별위원회('22.12.1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첨부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내역

248) 「지방자치법」 제3절 권한,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11. (생략)

249)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50)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3. 3.15, 제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23. 5.30, 제출)

- 「지방재정법」 251)은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252)에는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특히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지방재정법」에 열거된 단서 조항은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출여부에 대한 집행기관의 재량사항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부득이한 사유나 제출의 실익이 낮은 경우 등을 고려한 예외적인 사례로 인식하고 운용될 필요가 있어 성과계획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한 바, 253)
- '23회계연도중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며 성과계획서를 수정하지 않고, '23회계연도 결산에 이르러서야 성과미달성 원인을 '2023년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분석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예산과 결산을 단절시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저하하는 사례일 수밖에 없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51)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성과계획서, 9. ~ 14. 생략

252) 교육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8), p.221

■ 성과계획서 보완 및 변경 ('23.1월~12월)

- 추경예산 등 예산변경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사업비를 변경된 예산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함

25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3. 4.10),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p.98~9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3. 7. 5), 「2023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p.82~83

〈표 6-7〉 ‘학생인권교육 학교 참여율 및 교육자료 제작보급률’ 성과 달성도(신규)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3	2 0 2 2
$\{(\text{인권교육 참여학교 수} / \text{전체 학교 수} (\text{초} \cdot \text{중} \cdot \text{고} \cdot \text{특수})) \times 100\} \times 0.5 + \{(\text{인권교육 자료 제작 보급 수} / \text{제작 보급 목표 수}) \times 100\} \times 0.5$	목 표	64	-
	실 적	24	-
	달 성 률	37.5	-

〈표 6-8〉 ‘학생 채식 선택제 확대’ 성과 달성도(신규)

(단위 : 건, %)

측 정 산 식	목 표 대 비 실 적 및 달 성 률		
	구 분	2 0 2 3	2 0 2 2
그 린 급 식 바 설 치 및 수 체 험 교 육 지 원 학 교	목 표	148	-
	실 적	41	-
	달 성 률	27.7	-

〈표 6-9〉 초과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부 서 명	성 과 지 표 명	
	초 과 달 성 ^{주1)} (4개)	미 달 성 ^{주2)} (9개)
대 변 인	·주요 매체별 공익광고 건수*	
디지털·혁신 미래교육과	·초·중학교 무상교과용 도서 재고율	
초 등 교 육 과	·지역연계 생태 전환 교육 운영교 비율	
중 등 교 육 과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지원 대상 학교 확대
민 주 시 민 생 활 교 육 과		·(신규)교육참여수당 지급 인원 수 ·(신규)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전문기관 2차 연계율 ·(신규)학생 인권교육 학교 참여율 및 교육자료제작 보급률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계고 교원 연수 이수율
특 수 교 육 과	·(신규)특수교육과정 및 수업 역량강화 연수 누적 이수율	·(신규)특수교육관련서비스 지원율
학 교 지 원 과		·학급당 적정 학생수
교육연구정보원		·교직원 및 학부모 나이스 만족도
보건안전진흥원		·(신규)학교 채식선택제 확대

※ 주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주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 *지표의 경우 2회계연도(2023~2022) 이상 연속 ‘초과달성’

2. 성인지 결산서 검토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²⁵⁴⁾
- 또한 「지방회계법」은 성인지 결산서를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²⁵⁵⁾

254) ■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 ① 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 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성인지 예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255) ■ 「지방회계법」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 ①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1. ~ 3. 생략

4. 성인지 결산서

■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 사업 개수는 총 38개 사업으로, '23년도 예산안 제출 당시에는 총 39개 사업이었으나,²⁵⁶⁾ 의회의 예산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노동인권 연수이수 여성 교원 비율'(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성과지표는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 '23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총 38개 사업의 예산현액 2,827억 6,200만원 중 81.2%, 2,295억 2,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된 것임
 - '23회계연도 성인지 대상사업 집행률(81.2%)은 '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집행률(81.8%) 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성인지 성과목표의 달성률(68.4%)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검토되는 바,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당초 성인지 예산으로 수립하였던 성인지 성과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하는 등 성인지 결산을 형식화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6-10〉 성인지 결산서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 업 수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B)	집행률(B/A)
합	계	38	282,762	229,529	81.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2	102,676	96,338	93.8
	성별영향평가사업 ^{주1}	5	7,321	6,596	90.1
	교 육 부 지 정 사 업	17	169,802	123,887	73.0
	자 체 선 정 사 업 ^{주2}	4	2,961	2,706	91.4

※ 주1) 교육청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주2) 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교육감 공약사업 등)

256) 서울특별시교육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성인지예산서(안)」, p.3

〈표 6-11〉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분	사업수	성과목표수	목표달성 ^{주1)}	목표미달성 ^{주2)}	목표달성률
2023	38	38 (100.0)	26 (68.4)	12 (41.6)	68.4

※ 주1) 성인지 성과목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주2) 성인지 성과목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

○ 아울러 '23회계연도의 경우,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조직개편으로 성인지 예산서상 사업금액, 조직별 성인지 예산사업 내역 등의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으나,

- 「지방재정법」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 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²⁵⁷⁾ 지난 '23년도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인지 예산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의 취지에 따르면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과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평등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어²⁵⁸⁾ 사업별 예산현액의 변경시 성인지 예산서의 수정도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57)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 6. 생략, 7. **성인지 예산서**, 8. ~ 14. 생략

258) ■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332호, '24. 1.12), p.90

1. 성인지 결산제도의 개념

○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작성한 성인지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

3.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 「지방재정법」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
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자원 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
하고 있음²⁵⁹⁾
- 서울시교육청은 '23년도 예산안과 함께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의 5년간
교육비특별회계와 5개 기금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바,
 -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의 단서
조항²⁶⁰⁾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첨부하지 않았으나, '23년도 제2회

259)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 4.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
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60)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변동된 재정규모를 반영한 「2023~2027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한 것으로 사료됨

〈표 6-12〉 '23~'27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재정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재정규모	계획기간					연평균 증가율
			2023	2024	2025	2026	2027	
변경	계	85,924,192	16,849,959	16,382,371	17,096,666	17,608,099	17,987,097	1.6
	교특회계	70,364,567	13,845,756	13,230,576	13,894,313	14,439,779	14,954,143	1.9
	기금	15,559,625	3,004,203	3,151,795	3,202,353	3,168,320	3,032,954	0.2
기정	계	85,114,576	16,686,497	16,239,203	16,938,434	17,438,252	17,812,190	1.6
	교특회계	70,341,156	13,824,280	13,235,394	13,892,287	14,435,052	14,954,143	2.0
	기금	14,773,420	2,862,217	3,003,809	3,046,147	3,003,200	2,858,047	0.0

※ 기금수입 = 당해연도 기금전입금 + 전년도 예치금회수 + 이자수입

VII.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1. 예비비 일반현황

(1) 예비비 편성

- 예비비는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지방자치법」 제144조²⁶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고,
 - 예비비의 편성규모는 「지방재정법」 제43조²⁶²⁾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일반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이와는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은 '23회계연도에 일반예비비 100억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7-1〉 예비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 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최종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합	계	20,000		-		-	20,000
일반예비비		10,000		-		-	10,00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		-		-	10,000

261)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하생략)

(2) 예비비 지출

- 한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²⁶³⁾에 따라 별도 안건으로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16년 7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²⁶⁴⁾를 제정하여 '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별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 분기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²⁶⁵⁾
-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예비비 200억원에 대해 25건, 160억 7,2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152억 7,700만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표 7-2〉 최근 3년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회 계 연 도	예 산 액 (A)	사 용 결 정		지 출 액 (C)	다 음 연 도 이 월 액 (D)	집 행 잔 액 (B - C - D)
		건 수	금 액 (B)			
2 0 2 3	20,000	25	16,072	15,277	260	534
2 0 2 2	40,000	35	16,557	14,981	1,359	216
2 0 2 1	11,220	19	5,657	2,850	2,576	229

263)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4)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교육감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5)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2990('23. 4. 4), “2023년 1/4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및 전용 내역 보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6014('23. 7. 7), “2023년 2/4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및 전용 내역 보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9142('23.10.16), “2023년 3/4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전용 및 아예 내역 보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743('24. 1.25), “2023년 4/4분기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및 전용 내역 보고”

○ **일반예비비**는 '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결정액(160억 7,200만원)중 17건, 130억 5,300만원(81.2%)인 것으로 제출된 바,

- 민사소송(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2차)을 포함한 **교육사업비** 7건은 일반예비비중 102억 2,1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99억 4,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 아울러 서이초 모듈러 및 연결통로 차양설치를 포함한 10건의 **시설사업비**에 대해 일반예비비 28억 3,2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26억 8,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표 7-3〉 일반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 용 결 정		지 출 액	사고이월액	집 행 잔 액
			건 수	금 액			
		일 반 예 비 비	17	13,053	12,622	-	431
		교 육 사 업 비	7	10,221	9,942	-	278
		시 설 사 업 비	10	2,832	2,680	-	152

〈표 7-4〉 일반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소관부서	사 업 명	사 용 결 정 액 (A)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D=A- B - C)
합 계 (17 건)			13,053	12,622	-	431
교 육 사 업 비 (7 건)			10,221	9,942	-	278
	교육재정과	민사소송(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패 소 에 따 른 손 해 배 상 (2 차)	8,978	8,702	-	275
	교육재정과	민사소송(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패 소 에 따 른 손 해 배 상	758	755	-	3
	교육재정과	학교 용 지 공 급 계 약 관 련 민 사 소 송	406	405	-	-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기동보수반 퇴 직 금 및 지 연 손 해 금 지 급	50	50	-	-
	강 남 서 초 교육지원청	신 구 초 복 합 시 설 행 정 소 송 에 따 른 변 호 사 착 수 금 지 원	12	12	-	-
	동 작 관 악 교육지원청	직위해제 처분 취소에 따른 자연손해금 지급	12	12	-	-
	초등교육과	장계(정작3월) 처분 취소에 따른 자연손해금 지급	2	2	-	-
시 설 사 업 비 (10 건)			2,832	2,680	-	152
	강 남 서 초 교육지원청	서이초 모듈러 및 연결통로 차양 설치	969	948	-	20
	동 작 관 악 교육지원청	서울공고 수변전설비 용량증설공사	466	420	-	45
	성 북 강 북 교육지원청	길 음 중 본 관 동 노 후 냉 난 방 개 선	360	340	-	19
	북 부 교육지원청	공연초 병설유 신설공사비 부족분 지원	243	243	-	-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학생교육원 4영지 화장실동 석축 보수공사	200	191	-	8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양천도서관 파라펫 및 치장벽돌 개선공사	177	177	-	-
	서 부 교육지원청	서울용강초 수배전반 용량증설공사	172	138	-	33
	성 동 광 진 교육지원청	서 울 경 동 유 치 원 옥 상 방 수	100	77	-	22
	강 남 서 초 교육지원청	언 북 초 교 통 안 전 확 보 를 위 한 환경개선 공사(정문및후문개선공사)	98	96	-	1
	성 동 광 진 교육지원청	용 곡 중 앞 일 반 재 산 슬 라 브 철 거 및 옹 벽 설 치 공 사	46	45	-	1

-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8건, 30억 1,800만원(18.7%)을 사용결정하여 26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7-5〉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사 용 결 정		지 출 액	사고이월액	집 행 잔 액
		건	수 금 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	3,018	2,655	260	102
	교육사업비	1	125	125	-	-
	시설사업비	7	2,893	2,529	260	102

- **교육사업비**의 경우,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귀가지연교**에 대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중 1억 2,5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전액 지출하고, **시설사업비**의 경우에는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 등 7건에 대해 28억 9,3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25억 2,9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함
- 다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중 사용결정된 (방일초)집중호우 대비 안전 위해 **요소 개선공사**의 경우, 사용결정된 재해·재난목적예비비(4억 9,000만원) 중 53.1%, 2억 6000만원을 이월시킨 것으로 확인됨

〈표 7-6〉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 서	사 업 명	사 용 결정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집행잔액 (D=A- B - C)
합 계 (8 건)			3,018	2,655	260	102
교 육 사 업 비 (1 건)			125	125	-	-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제 주 도 소 규 모 테 마 형 교 육 여 행 귀 가 지 연 교 추 가 경 비 지 원	125	125	-	-
시 설 사 업 비 (7 건)			2,893	2,529	260	102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	1,294	1,294	-	-
	성 동 광 진 교 육 지 원 청	광 남 고 교 사 동 화 재 복 구	608	552	-	55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방일초 집중호우 대비 안전 위해요소 개선공사	490	229	260	-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영란여중 교사동 옥상방수 공사	172	172	-	-
	서 교 육 지 원 청	연 천 중 체 육 관 외 벽 개 선	153	116	-	37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서초중 본관 및 신관 베란다 방수공사	125	118	-	6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안남초 교사동 외벽방수 및 누수 피해복구	49	46	-	3

2.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검토

(1)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위반 사안

- 서울시교육청은 예비비 200억원중 160억 7,20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152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²⁶⁶⁾에 따라 서울 특별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것임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승인요청한 '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비 지출결과에 대한 승인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서울시교육청의 '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과, 일반예비비는 예산액 100억원보다 30.5% 초과한 130억 5,3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126억 2,200만원을 지출한 바,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①일반예비비와 ②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편성하되 ①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²⁶⁷⁾에 근거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하여 '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총액(12조 8,915억 2,100만원)의 0.08%, 100억원을 편성한 것임
 - 특히, 「지방회계법」 제29조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하도록 정하고 있어 ①일반예비비

266)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7)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산액은 우리 시의회가 의결한 100억원임에도 ①일반예비비 지출결과
배정된 예산액 100억원보다 30.5% 초과한 130억 5,300만원을 사용결정
한 것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결정으로 「지방회계법」 제29조²⁶⁸⁾를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편성기준」 중 “세출
예산 성질별 분류”는 ①일반예비비와 ②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 원가통계목을
상호구분하고 있는 바,²⁶⁹⁾

- ①일반예비비와 ②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이른바 ‘재원간 칸막이’로 구분하고
있어 원가통계목간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없이 당초 편성된 ①일반예비비
예산액 100억원을 모두 지출한 이후부터는 개별 예비비 사용요구건에 대해
②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부터 예산의 변경사용을 통해 ①일반예비비 재원을
추가 확보한 이후 개별 예비비 건에 대해 사용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①일반예비비 편성액을 초과하여 사용결정은 물론
지출까지 마친 이후 회계연도종료에 임박한 '23년 12월 21일 마치 ‘장부
정리’ 하듯이 ②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부터 35억원을 ①일반예비비로 변경
함으로써²⁷⁰⁾ 회계상 초과지출이 없는 것으로 정리한 것은 관련 법령은 물론
회계질서를 경시한 결과로 판단됨

268)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9) 교육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기준」, p.80

목그룹	목	세목	원가통계목명	설정
700	예비비및기타			
	710	예비비및기타		
		71001 예비비	일반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예비비(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 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예비비 (예비비 편성한도는 없음)

270)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1312('23.12.21),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변경사용(예비비)”

〈표 7-7〉 예비비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기 지 출 액	(변경전) 예 산 잔 액	변 경 요 구 액		(변경후) 예 산 잔 액
				감	증	
합 계	20,000	16,072	3,927	3,500	3,500	3,927
일 반 예 비 비	10,000	13,053	△3,053		3,500	446
재 해 · 재 난 목 적 예 비 비	10,000	3,018	6,981	△3,500		3,481

- 따라서 배정된 ①일반예비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승인하고, 회계연도말 원가통계목간 재원이동을 위해 ②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부터 35억원을 변경한 것은 회계질서 문란 사례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50조²⁷¹⁾에 따른 시정요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2) 사고이월로 인한 예비비의 이월사례 지양

- '2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결정액(160억 7,200만원)중 사고이월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1건, 2억 6,000만원이 발생된 바,

〈표 7-8〉 예비비 사고이월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사 업 명	사 용 결 정		지 출 액	사고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사용결정일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방일초 집중호우 대비 안 전 위 해 요 소 개 선 공 사	490	'23. 8. 1	229	260	-

271)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① (전문생략)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방일초 집중호우 대비 안전 위해요소 개선공사**는 '23년 8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억 9,000만원이 사용결정된 것이나, 2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6,0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제출됨

- 동 사업 예비비 지출사례는 ①'23년 8월부터 9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②'23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③'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 용역을 계측관리할 예정으로 공사 및 용역비 일부(2억 6,000만원)를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사안이나 사용결정된 예비비중 53.1%가 이월된 것으로
-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²⁷²⁾은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예비비 지출과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은 지양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 예비비 지출 사례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제약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 가능한 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예비비 운용 취지에 부적합한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150조²⁷³⁾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72) 행정안전부 훈령 제248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417

■ 예비비의 지출제한

- 내재적 제약

- ① 연도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 ②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됨

273)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 ① (전문생략)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학교회계 전출을 통한 이월액 발생규모 착시 사례 지양

- 예비비 사용결정 내역 중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배정된 사업은 4건, 16억 500만원이나, 학교에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1건, 12억 9,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됨

〈표 7-9〉 예비비 중 학교회계전출금 배정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사 업 부 서	사 업 명	사 용 결 정		
		금 액	사용결정일	집 행 잔 액
합 계		1,605	-	1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제주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귀가지연교 추가 경비 지원	125	'23. 5.19	1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영란여중 교사동 옥상방수 공사	172	'23. 8. 2	0
교 육 시 설 관 리 본 부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	1,294	'23.12. 1	0
강 남 서 초 교 육 지 원 청	신구초 복합시설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착수금 지원	12	'23.12.19	0

-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 사업**은 '23년 9월, 영상고 기숙사 화재로 인하여 '23년 12월 6일, 예비비 사용결정 후, 12억 9,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표 7-10〉 예비비 사고이월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서	사업명	사용결정			실제 학교회계 사용현황	
		금액	사용결정일	집행잔액	이월액	공사예정기간
교육시설 관리본부	영상고 기숙사 화재 피해 복구	1,294	'23.12. 1	0	1,294	'24. 5.~7.

- 사용결정 된 예비비 전액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배정되어 배정액 전액이 이월되었고 '24년 5월 현재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24년 1월부터 4월까지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4년 5월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24년 5월부터 7월까지 공사예정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용결정된 예비비 전액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전액 이월 되었음에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배정되어 교육청 예비비 사용명세서 상으로는 이월이 발생되지 않은 것처럼 착시현상을 유발한 사례로 사료됨
- 동 예비비 지출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한 학교회계 전출의 경우에는 설계용역 등 최소한의 예비비를 지출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에 소요 재원을 편성하는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요건 충족 검토 철저

- 예비비 사용결정 내역 중 5,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은 2건, 3억 3,000만원으로 확인된 바,

〈표 7-11〉 집행잔액 발생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용 결 정		지 출 액	사 이 월 고액	집 행 잔 액
		금 액	사용결정일			
합 계		9,586	-	9,254	-	330
교육재정과	민 사 소 송 (가 칭 노 이 초 부 지 환 매 권 관 련) 패 소 에 따 른 손 해 배 상 (2 차)	8,978	‘23. 5.11	8,702	-	275
성 동 광 진 교육지원청	광 남 고 교 사 동 구 화 재 복 구	608	‘23. 7.14	552	-	55

※ 집행잔액 5,000만원 이상 사업내역에 한함

- **민사소송(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 관련)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2차)**은 가칭 노이초 부지 환매권과 관련된 민사소송 건으로 1건은 패소²⁷⁴⁾하였고 잔여사건(5건)도 모두 화해권고결정²⁷⁵⁾되어 조기종결된 바,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89억 7,8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87억 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예방하고 손해배상액의 법정 이율(12%)의 지연이자 발생에 따른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판결선고 직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²⁷⁶⁾함에 따라 당초 사용결정액(89억 7,800만원)중 87억 200만원이 지출되고 2억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광남고 교사동 화재복구**는 광남고 교사동에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발생으로 교실 4개가 사용불가하여 '23년 7월, 예비비 6억 80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5억 5,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바,

- '23년 7월,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2,000만원)이 발생하였고, '23년 8월까지 건축 및 전기공사를 실시한 후 준공정산금(3,500만원)이 발생하여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예비비를 지출하는 경우라 하여도 예비비 예산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고, 예비비에서 사용결정된 예산중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어 다른 긴급한 사업의 지출 요구를 무산시킬 수 있으므로 예비비의 신청과 사용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63429 손해배상(판결선고일 '23. 4.12)

2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43172 손해배상(판결선고일 '23. 4. 6) 외 4건

276)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변제 내역

(단위 : 백만원)

지급 대상자	판결선고일	변제 일자	변제 금액		
			원금	이자	계
정** 외 14명	'23. 4. 6	'23. 5.15	2,730	827	3,557
이** 외 8명	'23. 5. 1	'23. 5.24	1,638	513	2,151
황** 외 4명	'23. 7.13	'23. 8. 8	640	208	848
한** 외 8명	'23. 6.13	'23. 7.10	1,084	345	1,429
이** 외 1명	'23. 4.12	'23. 5.15	358	122	480
김**	'23. 5.23	'23. 6.21	178	56	235
계	-	-	6,629	2,072	8,702

VIII. 기금 결산 관련 검토

1. 기금 조성 총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²⁷⁷⁾은 기금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금번 정례회 중 '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표 8-1〉 기금별 설치근거 및 기금운용개시 현황

기금명	설치근거	기금운용개시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2016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 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2021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07

27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출된 '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검토하면 6개의 기금이 조성·운용되고 있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경우, '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401억 6,000만원으로 '22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1,151억 6,900만원) 보다 21.7%, 249억 9,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3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²⁷⁸⁾이 의결되어 기금 운용을 폐지하고 '22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28억 3,300만원)과 '23회계연도 이자수입(3,100만원) 전액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함에 따라 '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0원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경우, '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조 161억 500만원으로 '22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1조 2,095억 500만원) 보다 △16.0%, △1,934억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경우, '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4억 2,000만원으로 '22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4억 1,800만원) 보다 05%, 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전화기금**의 경우, '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6,656억 6,300만원으로 '22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4,651억) 보다 43.1%, 2,005억 6,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²⁷⁹⁾으로서, '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35억 3,200만원으로 '22회계연도말 기금조성액(73억 1,100만원) 보다 △51.7%, △37억 7,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하였음

278) ■ 의안번호 : 434

■ 의안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결일 : '23. 3.10

■ 의안이송후 공포 : '23. 4. 3

27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영)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 '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용하는 5개 기금과 함께 단일 의안으로 제출되어 지난 '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²⁸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는 기금명²⁸¹⁾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임에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으로 결산서에 오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제출하는 의안과 첨부자료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²⁸²⁾은 ①**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②**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③**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④**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⑤**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⑥**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포함한 기금운용결과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것이나,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경우, 교육부의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²⁸³⁾에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기금결산서(①기금결산 총괄 현황, ②기금수입 결산 현황, ③기금지출 결산 현황, ④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중 단지 ①기금결산 총괄 현황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기금법」 제8조²⁸⁴⁾에 근거한 교육부의 기준을

28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23. 6.28), p.6

28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82)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1948, 제출일 : '24. 5.27)

283) 교육부, 「2023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작성 통합기준」('23.12.), p.10 Ⅲ. 기금결산 1.~4.

28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²⁸⁵⁾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금의 결산은 「지방기금법」 제13조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²⁸⁶⁾에 따라 ①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②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③결산검사 이후 ④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가 '23 회계연도에 대한 기금결산서를 심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²⁸⁷⁾
- 이는 '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심사 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지적하였던 사항으로,²⁸⁸⁾ '23년 4월, 기금조례가 폐지²⁸⁹⁾되어 기금결산을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통한 기금결산 심의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0조²⁹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285)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전문생략)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8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22), p.345

287)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95('24. 4.18)

28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23. 6.28), p.14

289) ■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383, '22.12.16, 수정가결-운용계획 삭제)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434, '23. 3.10,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5886('23. 4. 3), “2023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업무계획(안)”

290)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전문생략)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8-2〉 2023회계연도말 기금 조성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1,800,336	25,544	282,702	257,158	1,825,880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115,169	24,991	31,818	6,827	140,160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2,833	△2,833	31	2,864	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209,505	△193,399	41,800	235,199	1,016,104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18	2	2	0	420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465,100	200,563	200,563	0	665,66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7,311	△3,779	8,488	12,267	3,532

2.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검토

(1)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①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3회계연도 당초 수입계획액은 1,274억 6,700만원이나, 37억 5,700만원 증가한 1,312억 2,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여²⁹¹⁾ 1,469억 8,800만원(전년도 이월액 177억 1,800만원 포함)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제출함

〈표 8-3〉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감액 (C=B-A)				
합 계	127,467	131,224	3,757	17,718	148,942	146,988	△1,954
전 입 금	32,939	32,939	-	-	32,939	31,128	△1,811
전 년 도 이 월 금	-	-	-	17,718	17,718	17,718	-
예 치 금 회 수	93,694	97,451	3,757	-	97,451	97,451	-
이 자 수 입	834	834	-	-	834	691	△143

○ 전입금은 당초 329억 3,9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수입계획액보다 △18억 1,100만원 감소한 311억 2,800만원이 실수납된 바,

- '23회계연도 이자수입으로 전입금 감소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291)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1185('23.10.13),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전출금중 18억 1,100만원을 전출하지 않은 것으로²⁹²⁾ 미전출금분 만큼 전입금이 부족 수납된 것으로 사료됨

- **이자수입**은 당초 수입계획한 8억 3,400만원 보다 △1억 4,300만원 감소한 6억 9,100만원이 실수납된 것으로 예치기간이 만료된 정기예금을 미해지하여 해당 정기예금의 만기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예치금회수**는 지난해회계연도말 예치금을 당해연도에 수납하는 과목으로 당초 936억 9,4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22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37억 5,700만원을 증액한 974억 5,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수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전년도이월금**의 경우, '22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신청사건립 177억 1,800만원을 '23회계연도 수입계획현액에 포함한 것으로 실제수납액도 177억 1,800만원으로 제출되었음

②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23회계연도 당초 지출계획액은 1,274억 6,700만원이었으나, 37억 5,700만원 증가한 1,312억 2,4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지출계획현액 1,489억 4,200만원(전년도 이월액 177억 1,800만원 포함)중 1,402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66억 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으로 제출함

29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95('24. 4.18)

〈표 8-4〉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지출계획 현 액	지 출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주1)}
	당 초	수 정					
		(A)	(B)	(C=A+B)	(D)	(E)	(F=C-D-E)
합 계	127,467	131,224	17,718	148,942	140,291	6,697	1,954
신청사건립	37,756	37,756	17,718	55,474	6,828	6,697	41,949
설 계 비	14	14	-	14	-	-	14
시 설 비	36,126	36,126	17,718	53,844	6,800	5,817	41,227
감 리 비	1,471	1,471	-	1,471	-	880	591
시설부대비	145	145	-	145	28	-	117
예 치 금	89,711	93,468	-	93,468	133,463	-	△39,995 ^{주2)}

※ 주1) 기금은 세부사업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을 여유재원으로 예치함에 따라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을 표기하지 않으나, 해당 표의 집행잔액은 세부사업의 지출상황을 산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임

주2) 세부사업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의 합계이나, 여유재원으로 초과지출되어 △으로 표시됨

○ **신청사 건립사업**의 지출계획현액은 554억 7,400만원(전년도 이월금 177억 1,800만원 포함)이나, 오염토 발생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어 지출계획현액 중 12.3%, 68억 2,800만원은 지출하고, 지출계획현액의 12.1%, 66억 9,700만원은 이월한 것으로 제출된 바,

- 공사중 장애발생으로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금의 지출계획은 유지함에 따라 지출계획현액 554억 7,400만원의 75.6%, 419억 4,900만원이 미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실제 지출가능성을 고려하여 목적사업비에 편성하고, 여유재원은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기금의 경우 사업비에서 발생된 미집행액은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해당 기금의 사업비로 다시 활용된다는 점에서 미집행액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에 지출계획한 사업이 사업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기금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연수원 건립사업**은 사업지연으로 '22년 12월, '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심사 시 지출계획하였던 설계비 5,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으며²⁹³⁾ 이후 연수원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 대천임해교육원 시설을 개선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 '24년 2월,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²⁹⁴⁾ 조례명과 기금명을 변경하고,²⁹⁵⁾ 연수원 건립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됨

○ **예치금**은 당초 897억 1,100만원으로 지출계획하고,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여유재원을 추가 예치하여 934억 6,8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나, 결산결과 고유목적사업인 신청사 건립에서 발생된 집행잔액 399억 9,500만원을 예치하여 당초 지출계획보다 48.8%, 437억 5,200만원 증가한 1,334억 6,300만원을 예치한 것으로 제출됨

293)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379, '22.12.16 수정가결)

■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조성 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원안	수정안	증감액
지출	비용자성사업비	37,806	37,756	△50

29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658, '24. 2.29 가결)

295)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9107호, '24. 3.20, 일부개정)

(2)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①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 1조 2,659억 1,3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1,517억 1,700만원 감액한 1조 1,141억 9,6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²⁹⁶⁾ 전년도 이월액 1,371억 900만원을 포함하여 1조 2,513억 500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표 8-5〉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 감액 (C=B-A)				
합 계	1,265,913	1,114,196	△151,717	137,109	1,251,305	1,251,305	-
전 입 금	231,500	-	△231,500	-	-	-	-
전년도이월금	-	-	-	137,109	137,109	137,109	-
예 치 금 회 수	1,007,414	1,072,396	64,982	-	1,072,396	1,072,396	-
이 자 수 입	26,999	39,824	12,825	-	39,824	39,824	-
기 타 수 입	-	1,976	1,976	-	1,976	1,976	-

○ 전입금은 당초 2,315억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나, 「'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²⁹⁷⁾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전출금 2,315억원 전액이 전출되지 않아 전입금 수입계획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실제수납액도 0원으로 제출됨

296) 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5315('23. 4.19),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
 ②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3362('23.11.27),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
 ③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17153('23.12.29),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
 297)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8604('23. 9.2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안)”
 -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예정 통보('23. 9.21)에 따라 기금전출금 등의 미집행을 통해 세출예산 절감 추진

- **전년도이월금**의 경우, '22회계연도에서 이월된 1,371억 900만원을 '23회계연도 수입계획현액에 포함한 것으로 실제수납액도 1,371억 900만원으로 제출됨
- **예치금회수**는 지난해회계연도말 예치금을 당해연도에 수납하는 과목으로 당초 1조 74억 1,4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649억 8,200만원을 증액한 1조 723억 9,6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여 수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이자수입**의 경우, 당초 269억 9,9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과 연도말 이자수입 발생 등을 반영하여 128억 2,500만원 증가된 398억 2,400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 **기타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으로 당초 수입계획은 없었으나, '22~23년 동 기금으로 추진된 안전관리(석면개선) 및 냉난방개선사업비중 사립학교 전출금의 집행잔액이 '23회계연도에 반납되어 19억 7,600만원이 수납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②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당초 1조 2,659억 1,2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1,517억 1,700만원 감소한 1조 1,141억 9,5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지출계획현액 1조 2,513억 400만원(전년도 이월액 1,371억 900만원 포함) 전액을 지출한 것으로 제출됨

〈표 8-6〉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지출계획 현 액	지 출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주1)}
	당 초	수 정					
		(A)	(B)	(C=A+B)	(D)	(E)	(F=C-D-E)
합 계	1,265,912	1,114,195	137,109	1,251,304	1,251,304	-	-
안 전 관 리 (석 면 개 선) 및 냉난방개선	-	-	137,109	137,109	130,527	-	6,582
건 설 비	-	-	137,109	137,109	130,527	-	6,582
위 원 회 운 영	2	2	-	2	1	-	1
운 영 비	2	2	-	2	1	-	1
만 투 자 사 업 상 환	106,118	106,118	-	106,118	104,672	-	1,446
상 환 지 출 원 금	62,674	62,974	-	62,974	62,321	-	653
상 환 지 출 이 자	12,653	13,353	-	13,353	13,281	-	72
운 영 비	30,791	29,791	-	29,791	29,070	-	721
예 치 금	1,159,792	1,008,075	-	1,008,075	1,016,104	-	△8,029 ^{주2)}

※ 주1) 기금은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여유재원으로 예치함에 따라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잔액을 표기하지 않으나, 해당 표의 집행잔액은 세부사업의 지출상황을 산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임

주2)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의 합계이나, 여유재원으로 초과지출되어 △으로 표시됨

○ **안전관리(석면개선) 및 냉난방개선**은 전년도 이월금 1,371억 900만원중 95.2%, 1,305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정산에 따른 잔액 발생을 사유로 65억 8,200만원을 미집행하였음

○ **예치금**은 당초 1조 1,597억 9,2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1,517억 1,700만원 감소한 1조 80억 7,5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한 바,

- 결산결과 고유목적사업인 안전관리(석면개선) 및 냉난방개선, 위원회 운영 등의 집행잔액 80억 2,900만원을 예치금으로 합산하여 예치금을 지출계획(1조 80억 7,500만원) 보다 0.8%, 80억 2,900만원 증가한 1조 161억 400만원 예치한 것으로 확인됨

(3)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① 기금의 존속 및 폐지 관련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98)에 따라 지난 2022년도에 설치되었으나,

○ 동 조례는 지난 '23년 7월, 폐지조례안이 가결되고 '23년 9월, 조례가 폐지 공포되었으나, '23년 10월, 교육청의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하여 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가 결정된 상태임 299)

- 동 기금은 지난 '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운용계획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23년도에는 추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②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4억 2,000만원을 수입계획하여 예치금회수 4억 1,800만원과 이자수입 200만원 전액을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표 8-7〉 생태전환교육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 년 도 이 월 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 감액 (C=B-A)				
합 계	420	420	-	-	420	420	-
예 치 금 회 수	418	418	-	-	418	418	-
이 자 수 입	2	2	-	-	2	2	-

※ 동 기금은 '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운용계획이 삭제된 바, 표의 수입결산 현황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

298)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386호, '22. 4.21 일부개정)

299)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공포 '23. 9.27, 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 2023쿠10 '23.10.17)

③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지출계획액은 예치금 4억 2,0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 전액 예치한 것으로 제출됨

〈표 8-8〉 생태전환교육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계획액		전 년 도 이 월 액 (B)	지출계획 현 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당 초	수 정 (A)					
예 치 금	420	420	-	420	420	-	-

※ 동 기금은 '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운용계획이 삭제된 바, 표의 지출결산 현황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

(4)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①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23회계연도 당초 수입계획액은 1조 4,635억 8,600만원이나, △7,979억 2,300만원이 감소한 6,656억 6,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³⁰⁰⁾ 수입계획 현액 전액을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표 8-9〉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 감액 (C=B-A)				
합 계	1,463,586	665,663	△797,923	-	665,663	665,663	-
전 입 금	970,000	200,000	△770,000	-	200,000	200,000	-
예 치 금 회 수	464,819	465,100	281	-	465,100	465,100	-
이 자 수 입	28,767	563	△28,204	-	563	563	-

○ 전입금은 당초 9,700억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나, 「'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³⁰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을 2,000억원만 전출하는 것으로 전입금 수입계획을 변경하여 △7,700억원이 감액된 2,000억원을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300)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4612('23. 5.18),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②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의안번호 1462, '23.12.15 가결)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11462('23.12.26),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3차 변경안"

301)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8604('23. 9.26),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절감 추진 계획(안)"
 - 교육부 보통교부금 감액 예정 통보('23. 9.21)에 따라 기금전출금 등의 미집행을 통해 세출예산 절감 추진

○ **예치금회수**는 지출항목인 예치금을 당해연도 수입계획으로 연동시키는 수입항목으로 당초 4,648억 1,9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22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2억 8,100만원 증가한 4,651억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여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 **이자수입**의 경우, 당초 287억 6,7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전입금 감액으로 인한 예치금 축소, 금리변동 등에 따라 △282억 400만원 감소한 5억 6,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여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② 지출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1조 4,635억 8,6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교특회계전입금 및 이자수입 감소분 △7,979억 2,300만원을 반영하여 6,656억 6,3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예치한 것으로 제출됨

〈표 8-10〉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당초	수정 (A)					
		(A)	(B)	(C=A+B)	(D)	(E)	(F=C-D-E)
예치금	1,463,586	665,663	-	665,663	665,663	-	-

(5)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① 수입 결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은 147억 200만원을 수입계획 하였으나, 11억 2,500만원 증가한 158억 2,6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여³⁰²⁾ 157억 9,900만원을 실제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표 8-11〉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운 용 계 획			전년도 이월액 (D)	수입계획 현 액 (E=B+D)	수 납 액 (F)	증 감 액 (F-E)
		당 초 (A)	수 정 (B)	증 감액 (C=B-A)				
합 계		14,702	15,826	1,125	-	15,826	15,799	△28
전 입 금		-	-	-	-	-	-	-
예 치 금 회 수		6,503	7,312	809	-	7,312	7,312	-
이 자 수 입		170	283	113	-	283	243	△40
기 타 수 입	소 계	8,029	8,232	203	-	8,232	8,244	12
	공제료수입	7,339	7,561	222	-	7,561	7,561	-
	소 방 수 익	500	500	-	-	500	500	-
	학 교 폭 력 구상금회수	102	111	9	-	111	123	12
	교 육 활 동 참여자공제료	70	16	△54	-	16	16	-
	법 인 세 환 급 금	18	44	26	-	44	44	-

302) ①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기획조정팀-459('23.10. 6), “기금운용심의회 안건 제출”(1차 변경)
②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기획조정팀-459('23.11.30), “기금운용심의회 안건 제출”(2차 변경)

○ **예치금회수**³⁰³⁾는 당초 65억 3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8억 900만원 증가한 73억 1,2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변경 계획한 금액을 전액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 **이자수입**은 당초 1억 7,000만원으로 수입계획 하였으나, 1억 1,300만원 증가한 2억 8,3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한 바, △4,000만원이 감소된 2억 4,300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표 8-12〉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이자수입 현황 (2023~2021)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금 (㉠+㉡)			㉠ 정기예금 (저축보험 포함)		㉡ 기타예금	
	일평균 잔액(가)	총예금이자 ^{주1)} (나=A+B)	수익률 (나/가)	일평균 잔액	정기예금 이자(A)	일평균 잔액	기타예금 이자(B)
2023	6,660	192 (100.0)	2.9	1,450	11 (5.6)	5,210	181 (94.4)
2022	6,335	90 (100.0)	1.4	4,353	65 (72.0)	1,982	25 (28.0)
2021	8,179	49 (100.0)	0.6	6,775	20 (41.3)	1,404	28 (58.7)

※ 주1) 기금운용명세서 이자수입중 국세환급금 및 구상금 이자수입 제외

주2) 구성비()는 전체 예금이자중 예금종류별 이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 **기타수입**중 공제로 수입은 동 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 최종 수입계획액인 75억 6,100만원을 실제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³⁰⁴⁾에 따라 서울특별시학교안

303) 기금운용 상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여유자금을 회수한 수입

30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공제로)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로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로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공제회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금액 산정기준에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23년도 공제료 단가를 산정하는 바,

〈표 8-13〉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학생1인당 공제료)

(단위 : 원)

회계연도	유	초	중	고	평균
2023	3,200 (3,100)	5,350 (4,800)	10,300 (9,800)	14,440 (14,000)	8,323 (7,925)
2022	2,940 (2,800)	4,510 (4,300)	9,550 (9,110)	12,700 (12,100)	7,425 (7,078)
2021	2,530 (2,300)	4,400 (4,000)	9,350 (8,500)	11,550 (10,500)	6,958 (6,325)

※ ()는 교육부고시 기준 공제료

- 공제가입 결산인원(870,773명)은 계획인원(875,753명) 보다 △3,980명 감소되었고, 공제료수입은 학교급별 수입액 증감을 반영하여³⁰⁵⁾ 75억 6,100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305) 공제료수입 계획 대비 결산 변동 세부사항

(단위 : 명, 천원)

구분	2023계획(A)		2023결산(B)		증감(B-A)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소 계	19,320	179,822	15,340	179,804	△3,980	△18
특수학교	4,558	45,717	4,558	44,274	-	△1,443
기타학교	14,762	134,105	10,782	135,530	△3,980	1,425

※ 특수학교와 기타학교의 경우 공제료 수입 예산을 학교급별(유초중고) 1인당 공제료의 평균값('23년의 경우 8,323원)으로 책정하여, 결산상 1인당 공제료수입이 높은 상위학교급(중고) 학생수 비중이 당초 계획보다 높아지면 가입인원수가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제료 수입은 많아질 수 있으며(상기 표의 기타학교), 하위학교급(유초) 학생수 비중이 높아지면 가입인원수가 동일하거나 많아진다 하더라도 수입이 적어질 수 있음(상기 표의 특수학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3481('24. 5.16)

〈표 8-14〉 공제료수입 계획 대비 결산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 0 2 3 계 획 (A)		2 0 2 3 결 산 (B)		증 감 (B - A)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가입인원수	공제료수입 ^{주1)}
875,753	7,561	871,773	7,561	△3,980	0

※ 주1) 실제 공제료 수입 감소액은 △18,000원이나 검토보고는 백만원 이하를 절사함

- 그 외 기타수입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06)에 따른 소방안전점검대행사업 수익금(5억원)과 학교폭력 구상금 회수(1억 2,300만원),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1,600만원)로서 최종 수입계획액(6억 2,700만원) 보다 1,200만원 증가한 6억 3,900만원을 수납한 것으로 제출됨

② 지출 결산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의 '23회계연도 지출액은 157억 9,900만원으로 지출계획현액(158억 2,600만원) 보다 △2,7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된 바,

- 정책사업인 학교안전망구축은 지출계획현액(107억 7,100만원) 보다 △1억 6,100만원 감소한 106억 1,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 세부사업인 학교폭력피해지원, 예방사업,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에서 집행잔액(1억 4,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며,

306)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 세부사업인 **공제사업**은 지출계획현액(107억 7,100만원) 보다 △1억 6,100만원 감소한 106억 1,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검토됨
- 공제사업중 공제급여지급 항목은 지출계획현액(98억 1,900만원) 보다 △200만원 감소한 98억 1,7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직전회계연도(65억 9,800만원) 보다 32억 1,900만원(48.8%)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코로나 이전으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 전수 또한 증가하여 공제급여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표 8-15〉 공제급여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 0 2 3 (A)		2 0 2 2 (B)		증 감 (A - B)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0,006	9,817	13,106	6,598	6,900	3,219
공 제 급 여 지 급	요양급여	19,969	6,504	13,065	4,484	6,904	2,020
	장해급여	36	2,719	39	2,034	△3	685
	유족급여	1	594	-	-	1	594
	기 타 ^{주 1)}	-	-	2	80	△2	△80

※ 주1) 위로금, 보전비용 등

- 다만, 지난 '22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결산보고 절차를 미준수한 것에 대해 지적한 사실이 있음³⁰⁷⁾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³⁰⁸⁾은 기금결산의 승인절차를 ①기금결산서 작성, ②기금운용심의회 심의, ③결산검사위원 검사, ④지방의회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307) ①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23. 6.28), p.119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23. 6.28), p.17~18

308)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9호, '22. 7.22), p.345

- 동 기금은 '23회계연도 결산검사('24. 4.15~5.19)가 진행중인 '24년 4월 15일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심의위원회가 동 기금결산을 심의³⁰⁹⁾한 것이 확인되는 바, 동 사례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예규로 정한 사안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0조³¹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09)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2188('24. 3.25)

310)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전문생략)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8-16〉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 연 이월액	집 행 잔 액
			당 초	수 정					
				(A)	(B)	(C=A+B)	(D)	(E)	(F=C-D-E)
합 계			14,702	15,826	0	15,826	15,799	-	27
학 교 안 전 공 제 기 금	소 계		9,019	10,771	0	10,771	10,610	-	161
	공 제 사업비	소 계	8,340	10,189	0	10,189	10,172	-	17
		공 제 급 여 지 급 (사 고 보 상 비)	7,859	9,819	0	9,819	9,817	-	2
		전 문 가 위 탁	40	25	0	25	20	-	5
		보 상 심 사 위 원 회	17	17	0	17	10	-	7
		소 송 업 무	215	215	0	215	212	-	3
		손 해 방 지 및 긴 급 조 치 비 용 지 원	26	0	0	0	0	-	0
		학 교 안 전 사 고 보 상 시 스템 의 운 영 개 선 및 안 정 화	123	53	0	53	53	-	0
		중 앙 회 분 담 금	60	60	0	60	60	-	0
	예 방 사 업 비	386	172	0	172	116	-	56	
	학 교 안 전 사 고 피 해 자 상 담 지 원	27	27	0	27	11	-	16	
	학 교 폭 력 피 해 지 원	266	383	0	383	311	-	72	
	기관운영비	소 계	273	219	0	219	207	-	12
업무추진비		24	24	0	24	23	-	1	
운영비		249	195	0	195	184	-	11	
근로자인건비	소 계	1,272	1,525	0	1,525	1,450	-	75	
	급 여	950	1,257	0	1,257	1,190	-	67	
	수 당	221	187	0	187	179	-	8	
	4대보험	101	81	0	81	81	-	1	
예치금			4,138	3,311	0	3,311	3,532	-	△221

3.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검토

□ 「지방기금법」³¹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총 6개 기금중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됨³¹²⁾

〈표 8-17〉 기금 운용계획변경 현황(의회의결)

의 결 일	기 금 명	지 출 계 획 변 경 사 유	의 결 과
제 3 2 1 회 임 시 회 (’23.12.15.)	통 합 교 육 재 정 안 정 화 기 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른 - 예치금 △9,451억원 (재무활동 58.7%) 감액	원안 가결

※ 주1) 괄호()의 비율은 해당 정책사업의 당초 지출계획액 대비 변경계획액의 비율임

○ 「지방기금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 의결이 불요하나,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음³¹³⁾

3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12) 2023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의안번호 1462, ’23.12.15 가결)

31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7), p.8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①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② 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5조)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결 불요
 -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

- '23회계연도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운용하는 4개 기금이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³¹⁴⁾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경우, 지출계획의 신청사 건립에서 공사추진중 장애 등을 사유로 발생한 사실상의 집행잔액(399억 9,500만원) 등을 예치금으로 합산함에 따라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예치금)이 당초 지출계획액(897억 1,100만원)보다 48.8%, 437억 5,200만원 초과 예치되었음에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³¹⁵⁾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³¹⁶⁾은 고유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예치금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사업 지출계획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기금법」³¹⁷⁾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는 법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기금의 경우,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31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95('24. 4.18)

315)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95('24. 4.18)

316)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24. 1.), p.187

2. 지출결산중 ※ 3. 이전까지의 결산시에는 “지출액”에 맞추어 사후에 “지출계획현액”을 수정하는 자치단체가 많았으나, 향후에는 계획과 집행간의 차이를 그대로 인정하도록 함 → 즉, “지출액”과 “지출계획현액”이 거의 전부 다를 것이며, 고유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예치금’으로 합산되도록 함

3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22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23년 10월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³¹⁸⁾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23년 5월, 결산심사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것임에도, 회계연도 종료가 2개월 정도 남은 '23년 10월에서야 '23년 기금운용계획을 최초로 변경한 것은 기금 수·지균형의 원칙을 기금운용부서가 선도적으로 저해한 결과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외에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의 경우, 수입계획 중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이미 '23년 4월, 일부 미수납될 것을 인지하였음에도³¹⁹⁾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을 일체 변경하지 않고 결산을 통해 수입계획은 이른바 '미수납'으로 지출계획은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검토됨³²⁰⁾

318) ①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95('24. 4.18)

②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2917('23.10.17),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안전공제 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319) ①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자금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교 특	회 계	기 금	
	전 출 일	전 출 액	수 납 일	수 납 액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2023. 4.14	31,128	2023. 4.14	31,128

②기금별 자금 예치현황

- 표의 10개 계좌는 '24년 4월 현재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중인 것으로 확인됨

(단위 : 백만원)

종류	예치액	예치일	만기일	종류	예치액	예치일	만기일
정기예금	13,800	'22.12.14	'23. 3.14	정기예금	11,200	'23. 1.12	'23. 4.12
“	19,200	'22.12.14	'23. 3.14	“	1,700	'23. 2.10	'23. 5.10
“	4,700	'23. 1.12	'23. 4.12	“	4,500	'23. 2.10	'23. 5.10
“	10,109	'23. 1.12	'23. 4.12	“	5,300	'23. 2.10	'23. 5.10
“	20,913	'23. 1.12	'23. 4.12	“	10,000	'23. 3. 2	'23. 6. 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9495('24. 4.18), 재구성

- 그러나 기금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운용부서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기금의 모든 수입을 총액 계상하고 지출에 반영하여 증감된 변동사항을 기금운용계획에 수정반영하여야 하나,³²¹⁾
- 수입계획의 전입금과 예금이자수입 감소 등의 변동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액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교육감의 결재 없이 단순히 결산상 미수납이나 ‘재원없는 불용’으로 처리한 것은 기금의 수·지 불균형을 방조하는 행태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20) ①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②	수입계획현액 ③ = ① + ②	수 납 액 ④	증 감 액 ⑤ = ④ - ③
	당 초	수 정 ①				
계	127,467	131,224	17,718	148,942	146,988	△1,954
전 입 금	32,939	32,939	-	32,939	31,128	△1,811
전년도이월금	-	-	17,718	17,718	17,718	-
예 치 금 회 수	93,694	93,451	-	97,451	97,451	-
이 자 수 입	834	834	-	834	691	△143

※ '23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②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액		전 년 도 이 월 액 ②	지출계획현액 ③ = ① + ②	지 출 액 ④	다 음 연 도 이 월 액 ⑤	집 행 잔 액 ⑥=③-④-⑤
	당 초	수 정 ①					
계	127,467	131,224	17,718	148,942	140,291	6,697	1,954
신청사건립	37,756	37,756	17,718	55,474	6,828	6,697	41,949
예 치 금	89,711	93,468	-	93,468	133,463	-	△39,995

※ '23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321) 교육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22. 8.), 183p., 186p.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기준

- 수입계획 작성기준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총액 계상
- 지출계획 작성기준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을 반영

〈표 8-18〉 기금 운용계획변경 현황(의회의결 비대상)

기 금 명	변 경 일 자 (심의일자)	지 출 계 획	변 경 사 유	변 경 방 법
신 청 사 및 연 수 원 건 립 기 금	'23.10.10.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 - 예치금 37억 5,700만원 (재무활동 4.2%) 증액		기 금 운 용 심 의 위 원 회
교육시설환경 개 선 기 금	'23. 4.21.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 및 '23. 이자수입 증액 - 예치금 766억 9,900만원 (재무활동 6.6%) 증액		기 금 운 용 심 의 위 원 회
	'23.10.13.	세부사업 내 항목간 지출계획 금액 조정 - 민간투자사업상환 사업비 원가통계목간 조정		
	'23.12.29.	교특회계 전입금 감액, 기타수입 및 이자수입 반영 - 예치금 △2284억 1,600만원 (재무활동 185%) 감액		
통합교육재정 안 정 화 기 금	'23. 5.19.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 전입금 및 이자수입 조정 - 예치금 1,472억 3,700만원 (재무활동 10.1%) 증액		기 금 운 용 심 의 위 원 회
	'23.12.26.	연도말 이자수입 증액 - 예치금 900만원 (재무활동 0.0%) 증액		단 체 장 결 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3.10.16.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 사업비 증액 ① 비용자성사업비 13억 8,200만원 (공제사업, 학교폭력피해지원 15.9%) 증액 ② 인력운영비 2억 5,400만원(19.9%) 증액 ③ 예치금 △8억 2,700만원 (재무활동 △19.9%) 감액		기 금 운 용 심 의 위 원 회
	'23.12. 8.	연도말 이자수입 및 공제로 수입 증액 ① 비용자성사업비 3억 7,000만원 (공제사업, 학교폭력피해지원 15.9%) 증액 ② 기본경비 △5,400만원(기관운영 △19.9%) 감액		

IX. 참고자료

1. 2023회계연도 예산편성 규모

○ 2023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2조 8,915억 2,1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6,622억 1,400만원과

간주처리분 2,321억 2,600만원을 더한

총 예산액은 13조 7,858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8% 감소한 규모임

〈표 9-1〉 최종 예산 규모(2023~2021)

(단위 : 백만원)

회 계 연 도	2023	2022	2021
당 초 예 산 (A)	12,891,521	10,588,635	9,741,993
추 경 증 액 (B)	662,214	3,784,384	1,841,637
간 주 처 리 (C)	232,126	260,311	231,661
최 종 예 산 (D = A + B + C)	13,785,862	14,633,332	11,815,292

2. 결산 개관

(1)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13조 7,858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은 6,021억 4,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4조 3,880억 600만원이며

전년대비 △3.6% 감소한 규모임

〈표 9-2〉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2	증감액	증감률
최 종 예 산 (A)		13,785,862	14,633,332	△847,469	△5.8
전 년 도 이 월 액 (B)		602,143	296,125	306,018	103.3
예 산 현 액 (C = A + B)		14,388,006	14,929,457	△541,450	△3.6
세 입 결 산 액 (D)		13,314,516	14,738,177	△1,423,661	△9.7
세 출 결 산 액 (E)		11,766,497	12,811,043	△1,044,545	△8.2
결산상잉여금 (F = D - E)		1,548,018	1,927,134	△379,116	△19.7
	명 시 이 월 비	263,491	325,906	△62,414	△19.2
	사 고 이 월 비	519,997	276,237	243,760	88.2
	계 속 비	0	0	0	-
	보 조 금 반 납 예 정 액	1,322	3,559	△2,236	△62.8
	지 방 채 상 환	0	0	0	-
	순 세 계 잉 여 금 (G)	763,206	1,321,430	△558,224	△42.2

(2) 세입 결산

〈표 9-3〉 자원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구성율 비율	예산현액대비	
						증감 (C - A)	수납률 (C/A)
합	계	14,388,006	13,325,865	13,314,516	100.0	△1,073,490	92.5
이	전 수 입	12,242,199	1,120,692,	11,120,692	83.5	△1,121,506	90.8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7,345,474	6,444,361	6,444,361	48.4	△901,113	8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784,060	5,897,308	5,897,308	44.3	△886,751	86.9
	보통교부금	6,362,252	5,486,911	5,486,911	41.2	△875,340	86.2
	특별교부금	259,054	247,644	247,644	1.9	△11,410	95.6
	증액교부금	162,753	162,753	162,753	1.2	-	100.0
	국고보조금	70,914	70,914	70,914	0.5	-	100.0
	특별회계전입금	490,500	476,138	476,138	3.6	△14,361	97.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883,711	4,662,402	4,662,402	35.0	△221,308	95.5
	법정이전수입	4,485,693	4,264,388	4,264,388	32.0	△221,305	95.1
	지방교육세전입금	1,946,118	1,848,346	1,848,346	13.9	△97,772	95.0
	담배소비세전입금	284,423	275,335	275,335	2.1	△9,088	96.8
	시도세전입금	2,113,329	2,010,586	2,010,586	15.1	△102,743	95.1
	학교용지매입비시도부담금	1,987	-	-	-	△1,987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14,151	104,425	104,425	0.8	△9,725	91.5
	교육급여보조금	10,424	10,435	10,435	0.1	10	100.1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5,258	15,258	15,258	0.1	-	100.0
	비법정이전수입	398,017	398,014	398,014	3.0	△3	100.0
	기타이전수입	13,013	13,928	13,928	0.1	915	107.0
	민간이전수입	9,045	9,963	9,963	0.1	917	110.1
	자치단체간이전수입	3,967	3,965	3,965	0.0	△2	99.9
자	체 수 입	202,011	261,378	250,028	1.9	48,016	123.8
	기본적교육수입	3	1	1	0.0	△2	41.6
	선택적교육수입	1,290	1,173	1,173	0.0	△117	90.9
	사용료 및 수수료	5,305	4,625	4,621	0.0	△684	87.1
	특별부과금및분담금	-	-	-	-	-	-
	자산임대수입	484	539	504	0.0	19	104.1
	자산매각대	30,366	31,324	31,324	0.2	958	103.2
	이자수입	36,410	44,866	44,866	0.3	8,456	123.2
	제재금수입	1,134	1,595	994	0.0	△139	87.7
	기타수입	126,574	66,309	166,257	1.2	39,682	131.4
	지난연도수입	441	10,942	284	0.0	△156	64.5
기	타	1,943,795	1,943,795	1,943,795	14.6	-	100.0
	순세계잉여금	1,321,430	1,321,430	1,321,430	9.9	-	100.0
	보조금사용잔액	3,559	3,559	3,559	0.0	-	100.0
	이월금	602,143	602,143	602,143	4.5	-	100.0
	융자금원금회수	15,081	15,081	15,081	0.1	-	100.0
	보증금회수	1,580	1,580	1,580	0.0	-	100.0

(3) 세출 결산

〈표 9-4〉 부문 ·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C)	보 조 금 반납예정액 (D)	집 행 잔 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E=A-B-C-D)	비 율 (E/A)
합	계	14,388,006	11,766,497	81.8	783,489	1,322	1,836,696	12.8
유아 및 초·중등교육		7,119,225	5,827,185	81.9	736,743	1,322	553,973	7.8
	인 적 자 원 운 용	71,339	67,119	94.1	128	0	4,092	5.7
	교수학습활동지원	786,054	703,071	89.4	39,440	482	43,059	5.5
	교 육 복 지	799,564	767,205	96.0	1,572	762	30,024	3.8
	보 건 급 식	1,222,236	1,096,715	89.7	37,919	72	87,528	7.2
	학교재정지원관리	2,337,455	2,285,901	97.8	0	0	51,553	7.2
	학교시설여건개선	1,902,573	907,171	47.7	657,682	4	337,714	17.8
평 생 교 육		36,564	33,195	90.8	880	0.005	2,488	6.8
	평 생 교 육	36,564	33,195	90.8	880	0.005	2,488	6.8
교 육 일 반		1,731,469	509,655	29.4	45,865	0	1,175,948	67.9
	교 육 행 정 일 반	220,103	205,500	93.4	2,691	0	11,911	5.4
	기 관 운 영	125,961	72,114	57.3	43,173	0	10,673	8.5
	재 무 활 동	1,385,403	232,040	16.7	0	0	1,153,363	83.3
예 비 비		111,438	45,307	40.7	0	0	66,130	59.3
	예비비 및 기타	111,438	45,307	40.7	0	0	66,130	59.3
인 건 비		5,389,309	5,351,153	99.3	0	0	38,155	0.7
	인 건 비	5,389,309	5,351,153	99.3	0	0	38,155	0.7

(4) 사업별 집행현황

〈표 9-5〉 세부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 번	사업부서	세 부 사 업	예 현 산 액 (A)	지 출 액		이월액 (C)	보조금 반 납 예정액 (D)	집 행 잔 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E=ABCD)	비율 (E/A)
합 계			14,388,006	11,766,497	81.8	783,489	1,323	1,836,696	12.8
1	대 변 인	교 육 정 책 홍 보	5,965	5,865	98.3	-	-	100	1.7
2	감 사 관	감 사 관 리	1,556	1,426	91.6	-	-	130	8.4
3	총 무 과	교 육 행 정 기록물관리	3,764	3,487	92.6	172	-	105	2.8
4	총 무 과	교 직 원 복 지 지 원	40,582	40,072	98.7	-	-	510	1.3
5	총 무 과	민 원 행 정 서비스관리	588	469	79.7	16	-	103	17.5
6	총 무 과	비 상 대 비 계 획 운 영	12,443	12,105	97.3	-	-	338	2.7
7	총 무 과	지방공무원 인 사 관 리	2,143	1,694	79.1	-	-	449	20.9
8	안전총괄 담당 관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707	526	74.4	128	-	53	7.5
9	안전총괄 담당 관	학 생 안 전 관 리	1,972	1,831	92.9	-	-	141	7.1
10	정 책 기 획 관	교 육 정 책 기 획 관 리	1,621	1,342	82.8	103	-	176	10.8
11	정 책 기 획 관	조 직 및 성 과 관 리	146	137	93.8	-	-	9	6.2
12	예 산 담 당 관	계약제교원 인 건 비	366,125	362,288	99.0	-	-	3,837	1.0
13	예 산 담 당 관	계약제근로자 인 건 비	32,333	27,972	86.5	-	-	4,361	13.5
14	예 산 담 당 관	교원인건비	3,861,198	3,848,442	99.7	-	-	12,756	0.3
15	예 산 담 당 관	교 육 전 문 직원인건비	68,067	67,405	99.0	-	-	662	1.0
16	예 산 담 당 관	기 관 기 본 운 영 비	39,992	36,843	92.1	275	-	2,874	7.2

(단위 : 백만원, %)

연 번	사업부서	세 부 사 업	예 현 산 액 (A)	지 출 액		이월액 (C)	보조금 반 납 예정액 (D)	집 행 잔 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E-ABCD)	비율 (E/A)
17	예 산 담 당 관	기금전출금	1,384,439	231,127	16.7	-	-	1,153,312	83.3
18	예 산 담 당 관	내부유보금	61,451	-	-	-	-	61,451	100
19	예 산 담 당 관	예 비 비	3,927	-		-	-	3,927	100
20	예 산 담 당 관	예 산 관 리	5,449	5,147	94.5	-	-	302	5.5
21	예 산 담 당 관	제지출금등	46,060	45,307	98.4	-	-	753	1.6
22	예 산 담 당 관	지방공무원 인 건 비	539,821	537,818	99.6	-	-	2,003	0.4
23	예 산 담 당 관	특 별 교 육 재 정 수 요 지 원	12,400	12,290	99.1	-	-	110	0.9
24	예 산 담 당 관	학교운영비 지 원	741,136	735,309	99.2	-	-	5,827	0.8
25	행정관리 담 당 관	법 무 관 리	982	886	90.2	-	-	96	9.8
26	행정관리 담 당 관	행 정 개 선 활 동 지 원	6,256	5,503	88.0	17	-	736	11.8
27	참여협력 담 당 관	교 육 급 여 지 원	30,869	29,060	94.1	-	-	1,809	5.9
28	참여협력 담 당 관	교 육 복 지 우 선 지 원	41,267	38,162	92.5	1,526	-	1,579	3.8
29	참여협력 담 당 관	교육비지원	69,054	66,246	95.9	-	729	2,079	3.0
30	참여협력 담 당 관	급식비지원	9,419	7,095	75.3	-	-	2,324	24.7
31	참여협력 담 당 관	방과후자유 수강권지원	17,769	16,604	93.4	-	-	1,165	6.6
32	참여협력 담 당 관	정보화지원	3,433	3,215	93.7	-	-	218	6.3
33	참여협력 담 당 관	학부모 및 주민참여확대	3,343	3,147	94.1	-	-	196	5.9
34	노사협력 담 당 관	교육공무 직 원 인 건 비	521,766	507,228	97.2	-	-	14,538	2.8

(단위 : 백만원, %)

연 번	사업부서	세 부 사 업	예 현 산 액 (A)	지 출 액		이월액 (C)	보조금 반 납 예 정액 (D)	집 행 잔 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E-ABCD)	비율 (E/A)
35	노사협력 담당관	교직원단체 관리	589	529	89.8	-	-	60	10.2
36	노사협력 담당관	근로자인사 관리	1,486	1,228	82.6	-	-	258	17.4
37	대외협력 담당관	교 육 협 력 관 리	29	27	92.3	-	-	2	7.7
38	대외협력 담당관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	1,074	784	73.0	46	-	244	22.7
39	대외협력 담당관	의 회 협 력	121	120	99.3	-	-	1	0.7
40	디지털· 혁신미래 교육과	I C T 활 용 교 육 지 원	131,089	92,072	70.2	35,592	-	3,425	2.6
41	디지털· 혁신미래 교육과	교과서지원	59,286	59,090	99.7	-	-	196	0.3
42	디지털· 혁신미래 교육과	영 재 교 육 영	3,560	3,497	98.2	-	-	63	1.8
43	디지털· 혁신미래 교육과	정 보 보 안 관 리	18,487	14,743	79.7	970	-	2,774	15.0
44	디지털· 혁신미래 교육과	학교정보화 여 건 개 선	51,399	36,315	70.7	-	-	15,084	29.3
45	유 아 교 육 과	누 리 과 정 원	494,867	480,192	97.0	-	34	14,641	3.0
46	유 아 교 육 과	사립유치원 지 원	57,835	55,500	96.0	-	-	2,335	4.0
47	유 아 교 육 과	유 아 교 육 영	7,353	7,194	97.8	-	-	159	2.2
48	유 아 교 육 과	유치원방과 후 과정 운영	9,772	9,552	97.7	-	-	220	2.3
49	초 등 교 육 과	돌 봄 교 실 영	50,063	45,108	90.1	-	-	4,955	9.9
50	초 등 교 육 과	방과후학교 영	15,236	14,870	97.6	-	-	366	2.4
51	초 등 교 육 과	연구 시 범 학 교 운 영	7	7	100	-	-	-	-

(단위 : 백만원, %)

연 번	사업부서	세 부 사 업	예 현 산 액 (A)	지 출 액		이월액 (C)	보조금 반 납 예 정 액 (D)	집 행 잔 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E-ABCD)	비율 (E/A)
52	초 교 육 과	현 장 중 심 장 학 지 원	13,931	13,699	98.3	-	-	232	1.7
53	중 교 육 과	교 원 인 사 리 관	13,062	11,187	85.6	128	-	1,747	13.4
54	중 교 육 과	교 육 과 정 운 영 여 건 선 개	34,039	33,976	99.8	-	-	63	0.2
55	중 교 육 과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72,812	66,900	91.9	752	6	5,154	7.1
56	중 교 육 과	교 육 자 료 개 발 보 급	521	505	97.0	-	-	16	3.0
57	중 교 육 과	대 학 수 학 능 력 시 험	16,917	16,615	98.2	-	-	302	1.8
58	중 교 육 과	방 송 통 신 중 고 운 영	1,151	1,151	100	-	-	-	-
59	중 교 육 과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30,620	27,378	89.4	1,337	-	1,905	6.2
60	교수학습· 기초학력 지 원 과	교 실 수 업 선 개	1,668	1,647	98.7	-	-	21	1.3
61	교수학습· 기초학력 지 원 과	독 서 논 술 교 육 운 영	4,938	4,935	99.9	-	-	3	0.1
62	교수학습· 기초학력 지 원 과	학 교 도 서 관 운 영	351	346	98.7	-	-	5	1.3
63	교수학습· 기초학력 지 원 과	학 력 평 가 리 관	12,681	12,196	96.2	-	-	485	3.8
64	교수학습· 기초학력 지 원 과	학 력 향 상 원 지	111,889	105,211	94.0	773	-	5,905	5.3
65	평 교 육 과	검 정 고 시 운 영	1,001	922	92.1	-	-	79	7.9
66	평 교 육 과	도 서 관 운 영	10,106	8,836	87.4	880	-	390	3.9
67	평 교 육 과	평 생 교 육 사 설 및 운 영	17,773	16,312	91.8	-	-	1,461	8.2
68	평 교 육 과	평 생 학 습 운 영	6,533	5,974	91.4	-	-	559	8.6

(단위 : 백만원, %)

연 번	사업부서	세 부 사 업	예 현 산 액 (A)	지 출 액		이월액 (C)	보조금 반 납 예정액 (D)	집 행 잔 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E-ABCD)	비율 (E/A)
69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등자녀 교육 지원	8,302	7,562	91.1	47	-	693	8.4
70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대안 교육 운영	16,929	15,654	92.5	-	477	798	4.7
71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성폭력예방 교육 등	820	691	84.2	-	-	129	15.8
72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학 교 폭 력 예방및교육	10,461	9,420	90.0	265	-	776	7.4
73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학 생 상 담 활 동	4,375	4,192	95.8	-	-	183	4.2
74	민주시민 생활교육과	학 생 생 활 지 도 지 원	1,355	1,337	98.7	-	-	18	1.3
75	진로직업 교육과	직업 교육 운영	18,220	18,051	99.1	-	-	169	0.9
76	진로직업 교육과	직업 교육 환경 개선	32,374	31,671	97.8	-	-	703	2.2
77	진로직업 교육과	진로진학 교육운영	7,035	6,956	98.9	-	-	79	1.1
78	진로직업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21,334	20,734	97.2	475	-	125	0.6
79	체육건강 예술교육과	각종 체육 활동	42,366	41,112	97.0	-	-	1,254	3.0
80	체육건강 예술교육과	문화 예술 교육 활동	17,070	16,297	95.5	-	-	773	4.5
81	체육건강 예술교육과	학 교 급 식 운영	956,263	901,271	94.2	-	-	54,992	5.8
82	체육건강 예술교육과	학 교 보 건 관 리	73,783	53,929	73.1	-	72	19,782	26.8
83	체육건강 예술교육과	학 교 환 경 위 생 관 리	80,022	74,593	93.2	-	-	5,429	6.8
84	특수 교육과	특수 교육 지원	20,835	20,419	98.0	-	-	416	2.0
85	특수 교육과	특수 교육 운영	13,651	12,811	93.8	93	-	747	5.5
86	특수 교육과	특수 교육 여건 개선	3,940	3,939	100	-	-	1	0.0

(단위 : 백만원, %)

연 번	사업부서	세 부 사 업	예 현 산 액 (A)	지 출 액		이월액 (C)	보조금 반 납 예정액 (D)	집 행 잔 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E-ABCD)	비율 (E/A)
87	학 교 지 원 과	사 학 기 관 지 도 지 원	1,017	886	87.1	-	-	131	13.0
88	학 교 지 원 과	운영비재정 결 함 지 원	284,818	266,356	93.5	-	-	18,462	6.5
89	학 교 지 원 과	인건비재정 결 함 지 원	1,311,502	1,284,237	97.9	-	-	27,265	2.1
90	학 교 지 원 과	적 정 규 모 학 교 육 성	3,423	3,257	95.2	22	-	144	4.2
91	학 교 지 원 과	진학희망 학 전 형 관 리	1,309	1,159	88.5	-	-	150	11.5
92	학 교 지 원 과	학교신증설	125,067	46,475	37.2	75,513	-	3,079	2.5
93	학 교 지 원 과	학 생 배 치 계 획 관 리	6,020	5,693	94.6	163	-	164	2.7
94	교 육 재 정 과	결 산 관 리	145	133	92.0	-	-	12	8.0
95	교 육 재 정 과	공유재산및 물 품 관 리	63,852	62,335	97.6	110	-	1,407	2.2
96	교 육 재 정 과	일시차입금 관 리	52	-	-	-	-	52	100
97	교 육 재 정 과	재 무 회 계 관 리	7,172	7,084	98.8	-	-	88	1.2
98	교육시설 안 전 과	기 관 시 설 유 지 관 리	85,969	35,272	41.0	42,899	-	7,798	9.1
99	교육시설 안 전 과	민 간 투 자 사 업 상 환	913	913	100	-	-	-	-
100	교육시설 안 전 과	시 설 사 업 운 영	39,005	33,757	86.5	1,072	-	4,176	10.7
101	교육시설 안 전 과	학 교 급 식 환 경 개 선	111,462	66,398	59.6	37,792	-	7,272	6.5
102	교육시설 안 전 과	학 교 시 설 확 충	59,940	37,418	62.4	21,035	-	1,487	2.5
103	교육시설 안 전 과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1,717,567	823,279	47.9	561,134	5	333,149	19.4
104	교육연구 정 보 원	교 수 학 습 지 원 센 터 운 영	1,816	1,679	92.4	-	-	137	7.6

(단위 : 백만원, %)

연 번	사업부서	세 부 사 업	예 현 산 액 (A)	지 출 액		이월액 (C)	보조금 반납 예정액 (D)	집 행 잔 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E-ABCD)	비율 (E/A)
105	교육연구 정 보 원	교 육 연 구 운 영 지 원	5,593	5,055	90.4	154	-	384	6.9
106	교육연구 정 보 원	교 육 행 정 정보시스템 운 영	24,300	24,026	98.9	-	-	274	1.1
107	교육연구 정 보 원	기관및학교 평 가 관 리	357	323	90.5	-	-	34	9.5
108	교 육 연 수 원	교 원 연 수 운 영	10,642	10,129	95.2	-	-	513	4.8
109	교 육 연 수 원	지방공무원 연 수 운 영	3,426	2,809	82.0	-	-	617	18.0
110	학 생 교 육 원	학 생 단 체 활 동	3,216	2,520	78.3	-	-	696	21.7

(5) 명시이월 현황

〈표 9-6〉 주요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이 월 액	사 유
1	ICT활용교육지원	디벗 환경 구축 [스마트기기보급 (디지털선도학교)]	23,792	23,792	계약추진을 위한 사전이행절차 (원가조사, 일상감사, 과업심의 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지연
2	ICT활용교육지원	디벗 환경 구축 [스마트기기충전함 (디지털선도학교)]	1,579	1,579	계약추진을 위한 사전이행절차 (원가조사, 일상감사, 과업심의 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지연
3	ICT활용교육지원	디벗 환경 구축 [스마트기기충전함(중)]	6,177	6,177	계약추진을 위한 사전이행절차 (원가조사, 일상감사, 과업심의 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등) 지연
4	학 교 신 증 설	(가칭) 동진학교 토 지 보 상 비	27,690	27,690	토지소유주와 협의지연 및 손실보상절차 장기 소요
5	기관시설유지관리	고 책 도 서 관 그 린 리 모 델 링 (국 고 보 조 금)	1,905	1,905	'22년 11월 국고보조금 교부로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능
6	학교시설확충	서 연 중 강 당 검 체 육 관 시 설 비	2,000	1,942	각종 인증절차 및 구청 협약 지연
7	학교시설확충	은 평 고 체 육 관 증 축	1,000	1,000	재정투자심사 재심사 필요
8	학교시설환경개선	응 암 초 본 관 동 드라이비트해소	1,488	1,446	학 교 의 건 반 영 (학교일정 조정이후 공사추진)
9	학교시설환경개선	북 가 좌 초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설 계 비	1,000	1,000	'24년 3월 중 설계용역 계약 예정
10	학교시설환경개선	당 산 초 나 동 (후 관 동) 드라이비트해소	1,080	1,060	내진보강 간섭 공종으로 내진보강 설계검토기간 소요
11	학교시설환경개선	선 유 초 교 사 동 드라이비트해소	1,764	1,750	내진보강 간섭 공종으로 내진보강 설계검토기간 소요
12	학교시설환경개선	문 성 초 후 관 및 본 관 외 벽 개 선	1,172	1,133	내진보강 간섭 공종으로 내진보강 설계검토기간 소요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이 월 액	사 유
13	학교시설환경개선	대 림 중 본관 및 정보동 외 벽 개 선	1,112	1,071	내진보강 간섭 공종으로 내진보강 설계검토기간 소요
14	학 교 신 증 설	(가칭)대방유신설	2,269	2,249	대방초 별관 증개축공사와 연계 검토로 인해 설계기간 장기 소요
15	학교시설환경개선	두 산 초 교 사 동 드라이비트해소	1,020	1,020	내진보강 간섭 공종으로 내진보강 설계검토기간 소요
16	학교시설환경개선	신 길 중 운동장 환경개선	1,000	1,000	환경부 KS기준 개정 고시 이 후 사 업 추 진
17	학교시설환경개선	한 천 중 교 사 동 외 부 창 호 개 선	1,611	1,577	내진보강 공사 예정으로 내진보강공사완료 후 사업추진
18	학교시설환경개선	창 동 초 그린스마트스쿨 설 계 비	1,000	1,000	행정처리 잔여기간(공유재산심의, 공 공 건 축 관 리 계 획 등) 으로 인한 금년도 추진 불가
19	학교시설환경개선	신 상 중 본 관 동 화 장 실 개 선	1,268	1,268	'23년 동계 공사집중으로 인한 내진 보강 연기에 따른 관련 공사 연기
20	학교급식환경개선	세 검 정 초 급식실 및 식당 리 모 델 링	1,308	1,299	외부급식 등의 문제로 학교 측에서 '24학년도 여름방학 공사 희망
21	학교시설환경개선	보 광 초 그린스마트스쿨 설 계 비	1,000	1,000	사전 절차(설계 공모 등) 이행 소요로 인하여 연도 내 집행 불가능
22	학교시설환경개선	청 운 중 본 관 동 드라이비트해소	1,481	1,451	대수선 허가대상 사업으로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하여, 내진보강공사 우선 검토를 위해 연도내 추진불가능
23	학 교 신 증 설	(가 칭) 산 빛 초 신축(토지매입비)	7,560	7,560	학교용지 무상공급 요구를 위한 매 입 시 기 조 정
24	학교시설환경개선	위 레 초 그린스마트스쿨 시 설 비	15,033	7,900	장기계속공사 조달청 계약지연에 따른 연도내 집행 불가능
25	학교시설환경개선	중 대 초 본 관 외 벽 개 선	1,114	1,114	학교 학사일정 및 의견수렴하여 '24년 겨울방학 공사로 추진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이 월 액	사 유
26	학교시설환경개선	천 일 중 교 사 동 외 부 창 호 개 선	1,440	1,440	학교 학사일정 및 의견수렴하여 '24년 여름방학 공사로 추진
27	학교시설환경개선	가 락 중 본 관 화 장 실 개 선	1,761	1,761	학교 학사일정 및 의견수렴하여 '24년 여름방학 공사로 추진
28	학교시설환경개선	묘 곡 초 교 사 동 외 벽 개 선	1,460	1,460	학교의 내진공사 시기 요청으로 '24년 하반기 공사 추진 예정
29	학교시설환경개선	갈 산 초 본 관 동 외 부 창 호 개 선	1,368	1,368	내 진 공 사 간 섭 에 따 른 '24년 겨울방학 공사추진
30	학교시설환경개선	금 용 고 교 사 동 드 라이 비 트 해 소	1,720	1,697	내 진 공 사 간 섭 에 따 른 '24년 겨울방학 공사추진
31	학교시설환경개선	상 도 유 노 후 교 사 개 축	5,000	5,000	인 근 재 개 발 사 업 지 연 (도로 공사, '24년 2월 완료)에 따 른 공 사 착 공 불 가
32	학교시설환경개선	용 마 초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설 계 비	1,000	1,000	미래학교 검토위원회 결과(재검토)에 따 른 보 완 사 항 이 행 장 기 소 요 로 인 하여 연 도 내 집 행 불 가 능
33	학교시설환경개선	번 동 중 교 사 동 외 부 창 호 개 선	1,602	1,602	내진 보강공사 연계추진으로 인하여 연 도 내 집 행 불 가 능
34	기관시설유지관리	학생교육원(대성리) 실내교육장 증축	2,570	2,570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23. 12월후 '24년 상반기 공사추진
35	학교시설환경개선	서 라 벌 고 체 육 관 전 면 보 수	1,327	1,327	지하체육관 천장 부분인 1층 바닥 방수공사를 선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관 련 예 산 확 보 후 추 진
36	학교시설환경개선	성 심 여 고 외 벽 보 수	1,638	1,638	'24년 내진보강 진행시 동시 진행을 위해 명시 이월 신청
37	학교시설환경개선	송 의 여 고 본 관 바 닥 개 선	1,418	1,418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출입문, 바닥, 화장실개선사업 동시진행 예정
38	학교시설환경개선	송 의 여 고 본 관 화 장 실 개 선	1,205	1,205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출입문, 바닥, 화장실개선사업 동시진행 예정

(단위 :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사 업 명	예 산 현 액	이 월 액	사 유
39	학교시설환경개선	해성국제컨벤션고 본 관 외 벽 개 선	1,045	1,045	'24년 겨울방학기간 내진보강 공사진행 예정에 따라 모든 간섭공사 함께 진행할 예정
40	학교시설환경개선	진 선 여 중 체 육 관 전 면 보수	1,592	1,592	학기 중 학생들의 원만한 체육수업 활동을 위하여 겨울방학중 추진
41	학교시설환경개선	영 훈 고 본 관 외 부 창 호 개 선	1,620	1,620	일부 교실(8실) 석면해체작업 및 내진구조설계와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사업으로 '24년 추진 예정
42	학교시설환경개선	대경생활과학고 본 관 외 벽 개 선	1,526	1,526	내진보강공사 내진설계에 반영된 pc 패널공법에 대해 재검토 필요
43	학교시설환경개선	영 신 여 고 본 관 외 벽 개 선	1,228	1,228	본관동 내진공사('24.12월 착공 예 정 와 병 행 실 시 예 정
44	학교급식환경개선	중 앙 여 고 시 설 비	2,803	2,803	재정투자심사 지연에 따라 연 도 내 집 행 불 가 능
45	학교시설환경개선	명 지 고 다 목 적 관 소 강 당 전 면 보수	1,450	1,450	다목적관소강당 공사계획 협의 중
46	학교시설환경개선	세 화 여 중 교 사 동 외 부 창 호 교 체	1,404	1,404	내진보강공사와 간섭공사로 내진보강 공 사 가 ' 2 4 년 추 진 예 정 (공법선정으로 인한 시간 소요)
47	학교시설환경개선	선 일 여 중 교 사 동 드 라이비트 해 소	1,068	1,068	내진보강 간섭사업으로 '24년 내진보강 완료 후 집행 예정
48	학교시설환경개선	대 광 중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시 설 비	1,380	1,380	'23.12.5.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49	학교시설환경개선	용 문 고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시 설 비	1,166	1,166	'23.12.5.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50	학교시설환경개선	정 의 여 고 그 린 스 마 트 스 쿨 시 설 비	3,783	3,783	'23.12.5.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교부되어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

※ 명시이월액 10억원 이상으로 한정함

(6) 사고이월 현황

〈표 9-7〉 주요 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업기간	사유
1	참여협력담당관	마을결합형 학교공간시설개선 (이수중)	1,850	1,392	'23. 4. 4 ~ '24. 3.26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2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도서개발 (특별교부금)	2,383	1,026	'23. 5. 9 ~ '24. 9.30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정도서 개발 계약기간('24.9.30.) 미도래
3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100	1,453	'23.12.27 ~ '24. 5.25	계약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원가조사, 일상감사, 과업심의위원회, 보안성검토, 소프트웨어영향평가,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 필요
4	평생교육과	개포도서관 건립 (특별교부금)	1,379	1,032	'23. 9.21 ~ '24. 2. 1	개포도서관 건립 사업 계획 일정에 따른 추진
5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동부)	3,656	3,127	'23. 3. 8 ~ '24. 3. 2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6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서부)	3,363	1,970	'23. 3.16 ~ '24. 5.2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7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서부)	3,967	2,940	'23. 2.17 ~ '24. 5. 3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8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남부)	7,599	3,128	'23. 1.18 ~ '24. 3.30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9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남부)	5,927	5,570	'23. 5.15 ~ '24. 2.29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10	교육시설안전과	내진보강사업(북부)	4,515	2,909	'23. 5.12 ~ '24. 5. 3	'23년 겨울방학 착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미착공
11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북부)	11,810	7,688	'23. 1.25 ~ '24. 3. 3	'23년 겨울방학 착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미착공
12	교육시설안전과	석면제거 (중부)	4,549	4,102	'23. 1.18 ~ '24. 9. 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업기간	사	유
13	교육시설 안전과	GHP배출가스저감 장치부착(강동송파)	1,258	1,227	'23. 7.30 ~ '24. 5.3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14	교육시설 안전과	내진보강사업 (강 동 송 파)	1,506	1,473	'23. 1.19 ~ '24. 5. 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15	교육시설 안전과	석면제거(강동송파)	3,680	3,404	'23. 6.12 ~ '24. 3. 4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16	교육시설 안전과	내진보강사업 (특 별 교 부 금) (강 동 송 파)	1,400	1,221	'23. 11.22 ~ '24. 5. 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17	교육시설 안전과	내진보강사업 (강 서 양 천)	3,254	1,298	'23. 3.15 ~ '24. 12.3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18	교육시설 안전과	석면제거(강서양천)	4,484	3,769	'23. 2.23 ~ '24. 3.11	학 사 일 정 으 로 인 한 방 학 중 공 사 추 진	
19	교육시설 안전과	석면제거(강남서초)	6,708	4,937	'23. 1.18 ~ '24. 3. 3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20	교육시설 안전과	내진보강사업 (강 남 서 초)	2,773	1,704	'23. 4.17 ~ '24. 2. 4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21	교육시설 안전과	내진보강사업 (동 작 관 악)	4,383	1,632	'23. 1.19 ~ '24. 3.15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22	교육시설 안전과	석면제거(동작관악)	5,571	5,269	'23. 5.24 ~ '24. 2.29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23	교육시설 안전과	석면제거(성동광진)	4,546	3,423	'23. 4.24 ~ '24. 3. 4	학사일정에 따른 겨울방학공사 시행으로 준공 및 감리용역 완 수 기 간 미 도 래	
24	교육시설 안전과	석면제거(성북강북)	2,693	1,871	'23. 3. 2 ~ '24. 2.29	학 사 일 정 으 로 인 한 방 학 중 공 사 추 진	
25	교육시설 안전과	내진보강사업 (특 별 교 부 금) (성 북 강 북)	3,900	3,548	'23. 12.19 ~ '24. 7.31	학 사 일 정 으 로 인 한 방 학 중 공 사 추 진	
26	동부교육 지원청	(가칭) 동진학교 설 계 비	1,800	1,800	'23. 12. 4 ~ '24. 8.29	계 약 기 간 미 도 래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업기간	사	유
27	동부교육 지원청	회경공고 교사동 외부창호개선	3,176	2,700	'23. 2.20 ~ '24. 3. 2	학교 학사일정에 따른 동계방학공사예정	
28	동부교육 지원청	중목초 교사동 외부창호개선	1,559	1,079	'23. 7.25 ~ '24. 4.10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29	동부교육 지원청	휘봉초 교사동 화장실보수	1,582	1,493	'23. 3. 8 ~ '24. 6.17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30	동부교육 지원청	봉화중 체육관 전면보수	1,774	1,071	'23. 5. 9 ~ '24. 3.24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31	동부교육 지원청	동대문중 본관동 냉난방개선	1,169	1,106	'23. 2.10 ~ '24. 3.15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32	서부교육 지원청	연천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증축 시설 비	2,032	1,357	'23. 6.22 ~ '24. 6.30	준공시기미도래	
33	서부교육 지원청	홍제초 본관동 바닥개선	1,303	1,222	'23. 8.23 ~ '24. 9. 5	준공시기미도래	
34	서부교육 지원청	연희초 본관동 드라이비트 해소	1,240	1,188	'23. 3.16 ~ '24. 4.12	학사일정으로 인한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24. 4. 준공예정)	
35	서부교육 지원청	연북중 본관 드라이비트 해소	1,200	1,090	'23. 3.13 ~ '24. 4.27	준공시기미도래	
36	서부교육 지원청	진관중 드라이비트 해소	1,040	1,000	'23. 2.16 ~ '24. 4.12	학사일정으로 인한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24. 4. 준공예정)	
37	서부교육 지원청	중암중 교사동 외벽개선	1,922	1,237	'23. 2.21 ~ '24. 3.18	준공시기미도래	
38	서부교육 지원청	아현초 교사동 화장실 전면개선	1,890	1,017	'23. 2.16 ~ '24. 3.20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일 : '24. 3.20)	
39	서부교육 지원청	증산중 본관(A,B) 화장실개선	1,459	1,029	'23. 2.16 ~ '24. 4. 3	방학 중 공사 실시 및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절대공기 부족 (준공예정일 : '24. 4. 3)	
40	서부교육 지원청	신도중 교사동 화장실개선	1,842	1,319	'23. 8.24 ~ '24. 3.30	학사일정으로 인한 겨울방학 중 공사 시행 (준공예정일 : '24. 3.30)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업기간	사	유
41	서부교육지원청	홍은중 체육관 환경 개선	1,888	1,633	'23. 8. 8 ~ '24. 4.25	준공시기	미도래
42	서부교육지원청	신연중 체육관 전면보수	1,599	1,263	'23. 5.10 ~ '24. 3.31	준공시기	미도래
43	서부교육지원청	갈현초 설계비	1,254	1,254	'23. 11. 6 ~ '24. 9. 2	완수시기	미도래
44	남부교육지원청	당서초 체육관 증축	4,489	2,703	'23. 1. 6 ~ '24. 4.30	계약기간	미도래
45	남부교육지원청	당서초 특별교실 증축	4,701	3,634	'23. 8.30 ~ '24. 4.30	계약기간	미도래
46	남부교육지원청	영림초 교사동 외벽 개선	1,683	1,524	'23. 1.26 ~ '24. 3.3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47	남부교육지원청	개웅중 본관 및 후관 외벽 개선	1,345	1,283	'23. 3.17 ~ '24. 3.3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48	남부교육지원청	한강미디어고 교사동 외부창호 개선	3,465	1,939	'23. 2.14 ~ '24. 2.29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49	남부교육지원청	대림중 본관동 및 정보동 화장실 개선	1,342	1,011	'23. 2.14 ~ '24. 8.3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50	남부교육지원청	가산중 체육관 바닥 교체 및 내부도장 (특별교부금)	1,168	1,002	'23. 7.21 ~ '24. 2.29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51	북부교육지원청	창일초 교사동 드라이비트해소	1,200	1,146	'23. 12.20 ~ '24. 4.24	학교장 요청으로 인한 겨울방학 공사 시행	
52	북부교육지원청	월계고 교사동 화장실 개선	2,286	1,058	'23. 5. 3 ~ '24. 3.31	겨울방학공사로 인한 사고이월	
53	북부교육지원청	수락초 교사동 화장실 보수	1,357	1,105	'23. 4.20 ~ '24. 3.31	겨울방학공사로 인한 사고이월	
54	북부교육지원청	온곡초 교사동 화장실 보수	1,249	1,007	'23. 3.23 ~ '24. 3.31	겨울방학공사로 인한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업기간	사	유
55	북부교육지원청	청사 리모델링 환경 개선공사 외 1건	1,621	1,500	'23. 3.31 ~ '24. 4.20	준공시기미도래	
56	북부교육지원청	청사 리모델링 환경 개선공사 외 4건	1,297	1,183	'23. 3.31 ~ '24. 4.20	준공시기미도래	
57	중부교육지원청	(가칭) 남산초 병설유신설	7,156	3,367	'23. 1.19 ~ '24. 5.31	준공시기미도래	
58	중부교육지원청	교동초 교사동 외부창호개선	1,080	1,028	'23. 2.27 ~ '24. 9. 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59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명원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649	1,630	'23. 6.12 ~ '24. 8.30	준공시기미도래	
60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석촌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723	1,613	'23. 11.23 ~ '24. 9.30	준공시기미도래	
61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가칭)강현유 신설	6,150	5,693	'23. 11.30 ~ '25. 1.30	준공시기미도래	
62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일초 교사동 냉난방개선	1,283	1,203	'23. 2.21 ~ '24. 2.20	학사일정으로 인한 겨울방학 중 공사추진	
6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가원중 교사동 외벽개선	1,433	1,360	'23. 2. 6 ~ '24. 4.30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64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창덕여고 교사동 화장실보수	1,762	1,079	'23. 12.11 ~ '24. 4. 7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65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위례초 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3,000	3,000	'23. 6. 7 ~ '24. 12.30	준공시기미도래	
66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둔촌초 그린스마트스쿨	14,535	9,361	'23. 1.31 ~ '24. 11.26	준공시기미도래	
67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위례초 그린스마트스쿨	15,033	6,584	'23. 6. 2 ~ '24. 12.30	준공시기미도래	
68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양강초 담뱃재떨기 및 엘리베이터설치 및 학생식당 개선	1,629	1,614	'23. 11.29 ~ '24. 4.30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업기간	사	유
69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경인초 시설비	2,537	2,210	'23. 12. 1 ~ '24. 2.25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7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염동초 시설비	1,613	1,274	'23. 1.25 ~ '24. 7.28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71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수명중 시설비	1,639	1,438	'23. 5.17 ~ '24. 6.1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72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가양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656	1,656	'23. 6.14 ~ '24. 8.1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73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염동초 시설비	2,608	1,528	'23. 7.28 ~ '24. 7.28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74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신남초 모둘러임차료	1,350	1,350	'23. 11.28 ~ '24. 7. 8	계약기간미도래	
75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신정초 교사동 바닥 개선	2,062	1,410	'23. 2.28 ~ '24. 2.28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76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방화초 정보종합센터 외벽 개선	1,184	1,100	'23. 3. 2 ~ '24. 4.10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77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송정중 교사동 외벽 개선	1,441	1,307	'23. 5.31 ~ '24. 4.10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78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신남초 증개축시설비(1차)	10,601	10,252	'23. 5.17 ~ '28. 7. 8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79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화곡초 설계비	1,115	1,111	'23.12.27 ~ '24. 8.28	계약기간미도래	
80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청사 리모델링	6,582	6,208	'23. 5.30 ~ '24.10.11	준공시기미도래	
81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서울전자고 시설비	1,912	1,912	'23.11. 2 ~ '24.11. 3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82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일원초 시설비	2,147	1,414	'23. 1.18 ~ '24. 2.2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업기간	사	유
83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일원초 교실증축	3,408	2,896	'23. 1.18 ~ '24. 2.21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84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영동중 교실증축	3,032	1,712	'23. 4. 7 ~ '24. 9. 9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85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가칭)개원2초 신설	25,000	14,804	'23. 1. 5 ~ '24. 8.1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86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서울전자고 시설비	3,005	1,836	'23. 1.19 ~ '24.11. 3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87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경기여고 교사동 외부창호개선	2,402	1,793	'23. 1.18 ~ '24. 3. 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88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언주중 별관 및 본관 외부창호개선	1,437	1,114	'23. 3.23 ~ '24. 2.29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89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신동중 체육관 환경개선	1,972	1,478	'23. 7.24 ~ '24. 3.31	학사일정으로 인해 학교측의 요구로 방학 중 공사 시행	
9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서울산업정보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724	1,399	'23. 4.13 ~ '24. 3. 1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23년 겨울방학에 착공	
91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은로초 교실 및 학생식당 증축	2,627	2,485	'23. 5. 8 ~ '25. 1. 8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92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상도유 노후교사개축	1,263	1,261	'23. 9.12 ~ '25 4.10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93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동작고 교사동 외벽개선	2,181	1,905	'23. 8. 3 ~ '24. 4.17	학교 요청으로 '23년 겨울방학중 공사추진	
94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수도여고 강당동기계실 여과기 및 배관교체	1,182	1,138	'23. 2.24 ~ '24. 3.27	학교 요청으로 '23년 겨울방학중 공사추진	
95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수도여고 강당동 수영장시설개선	1,755	1,352	'23. 2.27 ~ '24. 3.27	학교 요청으로 '23년 겨울방학중 공사추진	
96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난향초 교사 드라이비트 해소	1,629	1,619	'23. 3. 7 ~ '24. 3.31	학교 요청으로 '23년 겨울방학중 공사추진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부서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사업기간	사유
97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난향초 체육관 수영장보수	2,018	1,896	'23. 2.25 ~ '24. 3.31	학교 요청으로 '23년 겨울방학중 공사추진
98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양진초 본관 급식실 이전예따른기존시설 이전 및 구조보강	1,203	1,082	'23. 3.21 ~ '24. 3.25	학교 요청으로 '23년 겨울방학중 공사추진
99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옥정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신증축	2,644	1,774	'23. 1. 6 ~ '24. 4. 9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100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옥정중 강당검체육관	1,991	1,518	'23. 7.18 ~ '24. 3.12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101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성북초 시설비	1,388	1,319	'23. 3.29 ~ '24. 7.31	학사일정에 따른 '24년 착공으로 인한 사고이월
102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종암중 시설비	4,232	4,120	'23. 10. 4 ~ '24.12.31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미도래
103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길음중 교사동 외부치장벽돌타일 개선공사	1,556	1,250	'23. 8.24 ~ '24. 3.31	학사일정에 따른 '24년 착공으로 인한 사고이월
104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수유중 본관 외부창호 개선	1,737	1,180	'23. 3.31 ~ '24. 2.29	학사일정에 따른 '24년 착공으로 인한 사고이월
105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서울도시과학기술고 본관 외부창호 개선	1,490	1,336	'23. 8.24 ~ '24. 4.30	학사일정에 따른 '24년 착공으로 인한 사고이월
106	교육시설 관리본부	강서도서관 가양분관설립시설비	4,600	4,597	'23. 10.11 ~ '24. 6. 1	선행공정인 해체 및 철거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107	교육시설 관리본부	동작도서관 전면리모델링 (공간재구조화)	1,366	1,324	'23. 5. 8 ~ '24. 5.31	기관 요청 및 휴관일정에 따른 공사시기 조정
108	교육시설 관리본부	학생교육원 (대천임해교육원) 본관동 외벽개선	1,479	1,395	'23. 3.16 ~ '24. 6. 1	기관 요청 및 휴관일정에 따른 공사시기 조정

※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으로 한정함

(7) 채권

〈표 9-8〉 채권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2022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2023년도말 현 재 액
		계	발 생 액	소 멸 액	
합 계	201,226	△18,611	31,354	49,965	182,615
토 지 매 각 대	293	153	30,582	30,428	446
토 지 매 각 대 분 할 납 부 이 자	11	△4	6	10	7
전 세 자 금	3,960	△1,500	80	1,580	2,460
대 지 료	183	△12	39	51	171
대 가 료	0	0	0	0	0
입 학 금	0	0	0	0	0
수 업 료	0.3	0	0	0	0.3
기 타 사 용 료	0.003	△0.002	0.001	△0.003	0.001
변 상 금	6,494	△792	491	1,284	5,702
위 약 금	2,071	△1,025	60	1,085	1,046
기 타 수 입	2,344	△349	94	444	1,994
학 자 대 여 금	185,867	△15,081	0	15,081	170,785

(8) 채무

〈표 9-9〉 채무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2022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액			2023년도말 현 재 액
		계	채 무 발 생 액	상 환·소 멸액	
합 계 (지 방 채)	-	-	-	-	-

(9) 공유재산

〈표 9-10〉 재산별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2023년도말 현재액
			계	증가	감소	
합	계	31,805,056	191,926	292,195	100,268	31,996,982
행정	재산	31,484,130	195,412	279,900	84,488	31,679,542
	공용재산	31,483,159	194,935	279,423	84,488	31,678,095
	공공용재산	0	0	0	0	0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재산	970	476	476	0	1,447
일반	재산	320,925	△3,485	12,294	15,780	317,440

(10) 물품

〈표 9-11〉 물품 증감 및 보유액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품 목 종 류	구 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중 증 감 현 황						2023년도말 보 유 액
			취 득			처 분			
			소 계	구 매	관리전환, 양여, 기타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양여, 폐기, 기 타	
12종	수 량	28,094	1,488	1,340	148	2,526	46	2,480	27,056
	금 액	75,784	8,147	5,502	2,645	6,973	418	6,555	76,958

(11) 성인지결산

〈표 9-12〉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사 업 개 수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집 행 률 (B/A)	성 과 목 표 달 성 도	
				100% 이상	100% 미만
38	282,762	229,529	81.2	26	12

〈표 9-13〉 사업분류별 성인지 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업개수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집 행 률 (B/A)	성 과 목 표 달 성 도 사업 개 수
합 계		38	282,762	229,529	81.2	26
필수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2	102,676	96,338	93.8	11
	성별영향평가사업	5	7,321	6,596	90.1	4
	교육부지정사업	17	169,802	123,887	73.0	7
선택	자체선정사업	4	2,961	2,706	91.4	4

〈표 9-14〉 정책분야·정책과제별 성인지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정책분야·정책과제명·세부사업		사 업 명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B)	집 행 률 (B / A)
합 계			282,762	229,529	81.2
1.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39,070	36,948	94.6
가.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강화			38,617	36,546	9.46
	교육과정운영지원	영 어 처 험 교 육 지 원	1,054	934	88.6
	특색교육과정운영	오 디 세 이 학 교 운 영	885	885	100.0
	직업교육운영	일반고직업교육과정운영지원	256	211	82.5
	취업역량강화	맞춤형취업기능강화	11,000	10,994	100.0
	문화예술교육활동	협 력 종 합 예 술 활 동	4,856	4,446	91.6
	학생단체활동	청 소 년 단 체 활 동 지 원	910	661	72.6
	학생생활지도지원	민 주 시 민 교 육 강 화	115	111	96.5
	진로진학교육운영	맞 춤 식 진 로 교 육	5,589	5,509	98.6
	교육복지우선지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지원	11,181	10,432	93.3
	도서관운영	독서문화및교육지원사업	2,766	2,358	85.3
나. 생활속 성평등 문화 확산			453	401	88.7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학 부 모 지 원 센 터	453	401	88.7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136,280	124,912	91.7
가. 고용기회의 평등성 제고			131,370	120,612	91.8
	교육과정운영지원	영어회화전문강사배치	9,398	7,606	80.9
	교육과정운영지원	초등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14,276	14,272	100.0
	학력향상지원	기 초 학 력 향 상 지 원	19,416	19,092	98.3
	학력향상지원	중등기초학력향상지원	10,356	7,556	73.0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에듀케어자원봉사단운영	3,124	3,117	99.8
	ICT활용교육지원	인공지능(AI)기반융합교육	516	513	99.5
	문화예술교육활동	학 교 예 술 교 육 지 원	5,521	5,444	98.6
	각종체육활동	선 진 운 동 부 육 성	21,829	21,066	96.5
	돌봄교실운영	초 등 돌 봄 교 실 운 영	46,748	41,794	89.4
	평생학습운영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운영	182	148	81.4

(단위 : 백만원, %)

정책분야·정책과제명·세부사업		사 업 명	예 산 현 액 (A)	지 출 액 (B)	집 행 률 (B / A)
나. 여성의 경력유지개발 지원			4,910	4,299	87.6
	교 원 연 수 운 영	중 등 교 원 연 수 지 원	3,363	3,031	90.1
	근 로 자 인 사 관 리	교 육 공 무 직 노 무 관 리	1,486	1,227	82.6
	영 재 교 육 운 영	영 재 교 육 연 수	60	40	66.2
3. 여성 대표성제고 및 참여활성화			4,175	3,519	84.3
가정차공공분야여성대표성제고			4,175	3,519	84.3
	교 원 인 사 관 리	교 장 및 기 관 장 임 용	90	73	81.6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지 방 공 무 원 인 사 운 영	1,215	967	79.6
	현장중심장학지원	초 등 수 석 교 사 제 운 영	323	306	94.9
	현장중심장학지원	중 등 수 석 교 사 제 운 영	923	746	80.9
	감 사 관 리	적극행정정책추진및운영	10	6	67.6
	예 산 관 리	주 민 참 여 예 산 운 영	1,357	1,184	87.2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학 교 운 영 위 원 회	39	34	86.0
	교 직 원 단 체 관 리	교 원 노 사 관 리	215	199	92.2
4.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103,236	64,149	62.1
가 여성폭력근절정책추진 기반강화			2,418	2,373	98.2
	학교폭력예방및교육	학 교 안 전 망 구 축	2,418	2,373	98.2
	나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3,334	3,247	97.4
	교 원 인 사 관 리	인 사 관 리	3,334	3,247	97.4
다 여성폭력피해차보호지원강화			603	525	87.2
	성 폭 력 예 방 교 육 등	스쿨미투예방및학교회복지원	603	525	87.2
라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96,879	58,002	59.9
	특 수 교 육 운 영	방 과 후 활 동 지 원	7,125	6,996	98.2
	특수교육복지지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20,834	20,419	98.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화 장 실 개 선 (전 면)	68,919	30,587	44.4

(12) 성과보고서

〈표 9-15〉 성과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 진 결 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 1: (더 질 높은 학교교육)									
I-1.(기초학력 책임지도)	1. 서울(지역) 학습도움센터 상담지원율(%)	(당해년도 상담회기/ 전년도 상담회기)×100	목표	101	· 학 력 향 상 지 원				
			실적	117.8					
			달성률(%)	116.63					
	2. 학급당 적정 학생수(명) ※ 하향지표	초·중·고 전체 학생 수 / 초·중·고 전체 학급 수	목표	22.1	· 적정규모 학교육성				
			실적	22.3					
			달성률(%)	99.1					
I-2.(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1. 자유학기(년)제 연수실적(%)	{(학부모대상연수 실시횟수/ 교육(지원)청수)×0.5}+ {(학교관계자대상연수 실시 횟수/ 교육(지원)수)×0.5} ×100	목표	100	· 교육자료 개발보급 · 교육과정 운영지원				
			실적	100					
			달성률(%)	100					
	2.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인원(명)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교사 수+독서토론 글쓰기 교육 현장 지원단 참여 교원 수	목표	490	· 독서논술교육운영				
			실적	502					
			달성률(%)	102.45					
I-3.(학생 주도성 및 학교자율성으로 맞춤형 교육실현)	1. 유치원 컨설팅 장학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자수/ 전체응답자수)×100	목표	90	· 유 아 교 육 운 영				
			실적	99.7					
			달성률	110.78					
	2. 초1, 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지원 「꿈쟁 네트워크」 운영 비율(%)	[「꿈쟁 네트워크」 운영 학급수/1,2학년 학급수] ×100	목표	50	· 현장중심 장학지원				
			실적	52.7					
			달성률(%)	105.4					
	3. 초3~6학년 창의 공감 교육과정 「우리가 꿈꾸는 교실」 운영비율(%)	[「우리가 꿈꾸는 교실」 운영 학급수/3~6학년 학급수] ×100	목표	74	· 현장중심 장학지원				
			실적	75.6					
			달성률(%)	102.16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 진 결 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 I: (더 질 높은 학교교육)									
I-3.(학생 주도성 및 학교자율성으로 맞춤형 교육실현)	4. 일반고 진학 정보 제공률(%)	(당해연도 하이인포 방문자수 /전년도하이인포 방문자수)×100	목표	104.25	·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실적	104.34					
			달성률(%)	100.09					
	5. 일반고 진학설명회 참여율(%)	(온라인 진학설명회 조회수/ 중3 학생수)×100	목표	22.5	·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실적	27.94					
			달성률(%)	124.18					
I-4.(진로교육 강화 및 특성화고 지원)	1. 진로체험 학생 참여비율(%)	(당해년도 진로체험 참여 학생수/전체 중·고 학생수) ×100	목표	110	· 진로진학교육운영				
			실적	120					
			달성률(%)	109.09					
	2.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수용률(%)	(직업교육 입학생수/ 일반고 학생 중 직업교육 신청자수) ×100	목표	93.6	· 직업교육운영				
			실적	95.93					
			달성률(%)	102.49					
	3. 직업계고 교원 연수 이수율(%)	(연수 이수자 수/연수 신청 교원수)×100	목표	94.8	· 직업교육환경개선				
			실적	94.64					
			달성률(%)	99.83					
I-5.(여체능 교육활동 강화)	1. 예술중점 교육과정운영 만족도(점)	응답 점수의 합/응답학생수	목표	4.5	· 문화예술교육활동				
			실적	4.69					
			달성률(%)	104.22					
	2. 협력종합예술활동 운영 성과발표 (영상제작 포함) 참여비율(%)	{발표(영상제작 포함) 참여 학교수/운영교 수}×100	목표	96	· 문화예술교육활동				
			실적	96.97					
			달성률(%)	101.01					
	3.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학생수/ 전체학생수)×100 ※ 초1, 2 제외	목표	30	· 각종체육활동				
			실적	31					
			달성률(%)	103.33					
	4. 학생건강체력 저체력 학생비율 (%) ※ 하향지표	(PAPS 4~5등급 학생수 / PAPS 측정학생 수)×100	목표	14	· 각종체육활동				
			실적	12.5					
			달성률(%)	110.71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 진 결 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 1: (더 질 높은 학교교육)					
I-6.(연구하고 성장 하는 교사 지원)	1. 서울교육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자체 연구 과제 추진비율(%)	(금년도 자체연구 과제수 / 전년도 자체연구 과제수) ×100	목표	120	· 교 육 연 구 운 영 지 원
			실적	125	
			달성률(%)	104.17	
	2. 학습연구년 운영 만족도(%)	(당해연도 '매우만족', '만족' 응답자수/응답자수합)×100	목표	96.3	· 교 육 연 수 운 영
			실적	96.3	
			달성률(%)	100	
	3. 교원 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시간)	연수원 주관 교원 연수 총 이수시간/전체 교원 수	목표	32	· 교 육 연 수 운 영
			실적	32.7	
			달성률(%)	102.19	
	4.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학습 공동체(팀)	학교 간 수업평가·나눔 교사단 학습공동체 수	목표	200	· 교 실 수 업 개 선
			실적	256	
			달성률(%)	128	
	5. 지원서비스 만족도 (%)	{('보통','만족','매우만족' 답변자 수)/(설문조사 참여자수)}×100	목표	91	· 교 원 인 사 관 리
			실적	96.57	
			달성률(%)	106.12	
I-7.(학교혁신 지속 추진)	1.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추진률(%)	(이행추진 공약체부사업의 수 /전체 공약체부사업) ×100	목표	80	· 교 육 정 책 기 획 관 리
			실적	92.9	
			달성률(%)	116.13	
	2.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양화 특성화 학교 비율 (%)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양화·특성화 학교 수/ 전체 일반고 학교수) ×100	목표	87	·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실적	87	
			달성률(%)	100	
	3. 혁신학교 질적 성장 지원(%)	(종합평가 결과 '우수' 이상 학교 수/종합평가 대상 학교 수)×100	목표	80	· 특 색 교 육 과 정 운 영
			실적	100	
			달성률(%)	125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 진 결 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 I: (더 질 높은 학교교육)					
I-7.(학교혁신 지속 추진)	4.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지원 대상학교 확대(%)	(일반고 전환 자율형 사립고 /전체 자율형 사립고)×100	목표	20	· 특색교육과정운영
			실적	19.05	
			달성률(%)	95.25	
	5. 학교자율사업 운영제 참여율(%)	(학교자율사업운영제 참여 학교수/전체학교수)×100	목표	95	· 특색교육과정운영
			실적	100	
			달성률(%)	105.26	
전략목표 II: (더 평등한 출발)					
II-1.(출발선 평등 실현)	1. 초·중학교 무상 교과용 도서 재고율(%) ※ 하향지표	(보관 무상교과용 도서/ 필요 무상교과용 도서)×100	목표	1.9	· 교과서지원
			실적	1.15	
			달성률(%)	139.47	
	2. 사립유치원 회계 연수 참여율(%)	(참여사립유치원수/ 전체사립유치원수)×100	목표	86	· 사립유치원지원
			실적	86.4	
			달성률(%)	100.47	
II-2.(질 높은 돌봄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1. 방과후과정 유아 참여율(%)	(방과후 과정 원아수/ 전체원아수)×100	목표	78	·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실적	87	
			달성률(%)	111.54	
	2. 초·중고 방과후 학교 학생 참여율 (%)	(초·중고 참여 학생 수/ 초중고 전체 학생 수)×100	목표	33	· 방과후학교운영
			실적	35.9	
			달성률(%)	108.79	
	3. 초등 돌봄교실 운영 만족도(%)	(매우만족만족 응답자 수/ 응답자 수의 합)×100	목표	95.5	· 돌봄교실운영
			실적	96.7	
			달성률(%)	101.26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 진 결 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 II : (더 평등한 출발)					
II-3.(정의로운 차등 구현)	1. 다문화학생 재학 학교 대상 다문화 (이중) 언어강사 배치율(%)	(다문화(이중)언어강사수/다문화학생 5% 이상 재학 학교 수)×100	목표	71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자녀교육지원
			실적	73.55	
			달성률(%)	103.59	
	2. 다문화학생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율(%)	(지원사업 참여 학생 수/총 다문화학생수)×100	목표	70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자녀교육지원
			실적	70.18	
			달성률(%)	100.26	
	3. 학업 복귀 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학습지원프로그램 참여자 수+학습멘토링 참여자 수	목표	4,000	· 대 안 교 육 운 영
			실적	4,819	
			달성률(%)	120.48	
	4. 교육참여수당 지급 인원 수(명)	당해년도 교육참여수당 지급 인원 수	목표	4,500	· 대 안 교 육 운 영
			실적	3,262	
			달성률(%)	72.49	
	5. 방송통신중고 인터넷 콘텐츠 활용 만족도(점)	방송통신중고 홈페이지 및 스마트플랫폼 만족도조사 응답학생 수	목표	4.12	·방송통신중고 운영
			실적	4.12	
			달성률(%)	100	
	6.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율(%)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자원 선정자 수/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자원 신청자수)×100	목표	85	· 특 수 교 육 복 지
			실적	62	
			달성률(%)	72.94	
	7. 특수교육과정 및 수업 역량 강화 연수 누적 이수율 (%)	연수 누적 이수 특수교사 수/전체 특수교사 수)×100	목표	60	· 특 수 교 육 운 영
			실적	86	
			달성률(%)	143.33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 진 결 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 II : (더 평등한 출발)					
II-4.(학부모의 안정적인 자녀교육 지원)	1. 학부모사업 참여자 증가 비율 (%)	(당해연도 학부모사업 참여자수/전년도 학부모사업 참여자수)×100	목표	110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실적	124.2	
			달성률(%)	112.91	
	2. 학부모 교육 만족도(%)	(학부모교육 ‘만족’이상 답변자 수/조사 참여자 수) ×100	목표	95	·학부모및주민참여확대
			실적	96.1	
			달성률(%)	101.16	
II-5.(통합적 교육 복지 실현)	1. 교육취약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율(%)	(인터넷통신비 지원 학생수/법정 저소득층 학생수) ×100	목표	27.5	·정 보 화 지 원
			실적	32.6	
			달성률(%)	118.55	
	2. 불법사교육 및 공교육저해요인에 대한 담당공무원 지도 감독 실시건수(건)	11개 교육지원청 2023년도 지도점검 총 건수/교육지원청 지도담당 공무원 수(30명)	목표	695	·평생교육시설및운영
			실적	733	
			달성률(%)	105.47	
전략목표 III : (더 따뜻한 공존교육)					
III-1.(생태전환교육 강화)	1.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운영교 비율(%)	(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 운영학교/전체초·중·고) ×100	목표	38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실적	64	
			달성률(%)	168.42	
	2. 먹거리생태 전환 교육 활성화 지원교(교)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 수	목표	265	·학 교 급 식 운 영
			실적	274	
			달성률(%)	103.4	
III-2.(세계시민성 함양)	1. 학생참여예산제 학생 회장 공약사항 이행 및 학생 제안 사업 반영률(%)	(학생회장공약 및 학생 제안 사업수/학생참여 예산제 전체사업수)×100	목표	72	·학 생 생 활 지 도 지 원
			실적	84.6	
			달성률(%)	117.5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진결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 Ⅲ : (더 따뜻한 공존교육)					
Ⅲ-2.(세계시민성 함양)	2. 학생 인권교육 학교 참여율 및 교육자료 제작 보급률(%)	{(인권교육 참여학교수 / 전체 학교수(초·중·고·특수))×100}×0.5+{(인권교육 자료 제작 보급 수/제작 보급 목표수)×100}×0.5	목표	64	· 학생 생활지도지원
			실적	24	
			달성률(%)	37.5	
Ⅲ-3.(학교 안팎,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	1. 학교시설 개방률 (%)	(운동장 개방 학교수/운동장 보유 학교수×100)×50%+(체육관 개방 학교수/체육관 보유 학교수×100)×50%	목표	50	· 공유재산및물품관리
			실적	55.9	
			달성률(%)	111.8	
	2. 언론 기사의 광고 가치 증가율(%)	(당해연도 언론기사 광고 가치 환산액 /전년도 언론 기사 광고가치 환산액)×100	목표	100.6	· 교 육 정 책 홍 보
			실적	100.8	
			달성률(%)	100.2	
	3. 주요 매체별 공익 광고 건수(건)	[(방송광고6×매체수)+(인터넷광고0.6×매체수)+(옥외광고0.4×매체수)+(지면광고0.2×매체수)]	목표	123	· 교 육 정 책 홍 보
			실적	165	
			달성률(%)	134.15	
	4. 예산안에 대한 주민 참여예산 위원회의 자문의견 반영률(%)	(자문의견 중 예산편성 반영 건수/전체 자문의견(비예산 제외)제출 건수)×100	목표	86.6	· 예 산 관 리
			실적	87.8	
			달성률(%)	101.39	
	5.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운영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학교수/ 전체 초중고 학교수)×100	목표	96.3	· 교 육 복 지 우 선 지 원
			실적	96.4	
			달성률(%)	100.1	
	6. 교육거버넌스 구성원의 사업협력 만족도(%)	(교육거버넌스 전체 위원 중 만족 및 매우만족 응답자 수/ 교육거버넌스 전체 위원수)×100	목표	78	· 교 육 복 지 우 선 지 원
			실적	89.28	
			달성률(%)	114.46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 진 결 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 Ⅲ： (더 따뜻한 공존교육)					
Ⅲ-3.(학교 안팎,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구축)	7. 지역교육복지 공동체 협력학교 (교)	지역교육복지센터 및 지역 기관 협력 교육복지학교수	목표	1,020	·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실적	1,210	
			달성률(%)	118.63	
	8. 자료대출 및 프로그램 참여율 (%)	(23년 자료대출 및 프로그램 참여인구수/23년 서울시 인구수)×100	목표	39.4	· 도 서 관 운 영
			실적	39.6	
			달성률(%)	100.51	
	9. 학교평가계획의 학교교육계획 포함률(%)	(포함학교 수/전체 학교평가 대상학교 수)×100	목표	92	· 기관 및 학교 평가 관리
			실적	95.7	
			달성률(%)	104.02	
Ⅲ-4.(학교 구성원 간의 공존)	1. 학교현장 지원연수 증가율(%)	{(당해연도 학교 현장 지원 교육 과정수 - 전년도 학교 현장 지원 교육과정수)/ 전년도 학교 현장 지원 교육과정수}×100	목표	2.76	· 지방 공무원 연수 운영
			실적	3.33	
			달성률(%)	120.65	
	2. 노사관계 외부위탁 교육만족도(점)	(과정별 만족도 점수의 합/ 연수과정 수)×20	목표	93.7	· 근로자 인사 관리
			실적	94.1	
			달성률(%)	100.43	
	3. 교원노사관계 직무연수 이수율 (%)	(연수 이수 인원 수/ 연수 신청 인원 수)×100	목표	93.5	· 교 직 원 단 체 관 리
			실적	96	
			달성률(%)	102.67	
	4. 전보대상자 근무희망 반영률 (%)	(전보대상자 근무희망 반영인원 수/전보대상 인원수)×100	목표	79	· 지방 공무원 인사 관리
			실적	79.6	
			달성률(%)	100.76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진결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Ⅳ: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Ⅳ-1.(세계와 공존 연대하는 서울 학생으로 성장 자원)	1. 외국어교원 역량 강화(명)	외국어교사(영어 및 제2 외국어)역량강화 연수 등 참여교사 수 + 전문 학습 공동체 참여교사 수	목표	190	·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실적	190	
			달성률(%)	100	
	2. 국제공동수업 참여 학교수 달성률(%)	(당해연도 국제공동수업 참여 학교 수/목표 국제 공동 수업 참여 학교 수)×100	목표	100	·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 원
			실적	129	
			달성률(%)	129	
	3. 학생교육원 시설 이용률(%)	{실제 이용자(온라인 수련 인원 포함) 총계/연간 목표 수련 인원수}×100	목표	90	· 학 생 단 체 활 동
			실적	102.2	
			달성률(%)	113.56	
Ⅳ-2.(미래를 대비하는 인공지능 교육 강화)	1. AI교실 구축률(%)	(AI 교실 구축 수/전체 초·중·고·특수학교 수) ×100	목표	18	· 학교정보화여건개선
			실적	19.2	
			달성률	106.67	
	2. 창의융합형 과학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제고(%)	('만족' 이상 응답자수/ 전체 응답자수)×100	목표	89	· 교 육 과 정 운 영 지 원
			실적	97.2	
			달성률(%)	109.21	
Ⅳ-3.(교수학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학습 환경 구축)	1.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학습역량 인식도(점)	(학습효과인식도에 관한 문항 응답자의 선택지 산술평균 ×0.6)+(디지털 역량 신장 가치에 관한 문항 응답자의 선택지 산술평균×0.4)	목표	3	· I C T 활 용 교 육 지 원
			실적	3.68	
			달성률(%)	122.67	
	2. 정보화 전문연수 운영과정 증가율 (%)	(금년도 운영과정 수/ 전년도 운영과정 수)×100	목표	109	·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
			실적	109	
			달성률(%)	100	
	3.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운영학교 증가율 (%)	(금년도 플랫폼 운영학교 수/ 전년도 플랫폼 운영학교 수) ×100	목표	105	· I C T 활 용 교 육 지 원
			실적	118.11	
			달성률(%)	112.49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 진 결 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 IV：(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IV-3.(교수학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학습 환경 구축)	4. 개인정보 암호화 및 현장 지원율(%)	(개인정보파일 암호화율 + 컨설팅 신청교 지원율)/2	목표	97	· 정 보 보 안 관 리
			실적	97.9	
			달성률(%)	100.93	
	5.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율(%)	(사이버침해 대응훈련 참여율 + 웹취약점 추가 점검률)/2	목표	17	· 정 보 보 안 관 리
			실적	17.5	
			달성률(%)	102.94	
	6. 교직원 및 학부모 나이스 만족도(%)	(전화상담 서비스 만족도 × 50%)+(온라인상담 서비스 만족도×50%)	목표	96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실적	95.7	
			달성률(%)	99.69	
IV-4.(미래지향적 학교공간 조성)	1. 그린스마트 미래 학교 사전기획 충실도(%)	(공공건축심의 조건부이상 의결 건수/사전기획 추진 학교수)×100	목표	83	· 시 설 사 업 운 영
			실적	87.5	
			달성률(%)	105.42	
	2. 교육환경개선사업 선정절차 만족도 (%)	('만족' 이상 답변수/ 전체 답변수)×100	목표	71	·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실적	72	
			달성률(%)	101.41	
	3.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반영률(%)	(우선순위 반영액/ 예산 편성액)×100	목표	70	·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실적	72	
			달성률(%)	102.86	
	4. 노후 시설 정밀 점검 실적(%)	(정밀점검 실시 건수/ 정밀점검 대상 건수) ×100	목표	95	·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실적	96	
			달성률(%)	101.05	
	5. 꿈을 담은 교실 사업 달성률(%)	(적용 학교수/계획목표 학교수) ×100	목표	87	· 학 교 시 설 환 경 개 선
			실적	98	
			달성률(%)	112.64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진결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Ⅳ: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Ⅳ-4.(미래지향적 학교공간 조성)	6. 교과교실제 운영 만족도(점)	응답점수의 합/응답자 수 ※ 5단계 척도로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목표	78.5	· 교육과정운영여건개선
			실적	80.3	
			달성률(%)	102.29	
전략목표Ⅴ: (더 건강한 안심교육)					
Ⅴ-1.(학생 마음건강 증진 통합 지원)	1. 심리정서 위기 학생 상담활동(%)	(당해년도 Wee센터 교육·연계 건수/당해년도 초·중·고 학생 총 수)×100	목표	6.8	· 학생 상담 활동
			실적	7.4	
			달성률(%)	108.82	
	2.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관심군 학생전문기관 2차 연계율(%)	(관심군 중 전문가 2차 검사 등 조치 학생 수/정서·행동 특성검사결과 선별된 관심군 학생수)×100	목표	77	· 학생 상담 활동
			실적	72.7	
			달성률(%)	94.42	
Ⅴ-2.(학교 보건관리 및 교육환경 안전 강화)	1. 과대학교 학교보건 자원강사 운영 만족도(%)	('만족' 이상 답변수/전체 답변수)×100	목표	86	· 학교 보건 관리
			실적	93.6	
			달성률(%)	108.84	
Ⅴ-3.(더 맛있고 더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	1. 학교 채식선택제 확대(교)	그린 급식바 설치 및 체험 교육 자원 학교수	목표	148	· 학교 급식 운영
			실적	41	
			달성률(%)	27.7	
	2. 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률(%)	{ (당해년도 식품비 단가 - 전년도 식품비 단가) / 전년도 식품비 단가 }×100	목표	3.85	· 학교 급식 운영
			실적	4.01	
			달성률(%)	104.16	
Ⅴ-4.(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학생 예방 교육 및 교원 컨설팅·연수 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 학생예방 교육 및 교원 컨설팅·연수 참여 학교 수/ 초·중·고특수 각종 전체 학교)×100	목표	25	· 학교폭력예방및교육
			실적	25	
			달성률(%)	100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 진 결 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 V: (더 건강한 안심교육)					
V-4.(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	2.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의 소송, 행정심판 직접 (단독) 수행비율 (%)	(교육법률지원단 직접 수행 건수/학교폭력 사안처리, 학생 징계조정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건수)×100	목표	80	· 학교폭력예방및교육
			실적	81	
			달성률(%)	101.25	
	3. 학교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점검 실적(%)	{(점검 횟수)/2×(초·중·고 전체 학교수)}×100	목표	95	· 성폭력예방교육등
			실적	100	
			달성률(%)	105.26	
V-5.(건전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1.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	목표	3	· 감 사 관 리
			실적	3	
			달성률(%)	100	
	2. 교육행정지원 시스템 이용률 제고(%)	100% + {(당해연도 월평균 시스템이용건수 - 직전 2년간 월평균시스템 이용건수)/ 직전 2년간 월평균 시스템 이용건수×100%}	목표	110	· 감 사 관 리
			실적	134	
			달성률(%)	121.82	
	3. 민방위대피훈련 참여 실적(%)	(누적 실시 학교수/ 누적 전체 학교수)×100	목표	96	· 비상대비계획운영
			실적	96.1	
			달성률(%)	100.1	
	4. 콜센터 운영성과 지수(%)	(만족도×0.5)+(통화 성공률× 0.3)+(직접 처리율×0.2)	목표	95.3	· 민원행정서비스관리
			실적	96.1	
			달성률(%)	100.84	
	5. 중요기록물 DB 구축률(%)	(당해연도 DB구축 면수 / 당해연도 DB구축 계획 면수) ×100	목표	95	·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실적	100.7	
			달성률(%)	106	

성 과 목 표	성 과 지 표	측 정 산 식	추 진 결 과	세 부 사 업 명	
전략목표 V: (더 건강한 안심교육)					
V-5.(건전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	6. 사학기관 운영평가 노력지표 평가결과 향상도(점)	사학기관 운영평가 노력지표 (법인운영 및 학교행정 영역) ※ 노력지표(75점 배점) → 법인운영(40)+학교행정(35)	목표	77	· 사 학 기 관 지 도 지 원
			실적	78	
			달성률(%)	101.3	
	7.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만족도(%)	('만족' 이상 응답수/ 설문 응답자수)×100	목표	65	· 행 정 개 선 활 동 지 원
			실적	65.7	
			달성률(%)	101.08	